

OECD 要求 基準에 따른
醫藥品統計生産方案

保 健 福 祉 部
韓國保健社會研究院

目 次

要 約	1
第1章 序論	10
第1節 研究의 目的 및 必要性	10
第2節 研究內容 및 方法	11
第2章 先行事例	13
第1節 OECD 會員國의 醫藥品 消費와 販賣 관련 統計生産方案 比較	13
第3章 우리나라 醫藥品 統計生産現況	38
第1節 OECD 統計 提出現況	38
第2節 會員國의 醫藥品 統計 提出現況	39
第3節 OECD 醫藥品 統計 要求項目 및 算出基準	42
第4章 醫藥品 統計 生産方案	46
第1節 醫藥品統計 生産 相关 資料의 檢討	46
1. 健康保險資料	46
2. 製藥協會 入力形態 및 活用 可能性	47
3. 其他資料	47
第2節 既存의 藥效分類 活用 統計生産方案	48
第3節 標本調査에 의한 統計 生産方案	61
1. 調査結果를 主資料로 活用了한 醫藥品統計 生産方案	61
가. 調査의 必要性	61
나. 調査의 目的	64
다. 調査方法	64
라. 調査規模	65
마. 調査對象 母集團	65
바. 母集團 層化	67
사. 標本 機關 抽出	68

아. 推定方法	70
자. 調査項目	72
차. 醫藥品 消費 및 販賣 資料 蒐集體系	74
2. 調査結果를 副資料로 活用한 醫藥品統計 生産方案	77
第5章 結論 및 政策提言	78
參考文獻	80
附錄	83

表 目 次

〈表 3- 1〉 2007年 OECD 保健統計 提出現況(項目基準)	38
〈表 3- 2〉 OECD 會員國의 保健統計 部門別 提出率: 2006(CD-ROM 수록기준)	40
〈表 3- 3〉 OECD 會員國의 醫藥品統計 部門別 提出率: 2006(CD-ROM 수록기준)	41
〈表 3- 4〉 OECD 醫藥品 消費分野統計 要求 項目	43
〈表 3- 5〉 OECD 醫藥品 販賣分野統計 要求項目	44
〈表 4- 1〉 療養機關 自體調製, 製劑藥 內譯 EDI 項目	46
〈表 4- 2〉 ATC 分類코드와 藥效分類코드의 聯關性	49
〈表 4- 3〉 藥效分類코드와 ATC 分類코드와의 聯關性	51
〈表 4- 4〉 醫療保障 狀態別 藥品購入 方法	62
〈表 4- 5〉 醫療機關의 外來患者 投藥處方 方法	63
〈表 4- 6〉 退院患者의 診療費 支拂方法	63
〈表 4- 7〉 健康保險 療養機關數 및 藥師數 分布	66
〈表 4- 8〉 地域別 藥局數 및 藥師數	67
〈表 4- 9〉 醫療機關 및 藥局의 母集團 層化	68
〈表 4-10〉 醫療機關 調査 標本規模	69
〈表 4-11〉 藥局調査 標本規模	69
〈表 4-12〉 醫藥品 消費 및 販賣 調査 基本項目	73
〈表 4-13〉 ATC分類의 第1水準	76
〈表 4-14〉 ATC分類에서 糖尿 藥의 分類 方法	77

圖 目 次

[그림 4-1] 醫藥品 消費 및 販賣 資料 蒐集體系	75
------------------------------------	----

要 約

1. 研究의 目的 및 必要性

- OECD가입(1996. 12)이후 우리나라는 매년 OECD에서 요구하는 보건부문의 통계를 작성 제출하고 있으나 아직 회원국의 평균에 못 미치고 있음.
 - ※ 매년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의 제출은 제규범의 준수라는 일반적 의무에 속하며, 이는 '상호간 정보교환과 정보제공에 동의한다'는 협정문 제3조(Article 3, Convention on the OECD)에 근거함.
- 특히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약품 생산 및 소비실태에 대한 통계를 아직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생산 노력이 요구됨.
- 따라서 OECD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른 의약품 생산 및 소비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인 실태 파악 및 생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계생산이 시도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는 OECD에서 요구하는 의약품 통계의 우리나라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생산 방안을 마련과 향후 의약품 관련 통계 생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정보욕구를 충족하고 보건정책 수립 및 추진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둠.

2. 研究의 內容 및 方法

- 연구내용
 - OECD 보건통계생산 기준 고찰
 - OECD에서는 각 회원국의 통계산출 방법의 통일을 위하여 생산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의약품 통계생산이 OECD 요구방법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OECD 제시 기준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

여 생산된 통계는 활용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임.

- 회원국의 생산방법 및 자료원 등에 대한 검토
 - OECD 회원국의 의약품 통계생산 방법론의 파악은 매우 유익한 일임. 즉, 다른 회원국의 생산방법이나 자료원이 우리나라도 활용 가능 한지를 파악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은 통계생산에 매우 유익함.
- 우리나라 의약품통계의 작성실태 파악 및 분석
 - OECD 요구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우선 요구하는 통계와 관련된 실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함. 이를 기초로 OECD 요구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생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OECD 요구 의약품 통계에 대한 향후 생산방안 제시
 - 현황 분석자료와 OECD 회원국의 생산 실태 그리고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산 기준을 감안한 우리나라에 적합한 생산모형을 제시하여 향후 생산에 보다 용이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방법

- 국내외 문헌 고찰
 - 의약품통계 생산관련 국내외 관련문헌 연구
 - 기존의 의약품 통계생산에 관한 연구결과 고찰
- OECD에서 제시하는 생산기준과 회원국의 Source & Method 고찰
 - OECD 생산기준의 면밀한 검토
 - 회원국의 생산방법 및 자료원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
- 의약품통계생산 관련기관에 대한 관련 자료요구
 - 제약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국내 관련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
- 현지 확인을 통한 통계의 신뢰도 증대
 - 제약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의 현장방문을 통한 관련 자료의 수집
 - OECD기구 및 주요 회원국의 통계작성 체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자료 수집
- 보건통계 관련 전문가 및 관련기관간 협조체계 유지
 - 의약품통계가 생산될 수 있는 기관과 협력관계 유지 및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 관련기관, 학계 등과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3. 研究結果

- 우리나라가 OECD가입 후 매년 각종 통계를 요구해오고 있음. 이 가운데 보건통계는 건강상태,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보건비용, 사회보장, 의약품시장 등 7개 분야로 나뉘어 있으며, 이들 분야의 요구항목은 매년 변화하여 왔음.
- 2007년 이들 통계의 요구항목을 보면 보건의료이용이 356개 항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보건비용으로 152개 항목 그리고 다음은 의약품시장은 58개 항목을 요구하였음. 의약품시장에서 요구한 58개 요구항목 중 11개 항목에 대한 통계를 작성 제출하여 제출률은 19.0%로 7개 분야의 통계 중 가장 낮은 제출률을 보였음.

〈表 1〉 2007年 OECD 保健統計 提出現況(項目基準)

분류명	2006년			2007년					
	항목수	제출수	제출률	항목수	기존 자료	보완	신규 생산	계	제출률 (%)
계	673	487	72.4	672	28	471	51	550	81.8
건강상태	40	34	85.0	36	5	29	1	35	97.2
보건의료자원	27	11	40.7	37		11	14	25	67.6
보건의료이용	353	326	92.3	356	20	306	2	328	92.1
보건비용	152	78	51.3	152		94	34	128	84.2
사회보장	18	8	44.4	18		8		8	44.4
의약품시장	68	15	22.1	58	1	10		11	19.0
보건의 비의료 결정 요인	15	15	100.0	15	2	13		15	100.0

- 우리나라의 의약품통계에 대한 제출률이 낮은 것은 분류체계의 차이에 따른 문제를 들 수 있음.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는 ATC 분류에 의한 통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의약품 약효에 따른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상이한 분류체계에 따른 통계생산에 어려움이 있음.

- 그리고 의약품 소비자 판매 통계는 최종 소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통계를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나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생산이 부진한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OECD 회원국의 OECD 요구 통계에 대한 제출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회원국의 분야별 평균제출률은 보건의 비의료결정요인이 96.2%로 가장 높고, 다음은 건강상태로 92.9% 그리고 사회보장이 90.0%의 순으로 높았고, 의약품시장은 51.2%로 가장 낮았음. 즉, 의약품시장에 대한 제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아직 만족스런 제출률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분야임. 이와 같은 제출률의 부진 원인은 분류체계의 차이에 따른 문제 그리고 별도의 조사가 미흡하거나 관련통계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이 통계생산의 부진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점차 의약품통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출률도 높아지고 있음. 의약품시장에 대한 제출률이 높은 국가는 덴마크, 독일, 스웨덴 등이 100.0%의 제출률을 보여 가장 높은 제출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호주, 체코,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가 90% 이상의 높은 제출률을 보였음.
- 반면에 캐나다, 멕시코, 미국과 같은 국가는 아직 하나의 통계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이들 국가의 생활수준이나 경제력 등으로 볼 때 의약품에 대한 통계가 전혀 생산이 안 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며, 분류체계 등의 상이로 인한 미생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의약품통계생산에 활용 가능성이 있는 건강보험자료는 신청 코드를 활용 건강보험적용일자, 급여구분, 상한가, 사용장려비, 투여경로, 품명, 규격, 단위, 제약회사명, 분류번호, 주성분코드, 약품동등구분, 저가약대체여부, 예외의약구분, 임의조제불가, 고시일자, 대응코드 등이 파악됨.

- 신청서에는 코드 1일 투여량, 총투여일수, 단가 등이 파악됨. 그러나 OECD에서 요구하는 소비량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각 코드별 용량의 입력작업이 필요함. 건강보험 등재코드는 16,000가지 정도가 됨.

- 각 코드번호는 복지부의 약효분류코드가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ATC 코드와의 완전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분류작업이 요구됨. 그러나 건강보험에서 비처방약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의약품통계에 활용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자료는 제약협회에서 수집하는 자료로 포장 단위별, 용량, 금액으로 입력되고 있어 OECD에서 요구하는 총판매금액과 소비량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함. 그러나 제약협회에서 수집되고 입력되는 자료는 의약품 판매통계를 내기 위해 필요한 금액에 있어서는 공장도가로서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실제 판매가격과는 차이를 보이고 소비량도 OECD에서 요구하는 최종단계 즉, 약국이나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제공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많은 회원국에서 이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생산된 통계를 제공하고 있어 통계생산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집계를 위한 분류방식은 약효분류에 의하고 있어 OECD에서 요구하는 ATC(해부학적분류) 체계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통계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의약품 통계생산을 위하여 표본조사를 할 경우 대상의 하나인 의료기관은 기관종류 병상 수, 의료인력 등에 의하여 환자수에 많은 차이가 있고 이것은 의료기관에서 소비되는 의약품의 양과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음.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하여 종합병원, 병원, 의원, 그 외에 특별법으로 설치된 보건소, 보건지소와 같은 보건기관으로 분류됨. 의료기관조사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의료기관 종류별로 층화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 특히 종합병원 중에서 3차 의료기관은 기관수는 적지만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환자의 비중이 매우 커서 입원환자의 많은 부분이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그만큼 약품의 소비가 많은 기관임.

- 즉 기관수는 적으나 투약처방이 많이 이루어지는 3차 의료기관은 추출률을 1/4로 하여 표본오차를 줄이고, 종합병원과 병원 추출 확률은 각각 1/6, 1/8로 하여 경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의원급 기관은 현실적으로 조사관리가 가능한 규모의 표본을 추출하며 의료기관 소재지를 분류변수로 하여 의하여 계통추출 한다. 그 결과 새로운 모집단을 활용한 표본수는 전체 의료기관의 약 3%인 1,500개 기관이 표본 추출 되도록 함.

〈表 2〉 醫療機關 調査 標本規模

기관종류	모집단	추출률	표본수
3차의료기관	43	1/4	10
종합병원	247	1/6	42
병원	1,043	1/8	131
의원급	28,345	1/24	1,181
기타 (치과 병의원, 한방병의원)	22,373	-	-
전체	52,051 ¹⁾	0.03	1,364

주 1): 2005년 7월 현재 의료기관수

- 또 다른 대상인 약국의 조사표본은 약국의 규모에 따라 층화 한 후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즉 약국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약국 근무 약사수 정보를 활용하여 모집단을 층화한 후 표본 약국을 계통 추출함. 전국의 약국을 3개의 층(① 약사수 2명 이하, ② 약사수 3-4명, ③ 약사 5명 이상)으로 층화한 후 약사수가 2명 이하인 약국은 1/24로 표본추출하고, 약사수가 2-4명인 약국은 1/10, 약사수 5명 이상인 비교적 큰 약국(172개)은 1/5의 추출률을 적용함. 지역별로 골고루 표본이 추출될 수 있도록 약국의 소재지를 사용하여 분류한 후 각 층의 추출확률로 계통추출 함. 그 결과 새로운 모집단을 활용한 조사 시점의 표본수는 전체 약국의 약 5%에 해당하는 약 1,000개 소의 약국이 표본으로 선정되도록 함.

〈表 3〉 藥局 調査 標本規模

약국 약사수	모집단 약국수	추출률	표본 약국수
2명 이하	18,815	1/24	784
3-4명	1,158	1/10	116
5명 이상	172	1/5	35
전체	20,145 ¹⁾	0.05	935

주 1): 2005년 7월 현재 약국수

- 의약품통계 생산을 위한 충분한 양의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하기 위하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사에 충분한 예산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충분한 양의 표본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조사된 결과를 활용한 통계생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기준에 적합한 통계를 생산하기는 곤란함.
 - 따라서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충분양의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통계를 생산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 다행히도 우리는 의약품통계 생산과 관련된 자료를 기존의 체계에서 찾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 자료와 조사자료를 연계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즉 제약협회의 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한 생산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임. 물론 이와 같은 방법은 충분한 양의 표본을 확보하여 조사하는 방법에 비하여 신뢰성 등이 떨어질 수 있으나 차선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OECD에도 제한점들 기술하면 활용할 수 있는 통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활용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要約 및 政策提言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 후 OECD에서 요구하는 각종 통계를 제공하여 왔음.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으로 OECD 요구 통계의 충족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는 단지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생산하고 제공하는 것은 아님.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는 각 분야에서 가장 필요하고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는 통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생산된 통계는 우리나라의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매우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OECD에서 요구하고 있는 통계 중 가장 부진한 분야는 의약품 관련 통계임. 이 분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회원국 모두에서 가장 저조한 분야의 하나임. 특히 이 분야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효분류에 따른 통계가 아니라 ATC(해부치료적화학분류; 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lassification) 분류에 의한 통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생산에 더 어려움이 있음. 이 방법은 주로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기

존 약효분류체계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우리나라의 분류체계를 ATC 분류체계로 전환하여 각종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방법이나 이 분류체계에 의한 각종 자료의 정리 및 통계생산에는 상당한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현재의 각종 상황을 고려한 OECD에서 요구하는 의약품 통계생산방안을 모색하여 보았음.

- 우선 최종 소비단계의 전단계인 판매의 최종단계에 있는 약국, 의료기관 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생산하는 방법임. 이와 같은 방법은 신뢰수준을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표본을 추출하여 시도하게 되는데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국민의 의약품소비 행태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 통계를 생산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지는 하지만 예산의 투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용이한 일이 아님.
- 또 다른 하나는 표본을 적게하는 방법이나 차선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전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고 제약협회에서는 제약회사의 생산량을 파악하고 있어 이들 자료를 활용한 생산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제약협회자료는 공장도가라는 문제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전단계인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판매되는 자료라는 제한점이 있지만 다수국가에서 의약품통계생산에 활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의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해 볼 만함.
 - 제약협회의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는 우선 현재 약효별로 분류하고 있는 형태를 ATC별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음. 약효별분류 결과를 ATC분류로 전환하여 사용하기 위하여는 상호 필요충분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나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있어 통계생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다른 하나의 자료는 건강보험자료임. 이 자료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청구되는 자료로 통계생산을 위한 분석이 가능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방전에 의하지 않거나 전액자부담인 경우 그리고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있어 이들 부분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일부 표본조사를 통하여 평균소매가를 파악하고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처방전에 의한 판매량과 처방전이 없이 판매되는 양등을 파악하여 제약협회의 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접목하여 추정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이와 같이 충분한 양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가 필요한 통계를 생산하는 방법과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다면 제약협회자료, 건강보험자료 그리고 가능한 범주내에서 표본조사자료를 활용한 통계생산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第1章 序論

第1節 研究의 目的 및 必要性

1996년 12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이후 우리나라는 매년 OECD에서 요구하는 보건부문의 통계를 작성 제출하고 있으며, 그 동안 관계자의 많은 노력으로 제출물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매년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의 제출은 제규범의 준수라는 일반적 의무에 속하며, 이는 '상호간 정보교환과 정보제공에 동의한다'는 협정문 제3조(Article 3, Convention on the OECD)에 근거하고 있다.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는 OECD 자체의 필요성 보다는 회원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제공에 그 의미를 두고 있어, 수집된 자료는 각국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OECD에서 요구하는 각종 통계에 대한 제출 노력은 우리나라의 각종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을 위한 노력은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약품 생산 및 소비실태에 대한 통계는 요구 항목 중 극히 일부분만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생산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OECD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른 의약품 생산 및 소비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인 실태 파악 및 생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계생산이 시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OECD에서 요구하는 의약품 통계의 우리나라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생산 방안 마련과 향후 의약품 관련 통계 생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정보욕구를 충족하고 보건정책 수립 및 추진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第 2 節 研究內容 및 方法

1. 研究內容

1) OECD 보건통계 생산기준 고찰

OECD에서는 각 회원국의 통계산출 방법의 통일을 위하여 통계 요구시 생산기준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의약품 통계생산이 OECD 요구방법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OECD 제시 기준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생산된 통계는 활용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2) 회원국의 생산방법 및 자료원 등에 대한 검토

OECD 회원국의 의약품 통계생산 방법론의 파악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즉, 다른 회원국의 생산방법이나 자료원이 우리나라도 활용 가능 한지를 파악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은 통계생산에 매우 유익하다.

3) 우리나라 의약품통계의 작성실태 파악 및 분석

OECD 요구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우선 요구하는 통계와 관련된 실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기초로 OECD 요구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생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3) OECD 요구 의약품 통계에 대한 향후 생산방안 제시

현황 분석자료와 OECD 회원국의 생산 실태 그리고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산기준을 감안한 우리나라에 적합한 생산모형을 제시하여 향후 생산에 보다 용이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2. 研究方法

1) 국내외 문헌 고찰

- 의약품통계 생산관련 국내외 관련문헌 연구
- 기존의 의약품 통계생산에 관한 연구결과 고찰

- 2) OECD에서 제시하는 생산기준과 회원국의 Source & Method 고찰
 - OECD 생산기준의 면밀한 검토
 - 회원국의 생산방법 및 자료원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
- 3) 의약품통계생산 관련기관에 대한 관련 자료요구
 - 제약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국내 관련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
- 4) 현지 확인을 통한 통계의 신뢰도 증대
 - 제약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의 현장방문을 통한 관련 자료의 수집
 - OECD기구 및 주요 회원국의 통계작성 체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자료 수집
- 5) 보건통계 관련 전문가 및 관련기관간 협조체계 유지
 - 의약품통계가 생산될 수 있는 기관과 협력관계 유지 및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 관련기관, 학계 등과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第2章 先行事例

第1節 OECD 會員國의 醫藥品 消費와 販賣 관련 統計生産方 案 比較

회원국의 의약품통계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OECD에서 요구하는 방법에 의한 생산도 아직은 미흡할 뿐 아니라 생산 제공하고 있는 국가도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이다.

각 회원국의 생산방법 및 자료원을 살펴보면 OECD 통계 제공을 가장 잘 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인 호주의 경우 지역 약국의 대표 표본조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조사를 통하여 처방 의약품이지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약품의 사용실태를 추정하는데 활용되며, 공립병원에서 조제되는 처방 의약품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비교적 보건통계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앞서가는 호주지만 의약품통계 제공이 OECD에서 요구하는 형태의 완벽한 형태라고 보기는 힘들다.

벨기에의 경우는 의약품소비 관련 자료수집은 약국을 통해 지급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며, 병원을 통해 지급된 의약품이나 환급이 불가능한 의약품, 개인 대상의약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의약품 판매관련 통계는 벨기에 의약품 산업연합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벨기에 의약품 통계도 OECD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에 의한 통계생산으로 보기는 힘들다.

체코공화국은 국립의약품관리원에서 자료를 수집 생산하고 있으며, 소비는 배포된 약제의 금액을 그리고 판매는 배포된 약제의 허용된 최대 이윤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덴마크는 의약품청에 의해 통계가 생산되고 있으며, 소비는 기초분야와 병원을 포함한 자료이고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의약품 소매가격으로 기초분야와 병원만을 포함하고 있다.

핀란드는 국립의약품청 안전과 의약품 정보부에서 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소비는 도

매업자의 소매약국과 병원 판매분이며, 판매는 도매업자의 소매 약국 판매분이고 병원 판매분도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는 의약품 소비통계의 경우 ATC 종목에 따른 DDD 측정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현재는 자료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판매의 경우 약국과 병원 판매분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고 있고, 수치는 공장 출고가격으로 생산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의약품소비 통계를 독일 의약품 색인 자료 등을 활용해 생산하고 있다. 의약품 판매의 경우에는 병원판매분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당히 과소추게 되었다.

그리스는 국립의약품 기구의 산하기관인 의약품 연구기술원에서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의약품 판매의 경우에는 제약회사의 공립병원, 도매상, 약국 판매분을 나타낸다. 총 금액은 공립병원에 병원가로 판매한 금액과 도매상/ 약국 소매가격으로 판매한 금액이다.

헝가리는 소비 통계의 경우 ATC 분류에 의한 DDD 요구 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의약품 판매 통계의 경우는 의약품 출고가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병원과 약국내 약품 사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보건사회보장부의 의약품 본부에서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의약품 소비 통계는 1989년부터는 DDD의 정의에 따라 수정되고 ATC(2005년판) 정의에 따라 계산되었다. 의약품 판매 통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소매가격으로 표시되었으며, 병원 판매분도 포함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의약품판매 통계의 경우 보건사회보장부 의약품 본부에서 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소매가격이며, 총판매 수치는 병원 판매분도 포함하고 있다.

이태리는 의약품소비 통계의 경우 “이태리의 의약품사용 국가보고서” 자료를 인용하고 있으며, 의약품판매는 ATC 종목별 판매 자료의 이용은 현재 불가능한 상태이며, 총의약품 판매자료만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의약품소비 통계는 현재는 불가능하며, 판매 통계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제약 산업생산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자료를 ATC 분류체계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비타민 혼합제 등 국제분류가 불가능한 종목 등은 제외되었다.

룩셈부르크는 소비의 경우 의료보험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자료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판매의 경우에는 질병 보험에 따른 비용에 한정된 것으로 병원에서의 약품비, 피보험자 개인이 부담하는 약품비로 처방약품의 비환급부분과 처방전 없이 구입한 약품 등은 제외되었다.

네덜란드는 소비의 경우 의료보험국의 의약품 정보체계 자료를 이용하였다. 의약품 정보체계는 네덜란드의 의약품 지출과 사용정도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병원에서 사용된 약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의약품 판매는 법적으로 보험에 가입된 의약품 패키지의 공립 약국으로 부터의 판매만을 나타내며, 약국 또한 일반 개업의에 의해 지급된 의약품은 제외되었다.

노르웨이는 노르웨이 공중보건연구소의 약품도매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생산하였다. 의약품판매 통계는 도매업자의 소매 약국과 병원 판매분과 선별된 OTC 생산품의 아울렛 판매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총 판매수치는 동물약품도 포함되어 과다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포르투갈은 보건부 국립 의약품과 의료연구원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의약품 판매 통계는 병원소비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스웨덴은 연간 보고되는 스웨덴 의약품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하였다. 소비는 도매 약국의 소매약국과 병원 판매분이다.

스위스는 의약품소비 관련 통계는 현재는 이용이 불가능하며, 의약품판매 관련 통계는 전문약국, 일반약국, 조제의를 포함하지만 병원 판매는 제외되었으며, 연방 공중보건국이 확정한 최고 소매가격에 판매한 환급 약품 판매 가격이다.

영국은 의약품소비 통계의 경우 잉글랜드는 기업서비스청의 처방가격부가 제공한 처방 분석시스템에서 추출된 처방전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통계이며, 스코틀랜드는 개업의 서비스분과가 제공한 스코틀랜드 처방분석 시스템에서 추출된 자료를 이용한 통계이고, 웨일즈는 처방 서비스 유닛 시스템에서 추출된 자료를 이용한 통계이며, 북아일랜드는 지역사회에서 조제된 모든 처방전에 기초한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통계이다. 의약품 판매 통계는 지출과 식품조사에서 추출된 창구 판매 지출자료에 기초하며, 추가로 보건 경제청에서 출판하는 보건통계 일람표에 수록된 자료 등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OECD에서는 각국에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각국의 의약품 판매를 과소 보고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최소 세 가지 존재한다: 1) 판매 자료가 공적 보험 제도에 의해 환급되는 약품만을 포함할 수 있다 2) 소매가격이 아닌 도매가격에 기초했을 수 있다 3) 판매 자료가 병원의 의약품 사용분을 제외했을 수 있다.

(!) 본 섹션에 보고된 다음 국가의 의약품 판매 자료는 상기 제약 요인 중 한 가지 때문에 과소 추계되었다: 호주, 프랑스, 독일, 일본,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공화국, 스페인 (더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이하의 국가별 세부 정보를 참고하라).

의약품의 용도가 한가지 이상 배정 되었을 경우에는, 특정 의약품의 보고에 국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특정 ATC 그룹의 상대적 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또한 유념하여야 한다.

〈表 2-1〉 會員國의 醫藥品統計 生産實態

국가	분류	
	의약품 소비	의약품 판매
	<p>보건과 고령화 연방 부서. 약품 활용 하부 위원회. 미출판 자료. 보건과 고령화 연방 부서. 호주 의약품 통계. 캔버라. (연간). 또한 www.health.gov.au/pbs/healthpro/pubs/asm.htm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p> <p>* 의료 보험 위원회가 의약품 급여 제도와 송환 의약품 급여 제도 (PBS/RPBS)하의 보조금 청구를 위해 제출한 처방전 기록.</p> <p>* 현재 진행중인 지역 약국의 대표 표본 조사. 이 조사는 호주 지역 사회 내 처방 의약품이지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용 실태 추계를 제공함. 공립 병원에서 조제되는 처방 의약품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유념해야 함.</p>	
호주	<p>제산제(Antacids) 부문의 자료는 굉장히 한정되었으므로 이용이 불가능함. 극히 일부만이 의약품 급여 제도상에 등록되어 있음. 호주내의 대부분의 제산제들은 의료 보험 위원회를 통해 청구할 수 없으며, 카운터를 통해 구매해야 함.</p>	<p>* 금액 자료는 PBS/RPBS(정부와 환자)를 위한 총 처방 비용임. 비용은 조사 자료를 위해 수집된 것이 아님을 유념해야 함.</p> <p>* 1990년과 1991년 사이의 감소는 공동 지불 변경의 결과임. 1990년 11월에 빈번한 이용 그룹인 연금가입자를 위한 공동 지불이 도입되었음. Prescription drug utilization following co-payment changes in Australia. Pharmaco Epidemiology.</p>

국가	분류	
	의약품 소비	의약품 판매
		1996. Vol. 5, pp. 385-392 또한 참고
오스트리아	현재 자료의 이용이 불가능함.	
벨기에	<p>파마넷(Pharmanet, RIZIV)</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자료원은 벨기에 질병-무능력 보험에 의해 환급되고, 공중 약국을 통해 지급된 의약품들을 다룸. 병원을 통해 지급된 의약품들과 환급이 불가능한 의약품들, 또는 환급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개인 대상 의약품(대부분 독립 의사들)은 포함되지 않음. * 자료는 수집된 것이며, 일일 사용량 기준단위(DDDs)들은 2005년 ATC 분류에 따라 계산된 것임. * 자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 '일일 사용량 기준단위/복용자 1000명/일'의 숫자로 표시됨. 일일 사용량 기준단위 수 x 1000 / 전체 인구 x 365 * 종목 A02A와 N05CD는 벨기에에서는 환급되지 않음. 	<p>벨기에 의약품 산업 연합 (www.pharm.be)</p> <p>"공장 출고" 가격("off factory" prices)에 해당하는 가격과 총 판매 가격(소매 약국과 병원 약국에 의한 유통을 목적으로 함)은 경제부 수치를 기초로 함 (백만 유로 단위).</p>
캐나다	현재 자료의 이용이 불가능. 캐나다 의료 정보 연구원(CIHI)이 의약품 활용에 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의약품의 해부 치료적 분류 체계(Anatomic Therapeutic Classification System, ATC)를 채택해오고 있으나, 아직은 ATC에 따른 국가 자료 수집을	

국가	분류	
	의약품 소비	의약품 판매
	개시하지 않았음.	
체코공화국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 의약품 관리원(www.sukl.cz)</p> <p style="text-align: center;">* 자료는 ATC 색인을 따름 (세계보건기구 협력 의약품 통계 방법론 센터).</p>	
	<p>* 자료는 배포된 약제의 금액을 표시함.</p> <p>* 2000-2004년 자료는 ATC 색인의 2004년 판을 따른 것임.</p>	<p>* 자료는 배포된 약제의 허용된 최대 판매 이윤 금액가치를 나타냄.</p> <p>* (!) 2000-2004년 자료는 ATC 색인의 2004년 판을 따른 것임.</p>
덴마크	<p style="text-align: center;">덴마크 의약품청</p> <p style="text-align: center;">* 항천식제(Anti-asthmatics): 자료는 종목 R03을 포함함.</p> <p style="text-align: center;">* 수치는 ATC / DDD에 따른 요청 그룹에 기초한 것임.</p>	
	<p>* 자료는 1997년부터 기초 분야와 병원을 포함함. 1997년 이전에는 오직 기초 분야만 포함되었음.</p>	<p>* 가격은 의약품 소매 가격임.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았음.</p> <p>* 의약품 판매는 기초 분야와 병원만 포함하였음.</p>
핀란드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 의약품청, 안전과 의약품 정보부, PO Box 55, 00301 Helsinki</p>	
	<p>* 커버리지: 도매업자의 소매 약국과 병원 판매분</p> <p>* 방법: 판매 자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 'DDDs/복용자 1000명/일'의 숫자로 표시됨.</p> <p>* 총 소비는 DDD(복용자 수)/1000 x 365로 측정됨.</p> <p>* 수치는 의약품 판매를 'DDD/복용자 1000명/일'의 숫자로 표시함</p>	<p>* 커버리지: 특정 ATC그룹에 따른 도매업자의 소매 약국 판매분. 총 판매 수치는 병원 판매분 또한 포함하고 있음.</p>

국가	분류	
	의약품 소비	의약품 판매
프랑스	<p>ATC 종목에 따른 DDD측정이 아직 프랑스 내에서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현재로서는 자료의 이용이 불가능함. 그러나 아래의 출판물들에서 여타의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comte Th., Paris V., Consommation de pharmacie en Europe, 1992 : Allemagne, France, Italie, Royaume-Uni, Irdes, 1994, 128 pages. - Taboulet, F., "Presentation d'une methodologie permettant de mesurer en quantite et de comparer les consommations pharmaceutiques", Journal d'Economie Medicale, 1990, Vol. 8, No. 1, pp. 37-63. 	<p>Agence francaise de Securite sanitaire des Produits de Santes (AFSSAP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는 ATC 분류에 따른 약국과 병원 판매분을 나타냄. 판매수치는 공장 출고 가격임. * 2003년부터, AFSSAPS 자료는 메트로폴리탄 프랑스 + DOM을 일컬지만, 1988년부터 전체 시리즈를 위한 인구 비율은 이를 기초로 계산된 것임. * 제시된 판매 자료는 할인을 고려한 것이며, 의약품 시장을 나타냄. * 프랑스에서는 의약품의 환급 가격이 정부에 의해 고정되는 반면, 비환급 의약품과 집단을 위한 의약품의 가격은 제약 산업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됨. * 병원시장과 관련하여, 판매 자료들은 유효 판매 가격에 기초하여 계산되며, 다양한 집단(개인 병원, 지역 센터, 면역 센터 등)으로의 판매분을 포함함. * "Various"와 "Products not classified elsewhere" 종목 사이의 분해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자료는 "Products n.e.c." 종목으로 나타남.

국가	분류	
	의약품 소비	의약품 판매
		<p>* 모든 자료는 매년 3월 31일 부 로 AFSSAPS 에 제출한 판매 신고에서 추출한 것임. 이들 신 고들은 의무적인 것으로, 항목L 5121-17과 다음의 "Code de la Sante Publique" (Public Health Code)에 나타남.</p> <p>* 더 상세한 정보: "Analyse des ventes de medicaments aux officines et aux hopitaux en France: 1993-2003", Afssaps. Website: http://afssaps.sante.fr/pdf/5/v entmed.pdf 와 "Analyse des ventes de medicaments aux officines et aux hopitaux en France: 1992-2002", 4eme edition, Afssaps. Website: http://agmed.sante.gouv.fr/pd f/5/med2004.pdf</p>
	AOK 연구원(WIdO), 독일 의약품 색인 http://www.wido.de	
독일	<p>* (!) DDD/피보험자 1000 명/일 (‘DDD/복용자 100명/일’ 대신)</p> <p>* 완제의약품(finished drugs)의 처방은 1991년부터 동독을 포 함하여(외래 분야) 독일 법정 의료 보험의 적용을 받음. 데이 터베이스는 의약품에 대한 총</p>	<p>AOK 연구원(WIdO), 독일 의약품 색인 http://www.wido.de</p> <p>* (!) 총 판매: 독일내 자료는 총 판매의 단지 일부분인 법정 의 료 지출에서 추출되었음. 2005 년에 관찰된 중요한 감소는 2004년의 마지막 개혁 때문임.</p>

국가	분류	
	의약품 소비	의약품 판매
	<p>지출 공식 통계 (KV45)를 계속한 표본임.</p> <p>* 분류: 세계보건기구의 'ATC 분류와 DDDs'최근판(2006년 1월)과 독일 의약품 색인을 위해 AOK 연구원이 작성한 '독일 의약품 시장을 위한 특정 의약품 추가 분류 (Fricke U, Gunther J, Zawinell A, 2005)': Anatomisch-therapeutisch-chemische Klassifikation mit Tagesdosen für den deutschen Arzneimittelmarkt., Wlido: Bonn.</p> <p>의약품 산업 근대화 법률(GMG)에 따라, 비처방 의약품은 환급에서 광범위하게 제외되었음. 따라서, 2004년도 물품의 시장 바구니(the market basket of goods of 2004)는 전년도들과 다름.</p>	<p>이는 공적 건강 보험 환급을 판매 대응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보여줌. 병원 판매분은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당히 과소추계되었음.</p> <p>* 독일 법정 의료 보험 내 완제의약품 판매를 백만 유로 단위로 나타낸 자료에는 환자의 공동 지급이 포함됨.</p> <p>* 처방 자료는 오직 완제의약품만을 포함함. 포함되지 않은 것의 예로는 반창고, 붕대, 빠른 시험 방식 등이 있음.</p> <p>* 분류: 세계보건기구의 'ATC 분류와 DDDs'최근판(2006년 1월)과 독일 의약품 색인을 위해 AOK 연구원이 작성한 '독일 의약품 시장을 위한 특정 의약품 추가 분류 (Fricke U, Gunther J, Zawinell A, 2006)': Anatomisch-therapeutisch-chemische Klassifikation mit Tagesdosen für den deutschen Arzneimittelmarkt., Wlido: Bonn.</p> <p>* 2004년의 결렬: 의약품 산업 근대화 법률(GMG)에 따라, 비처방</p>

국가	분류	
	의약품 소비	의약품 판매
		의약품은 환급에서 광범위하게 제외되었음. 따라서, 2004년도 물품의 시장 바구니(the market basket of goods of 2004)는 전년도들과 다름.
그리스	의약품 연구 기술원 IFET (국립 의약품 기구의 산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자료는 ATC 2003년도판 기준임. * 2004년 자료는 ATC 2004년도판 기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자료는 ATC 2004년도판 기준임. * 의약품 판매는 제약 회사의 공립 병원, 도매상, 약국 판매분을 나타냄. 자료는 병행 수출을 포함함. 총 금액은 공립 병원에 병원가로 판매한 금액과, 도매상/약국에 소매가격으로 판매한 금액의 합임.
헝가리	pharmMIS 헝가리 의약품시장 연감 색인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C 출판물의 해당년도 자료가 사용됨.(예: ATC 2004에는 2004년도 자료, ATC 2005에는 2005년 자료 등) * 자료는 DDD/복용자 1000명/일로 표시됨. 	PharmMIS 헝가리 의약품시장 연감 색인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판매 자료는 출고가를 기초로 하였으며, 병원과 약국 내 약품 사용을 포함함. * 자료는 'DDD/복용자 1000명/일'로 표시됨.
아이슬란드	보건 사회보장부, 의약품 본부.	
	* 도매상으로부터의 마케팅 권한과 함께 판매한 의약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9년 이전 수치들은 DDD 정의 변경에 따라 수정되지 않았음. 1989년 이후 수치들은 DDD 정의 변경에 따라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치들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소매 가격으로 표시되었음. 총 판매 수치는 병원 판매분도 포함.

국가	분류	
	의약품 소비	의약품 판매
	<p>되었으며 ATC 2005년도판 정의에 따라 표시되었음.</p>	<p>* 1989년 이전 수치는 ATC 그룹 정의 변경에 따라 수정되지 않았음. 1989년 수치는 ATC 변경에 따라 수정 되었으며 ATC 2005년도판 종목을 따랐음.</p> <p>* 다른 곳에서는 분류되지 않은 제품들: 1980-1988년간 "Products not elsewhere classified"에 대한 마지막 종목은 ATC P(Antiparasitic products), S(Sensory organs), V(Various)에 포함되었음. 1989년 이후로 이들 ATC 그룹은 각자 표시되었기에 값이 "0"이 됨.</p>
아일랜드	<p>정보원은 일반 의료 서비스 (General Medical Services, GMS).</p> <p>* 일반의료서비스 제도는 자신과 자신의 피부양자를 위한 비전문 의의 의료, 외과 서비스를 마련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이며, 70세 이상 모든 인구는 일반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음.</p> <p>* 본 제도 하에 제공되는 약품과 장비들은 소매 약국을 통해 공급됨. 대부분의 경우에 의사가</p>	<p>보건 사회보장부, 의약품 본부.</p> <p>* 도매상으로부터의 마케팅 권한과 함께 판매한 의약품 포함. 수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소매 가격으로 표시되었음. 총 판매 수치는 병원 판매분도 포함.</p> <p>* 1989년 이전 수치는 ATC 그룹 정의 변경에 따라 수정되지 않았음. 1989년 수치는 ATC 변경에 따라 수정 되었으며 ATC 2006년도판 종목을 따랐음.</p>

국가	분류	
	의약품 소비	의약품 판매
	<p>완성된 처방전을 개인에게 주면, 개인은 이를 조제하기 위해 보건 서비스 집행부와 계약을 맺은 약국이면 어느 약국에나 가져갈 수 있음. 지방에서는 의사가 병원조제를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음. 모든 일반의료서비스 요청은 보건서비스 집행부의 기초 치료 환급 서비스를 통해 처리, 지급됨.</p>	<p>* 다른 곳에서는 분류되지 않은 제품들: 1980-1988년간 "Products not elsewhere classified"에 대한 마지막 종목은 ATC P(Antiparasitic products), S(Sensory organs), V(Various)에 포함되었음. 1989년 이후로 이들 ATC 그룹은 각자 표시되었기에 값이 "0"이 됨.</p>
이태리	<p>자료는 "이태리의 의약품 사용-국가보고서 2005"에서 추출됨. Ministero della Salute, 2006</p>	<p>FARMINDUSTRIA 총 의약품 판매 자료</p> <p>* 2005: 2005년 1월-11월 기간의 잠정 추계 자료.</p> <p>* 할인을 제외한 순 가격으로 약국과 기업에는 변제되나 국가의료 시스템상 환급 가능 약품에만 지급됨.</p> <p>* ATC 종목별 판매 자료의 이용은 현재 불가능함.</p>
일본	<p>현재 자료의 이용이 불가능함.</p>	<p>보건복지부, 제약 산업 생산 조사 (2004).</p> <p>조사 주기는 매년. 더 상세한 정보는 http://www.mhlw.go.jp/topics/yakuji/2003/nenpo.html를 참조 (일본어만 이용가능).</p> <p>* 자료는 생산 양을 나타냄(국내</p>

국가	분류	
	의약품 소비	의약품 판매
		<p>생산만).</p> <p>* 자료는 ATC 그룹과 보건복지부의 협력에 따라 재분류되었음. 재계산이 불가능했던 일부 그룹들(예: Musculoskeletal system)과 국제 비교가 불가능한 종목들(예: 비타민 혼합제, 한약)은 제외되었음.</p>
한국	<p>ATC 분류를 따른 자료의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현재 자료의 이용이 불가능함. 그러나 항생제 사용에 관한 특별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며 "체계적 항생제 이용: 1997년판의 33.1, 1998년판의 33.2" 자료도 이용 가능함(복용자 1000명당 DDD로 표시된다). 자료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약품사용평가, 1999.</p>	<p>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감, 2004.</p>
	질병 기금 조합	
룩셈부르크	<p>* 의료 보험에 의해 환급된 약물에 기초한 자료로 병원 소비분은 포함되지 않았음. 제공되는 자료는 피보험 거주 인구만을 가리키며, 총 거주인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님.</p> <p>* 피보험 거주 인구에 관한 정보는 "Health Care Coverage"라</p>	<p>* 질병 보험에 따른 환급 순 금액으로 일천 유로 단위로 표시됨.</p> <p>* 아래의 사항은 자료에서 제외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에서 약품비 - 국가 영토를 벗어나 질병 보험으로 커버되는 약품비

국가	분류	
	의약품 소비	의약품 판매
	는 장에 수록되어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질병 보험 체제로 커버되지 않는 개인의 약품 소비 - 피보험자 개인이 부담하는 약품비로 처방 약품의 비환급 부분과 처방전 없이 구입한 약품. * 주의: 1995년 이후로 병원들은 예산을 준수해야 하며 입원 (in-patient stays)과 관련된 약품비는 통계 시리즈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음.
멕시코	현재 자료의 이용이 불가능함.	
네덜란드	<p>자료원: GIP(의료 보험국의 의약품 정보 체계)</p> <p>GIP는 1988년 이후로 사용되고 있는 의료 보험국의 정보 체계로, 네덜란드 의약품 지출과 사용 정도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음. 목록은 의약품 처방 관련 데이터를 포함하는데 이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문의와 전문가에 의해 처방되고 - 약국, 약품 처방 비전문의와 다른 창구를 통해 조제되고 - 의료보험법 하에 환급됨 <p>* 병원에서 사용된 약제는 포함되지 않았음.</p> <p>* 항생제의 체계적 사용(J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년까지의 수치는 (1997년 포함) Nefarma(제약 산업과 도매상 협회)로부터 받은 자료로, 자가복용을 포함하여 네덜란드 내 제작자 가격으로 공장에서 수출업자에게 판매된 의약품의 총 규모를 나타내는데, 여기에는 평행 수출된 약품도 포함됨. * 1998년 이후로의 수치는 Stichting Farmaceutische Kengetallen에서 추출된 것이며, 법적으로 보험에 가입된 의약품 패키지의 공립 약국으로부터의 판매만을 나타내며, 약

국가	분류	
	의약품 소비	의약품 판매
	<p>2004, 2005년 자료 역시 이 자료원에서 추출된 것임. GIP 데이터베이스는 9개의 의료 보험 기관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7백5십만명의 피보험자 대표 샘플(네덜란드 인구의 거의 절반)로부터 추계된 것임. 자료는 'DDD수/일당 복용자 1000명'으로 표시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DDD수 x 1000 / 총(연평균)인구 /36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 ATC 색인이 사용되었음. * 제산제, 비뇨기 체계와 성호르몬, 성호르몬과 생식기 조절제 사용의 감소: 2004년 이후 몇몇 청구 판매 의약품이 의료보험기금에 의한 보상에서 제외되었고, 대부분의 민영 보험에 의한 보상에서도 역시 제외되었음. 	<p>국 또한 운영하는 일반 개업의에 의해 지급된 의약품은 제외하며, 병원내에서와 병원에의해 지급된 의약품은 제외함: 비용은 6%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나 가격 한도 초과 부분에 대한 환자의 지출은 제외함.</p>
뉴질랜드	<p>내용없음</p>	<p>현재 자료의 이용이 불가능함. 뉴질랜드는 약제 자료를 DDD 형식이 아닌, 오직 처방전 수로만 수집함.</p> <p>PHARMAC 의약품 경영청. 자료는 Pharmhouse database에서 제공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는 해당 년도의 6월까지의 12개월에 해당함.

국가	분류	
	의약품 소비	의약품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년과 1998년 사이의 수치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North Health data의 조정 때문에 증가하였음. * 비용은 생산자 출고가(GST excl)로, 처방분과 조제분량임. 환자 지급 가격은 약품에 대한 상정부의 상이한 요율에 따라 달라짐. * (!) 분류는 약품의 스케줄을 나타내며, ATC 분류에 영성하게 기초하고 있음 (http://www.pharmac.govt.nz/pdf/Sched.pdf를 보라). 일부 그룹은 OECD가 요구하는 것과 다름. 예를 들어, OECD의 여러 그룹은 특별 식품, 즉흥 혼합 조제,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음. 일부 약품들은 작년에 재분류되었음.
노르웨이	<p>약품 도매 통계 데이터베이스, 노르웨이 공중보건 연구소, Department of Pharmacoepidemiolog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C의 2007년 1월 판. 2007년 1월부터의 ATC/DDD 수정은 미미하며 자료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 	<p>약품 도매 통계 데이터베이스, 노르웨이 공중보건 연구소, Department of Pharmacoepidemiolog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C의 2007년 1월 판. 2007년 1월부터의 ATC/DDD 수정은 미미하며 자료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 * 커버리지: 도매업자의 소매 약국과 병원 판매분과 선별된

국가	분류	
	의약품 소비	의약품 판매
		OTC 생산품의 아울렛 판매분 (예: 식료품 상점). * 수집: 판매 수치는 노르웨이 공중보건 연구소에 의해 수집되었음. * 방법: 약국 소매 가격(AUP)으로 표시된 총 판매는 ATC 주요 그룹(첫번째 레벨)당 주어진다. 'DDD/복용자 1000명/일'로 표시되는 판매는 선별된 ATC 그룹에 포함됨. * 노르웨이의 총 판매 수치는 동물약품도 포함함
폴란드	현재 자료의 이용이 불가능함.	
	보건부 국립 의약품과 의료 연구원	
포르투갈	* 이들 자료는 DDD/복용자 1000명에 의한 약제 소비와 ATC 그룹 각각의 총 판매 백분율을 나타냄. * 방법: 판매 자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 'DDDs/복용자 1000명/일'의 숫자로 표시됨: 총 소비는 $DDD \times 1000 / \text{복용자 수} \times 365$ 로 측정됨. * 제시된 자료는 외래 시장에서의 국립 보건 서비스를 나타냄. 국립 병원 소비분과 민간 병원	* 자료는 외래 시장에서의 국립 보건 서비스를 나타내며 병원 소비분은 포함하지 않음. * "Products not elsewhere classified"에 포함된 자료는 ATC 분류가 없는 약품을 나타냄. * 2003년도 자료는 2004 ATC를 사용하여 계산되었음. 2004년도 자료는 2005 ATC를 사용하여 계산되었음. 2005년도 자료는 2006 ATC를 사용하여 계산

국가	분류	
	의약품 소비	의약품 판매
	<p>소비분, 카운터를 통해 지급된 의약품과 일부 보장 펀드의 회원들(공무원, 군인, 경찰을 포함한 정부 종사자)에게 지급된 처방 의약품은 포함하지 않음.</p> <p>* 2003년도 DDD소비는 2004 ATC를 사용하여 계산되었음. 제산제와 관련해서는 이 분류의 오직 3가지 물질만이 DDD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magnesium hydroxide는 공동으로 사용량이 있었음. 포르투갈은 의약품의 DDD를 공동으로는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DDD로 보면 이 그룹의 소비량은 없음. 예) DDD가 없는 물질로 된 제산제의 판매분은 있음: -Magaldrate - Dihydroxialumini sodium carbonate + Dimeticone - Dimeticone + Aluminium hydroxide + Magnesium hydroxide.</p> <p>* 2004년도 DDD소비는 2005 ATC를 사용하여 계산되었음. 제산제와 관련해서는, 이 종목안의 소비가 있는 물질들은 ATC 2005년판에 따르면 DDD가 없음.</p>	<p>되었음</p>

국가	분류	
	의약품 소비	의약품 판매
	* 2005년도 DDD 소비는 2006 ATC를 사용하여 계산되었음.	
슬로바키아 공화국	<p>유한회사 MCR, 모드라, 슬로바키아 공화국.</p> <p>* 약품의 입수와 처리 시스템으로의 의약품 소비량 정보는 도매상 분배 기구 보고서에서 나온다. 법령 번호 140/1998 Coll., 에 따라, 그 보고서들은 "국가 의약품 통제 연구원(SUKL)"에 판매된 의약품 양의 정보를 제공함.</p> <p>* 소비량 정보는 지면, 전자 매체(MCR, s.r.o. Modra에서 발표한 소프트웨어 안의 분기별 누적 자료 데이터베이스)로도 얻을 수 있음. SUKL Bratislavark 제공한 자료는 MCR company에서 제공한 소프트웨어에 수록되어 있는데, 정부 기관을 통해 입수할 수 있으며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음.</p>	
스페인	현재 자료의 이용이 불가능함.	<p>건강과 소비자 부서</p> <p>* 자료는 ATC 2006 분류를 따름.</p> <p>* (!) 자료의 과소추계: 약국이 환자에게 도매가격으로 판매한 의약품의 총 판매, 오직 국가 건강 체계 처방전만.</p> <p>* 병원내 약품 소비는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음.</p> <p>* 더 자세한 정보는 http://www.msc.es/profesionales/farmacia/home.htm</p>
스웨덴	<p>APOTEKET AB, 스톡홀름, 스웨덴. 스웨덴 의약품 통계 (연간 보고서) (스웨덴 의약품 국가 조합).</p> <p>APOTEKET AB, 스톡홀름, 스웨덴. 스웨덴 의약품 통계 (연간 보고서). 스웨덴 의약품 국가 조합.</p> <p>* 커버리지: 도매업자의 소매 약국과 병원 판매분</p>	
		<p>* 내수 시장에서의 의약품의 총 판매.</p> <p>* 2000년부터 "Products not elsewhere classified"종목의 값은 "0"임.</p>

국가	분류	
	의약품 소비	의약품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 APOTEKET AB, 스톡홀름, 스웨덴. * 수치는 의약품 판매를 'DDD/복용자 1000명/일'의 숫자로 표시하는데 (성인만은 아님), 이는 오슬로의 세계보건기구 협력 센터에서 발행하는 ATC 색인에 따라 매년 업데이트 됨. * DDD 통계는 모든 승인된 의약품의 병원 판매분, 처방 의약품의 공중 판매분과 카운터 판매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그룹 B: 세계보건기구는 B05의 DDD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일부 국가(예: 스웨덴)들은 이들 그룹에 자국의 DDD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음. 이들 국내 DDD들은 상이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들의 통계 비교를 어렵게 함. 따라서 B05는 통계에서 제외되어야 함. * 혈액과 혈액 형성 기관 자료의 결렬은 폴산(folic acid)의 DDD가 2000년 이후로 포함되었기 때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1999년도의 가격은 제약 약국 (pharmaceutical Pharmacy) 구입 가격임.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았음. * 1980-1999년도의 가격은 제약 약국 소매가격임.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았음. * Beta locking agent 자료의 결렬은 제네릭 대체에 의한 Beta locking agent 금액 감소에 좌우됨. * Antiinflammatory & antirheumatic products non-steroids 자료의 결렬은 COXIBS 약품의 강한 감소에 좌우됨.
스위스	<p>현재 자료의 이용이 불가능함. 의약품 소비와 관련한 자료원이 없으며, 보건 조사로부터 나온 자료로는 의약품 소비의 일일 사용량</p>	<p>2000년까지의 자료: 총 의약품 판매: 스위스 약사 연합. Interpharma (구 Pharma Information), 스위스 의약정보의 연구 기반 제약 회</p>

국가	분류	
	의약품 소비	의약품 판매
	계산이 불가능함.	<p>사 협회, 바젤. 2001년 이후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ATC 코드는 European Pharmaceutical Marketing Research Association의 분류에 기초함. * 2001년까지의 수치는 병원 채널과 등록 비전문의약품 (non-pharmaceuticlas)과 비영구약품 (medical non-durables)을 포함함. <p>2002년 이후: 판매는 전문약국 (pharmacies), 일반약국 (drugstores), 조제 의사 (dispensing physicians)을 포함한다. 병원 판매는 제외함. 스위스 연방 공중보건국이 확정한 최고 소매 가격에 판매한 환급 약품 판매 (부가가치세 제외). 권장 소매 가격에 판매된 비환급약품 판매. 약국에서 환자가 지불한 추가 조연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도의 "products not elsewhere classified" 항목의 증가는 일부 약품이 OECD 요청 ATC 종목으로는 분류될 수 없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EphMRA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몇몇 ATC 종목은 이 잔여 카테고리로 보고되었음.
터키	현재 자료의 이용이 불가능함.	터키 제약 산업 사업자 조합.

국가	분류	
	의약품 소비	의약품 판매
영국	<p>잉글랜드 자료: 처방전 통계, 보건부: 자료원 = PCA 자료. www.publications.doh.gov.uk/prescriptionstatistics/index.htm</p> <p>- 처방전 자료는 기업서비스청(Business Services Authority)의 처방가격부(Prescription Pricing Division, PPD)가 제공한 처방비용분석(Prescription Cost Analysis, PCA) 시스템에서 추출되었으며, 예: 지역 약국과 설비 계약자들, 조제 의사, 잉글랜드 내에서 개인적으로 투약된 품목에 대해 처방의사에 의해 제출된 처방전들)에 대한 전면 분석에 기초하였음. 또한 처방전 중 작성은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맨섬에서 이루어졌으나 조제는 잉글랜드 내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포함되었음.</p> <p>스코틀랜드 자료: 정보 서비스, 의료산업 정보 그룹, NHS 국가 서비스 스코틀랜드, 자료원 = PIS 데이터 저장소 www.isdscotland.org/isd.</p> <p>- 자료는 개업의 서비스분과 (Practitioner Services Division, PSD)가 제공한 스코틀랜드 처방 분석(Scottish Prescribing Analysis,</p>	<p>보건부와 처방가격청</p> <p>* 1994년까지 총 판매 수치는 보건부에 의해 제공되었음.</p> <p>* 1994년까지 ATC 종목에 의한 판매는 보건성이 처방가격청의 자료를 이용하여 제공하였음.</p> <p>* 1995년부터, 이 자료들은 '지출과 식품 조사'(통계청, 선행 조사는 '가족 지출 조사')에서 추출된 창구 판매 지출 자료에 기초하며, 추가로 보건 경제청에서 출판하는 보건 통계 일람 표에 수록된 영국 자료는 처방가격청의 연간 통계 요약자료와 영국보건부 자료를 이용한 것임.</p> <p>* 2003년 화학 제품을 위한 인플레이션율은 영국 통계청 Business Monitor MM23 Focus on Consumer Price Indices Dec 2004.</p> <p>* (!) 1994년까지 ATC 자료는 잉글랜드만을 위한 것이므로 총 판매 수치와 일치하지 않음.</p> <p>* 1995년 이후 사용된 종목들은 ATC 분류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p> <p>* 2002, 2003, 2004년 자료들은 전년도 조제 가격을 사용하였</p>

국가	분류	
	의약품 소비	의약품 판매
	<p>SPA) 시스템에서 추출되었으며, 지역사회에서 조제된 모든 처방전(예: 지역 약국과 설비 계약자들, 조제 의사와 재고 주문도 포함)에 대한 전면 분석에 기초하였음. 또한 처방전 중 작성은 웨일즈,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맨섬에서 이루어졌으나 조제는 스코틀랜드 내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포함되었음.</p> <p>웨일즈 자료: 처방 서비스 유닛(Prescribing Services Unit) 헬스 솔루션 웨일즈. http://www.wales.nhs.uk/page.cfm?pid=97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는 처방 서비스 유닛(Prescribing Services Unit) 시스템에서 추출되었으며, 지역사회에서 조제된 모든 처방전(예: 지역 약국과 설비 계약자들, 조제 의사, 잉글랜드 내에서 개인적으로 투약된 품목에 대해 처방 의사에 의해 제출된 처방전들)에 대한 전면 분석에 기초하였음. 또한 처방전 중 작성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맨섬에서 이루어졌으나 조제는 웨일즈 내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포함되었음. <p>북아일랜드 자료: 일반 의약품 서비스, 중앙 서비스청(Central</p>	<p>음. 이들은 비교적 일정하며 총합의 작은 일부만을 구성할 뿐이다. 예를 들어, 심장혈관약은 1/10th 미만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자료는 스코틀랜드 추정치도 포함함. * 2003년 창구 판매 지출 자료는 2002년 수치를 2003년 화학 제품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사용하여 조정하여 추계하였음. * 그럴듯하게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를 10,000,000 근접해서 반올림 하였음. * 자료 수집원의 변경으로 인해 1995년 이전 이후 자료는 직접 비교할 수 없음.

국가	분류	
	의약품 소비	의약품 판매
	<p>Services Agency, CSA), 벨파스트.</p> <p>http://www.centralserviceagency.com/display/statistic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는 지역사회에서 조제된 모든 처방전 (예: 지역 약국과 설비 계약자들, 조제 의사)에 기초하였음. * 자료 결렬: 1991: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 1992 - 2000: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2001년 이후: 영연방 * (!)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자료는 병원에서 조제된 약품(정신 건강 신탁 포함)과 개인 처방전은 포함하지 않고, 오직 지역사회에서 조제된 약품만 포함함. 스코틀랜드: 자료는 병원에서 조제된 약품과 개인 처방전은 포함하지 않고, 오직 지역사회에서 조제된 약품만 포함함. 일부 약품 조제(preparation)는 처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DDD값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들의 경우, 이 약품들은 DDD 계산에서 제외되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각자 약품 그룹의 DDD 수 계산에 기여하지 않음. * (!) 영연방은 DDD를 ATC 분류에 따라 분류하지 않으며, 대신 British National Formulary(BNF 분류)를 사 	

국가	분류	
	의약품 소비	의약품 판매
	<p>용함. 따라서 BNF 약품 그룹은 ATC 분류와 대략적으로 일치하며, 각각의 그룹은 엄격하게 동일한 약품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음.</p> <p>* 모든 자료는 달력년도를 따름.</p> <p>* (!) 2005 - Code A10(당뇨 약품), J01 (체계적 사용을 위한 항생제), NO6A(항우울제)는 전년도와 같이 영국과 일치함. 2005년의 모든 자료는 잉글랜드만임</p>	
미국	현재 자료의 이용이 불가능함.	

第3章 우리나라 醫藥品 統計生産現況

第1節 OECD 統計 提出現況

우리나라가 OECD가입후 매년 각종 통계를 요구해오고 있다. 이 가운데 보건통계는 건강상태,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보건비용, 사회보장, 의약품시장 등 7개 분야로 나뉘어 있으며, 이들 분야의 요구항목은 매년 변화하여 왔다.

2007년 이들 통계의 요구항목을 보면 보건의료이용이 356개 항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보건비용으로 152개 항목 그리고 다음은 의약품시장은 58개 항목을 요구하였다. 의약품시장에서 요구한 58개 요구항목 중 11개 항목에 대한 통계를 작성 제출하여 제출률은 19.0%로 7개 분야의 통계 중 가장 낮은 제출률을 보였다.

〈表 3-1〉 2007年 OECD 保健統計 提出現況(項目基準)

분류명	2006년			2007년					
	항목수	제출수	제출률	항목수	기존자료	보완	신규생산	계	제출률(%)
계	673	487	72.4	672	28	471	51	550	81.8
건강상태	40	34	85.0	36	5	29	1	35	97.2
보건의료자원	27	11	40.7	37		11	14	25	67.6
보건의료이용	353	326	92.3	356	20	306	2	328	92.1
보건비용	152	78	51.3	152		94	34	128	84.2
사회보장	18	8	44.4	18		8		8	44.4
의약품시장	68	15	22.1	58	1	10		11	19.0
보건의 비의료 결정요인	15	15	100.0	15	2	13		15	100.0

우리나라의 의약품통계에 대한 제출률이 낮은 것은 분류체계의 차이에 따른 문제를 들 수 있다.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는 ATC 분류에 의한 통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의약품 약효에 따른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상이한 분류체계에 따른 통계생산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의약품 소비자 판매 통계는 최종 소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통계를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나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생산이 부진한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第 2 節 會員國의 醫藥品 統計 提出現況

OECD 회원국의 OECD 요구 통계에 대한 제출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회원국의 분야별 평균제출률은 보건의 비의료결정요인이 96.2%로 가장 높고, 다음은 건강상태로 92.9% 그리고 사회보장이 90.0%의 순으로 높았고, 의약품시장은 51.2%로 가장 낮았다. 즉, 의약품 시장에 대한 제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아직 만족스런 제출률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와 같은 제출률의 부진 원인은 분류체계의 차이에 따른 문제 그리고 별도의 조사가 미흡하거나 관련통계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이 통계생산의 부진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점차 의약품통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출률도 높아지고 있다. 의약품시장에 대한 제출률이 높은 국가는 덴마크, 독일, 스웨덴 등이 100.0%의 제출률을 보여 가장 높은 제출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호주, 체코,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가 90% 이상의 높은 제출률을 보였다.

반면에 캐나다, 멕시코, 미국과 같은 국가는 아직 하나의 통계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의 생활수준이나 경제력 등으로 볼 때 의약품에 대한 통계가 전혀 생산이 안 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며, 분류체계 등의 상이로 인한 미생산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表 3-2〉 OECD 會員國의 保健統計 部門別 提出率: 2006(CD-ROM 수록기준)

국 가	건강 상태	보건 의료 자원	보건 의료 이용	보건 비용	사회 보장	의약품 시장	보건의 비의료 결정요인	계
평균	92.9	81.3	82.9	65.6	90.0	51.2	96.2	76.9
한국	85.0	47.6	91.8	80.2	100.0	22.1	100.0	80.4
호주	97.5	90.5	100.0	90.1	100.0	98.5	100.0	97.3
오스트리아	95.0	76.2	95.5	45.8	100.0	1.5	86.7	74.5
벨기에	97.5	90.5	99.2	64.1	100.0	67.6	86.7	87.9
캐나다	92.5	90.5	35.2	93.9	100.0	0.0	100.0	51.3
체코	100.0	85.7	90.7	71.0	100.0	98.5	93.3	88.1
덴마크	97.5	81.0	99.2	81.7	100.0	100.0	100.0	95.0
핀란드	90.0	85.7	99.4	48.9	100.0	95.6	100.0	87.6
프랑스	97.5	90.5	98.9	89.3	100.0	39.7	100.0	90.3
독일	97.5	90.5	91.8	79.4	100.0	100.0	100.0	90.8
그리스	50.0	85.7	68.2	16.8	100.0	98.5	93.3	61.3
헝가리	97.5	90.5	26.8	78.6	100.0	61.8	93.3	50.2
아이슬란드	95.0	85.7	98.3	47.3	100.0	98.5	93.3	87.1
아일랜드	95.0	95.2	94.1	28.2	100.0	1.5	100.0	71.0
이탈리아	97.5	90.5	100.0	32.1	75.0	2.9	93.3	74.8
일본	95.0	66.7	46.5	84.0	100.0	17.6	100.0	56.7
룩셈부르크	87.5	85.7	95.8	94.7	100.0	60.3	86.7	90.8
멕시코	92.5	76.2	30.7	50.4	25.0	0.0	86.7	38.1
네덜란드	95.0	76.2	100.0	80.9	100.0	25.0	100.0	87.0
뉴질랜드	95.0	66.7	32.1	12.2	100.0	41.2	100.0	36.5
노르웨이	95.0	71.4	94.4	83.2	100.0	60.3	100.0	87.9
폴란드	85.0	66.7	89.0	93.9	0.0	2.9	100.0	79.0
포르투갈	97.5	85.7	99.2	58.0	100.0	98.5	93.3	90.0
슬로바키아	90.0	90.5	91.0	42.0	75.0	97.1	86.7	81.2
스페인	97.5	90.5	90.1	99.2	50.0	50.0	93.3	87.8
스웨덴	97.5	47.6	96.9	33.6	100.0	100.0	100.0	82.8
스위스	97.5	95.2	99.4	77.1	100.0	23.5	100.0	86.5
터키	82.5	85.7	45.6	71.0	100.0	51.5	100.0	57.1
영국	97.5	85.7	100.0	61.8	100.0	20.6	100.0	83.1
미국	97.5	71.4	87.9	77.9	75.0	0.0	100.0	76.6

자료: OECD, OECD Health Data 2006, 2006.

〈表 3-3〉 OECD 會員國의 醫藥品統計 部門別 提出率: 2006(CD-ROM 수록기준)

국 가	의약품 시장		
	판매	소비	계
평균	57.1	44.8	51.2
한국	40.0	3.0	22.1
호주	100.0	97.0	98.5
오스트리아	0.0	3.0	1.5
벨기에	42.9	93.9	67.6
캐나다	0.0	0.0	0.0
체코	97.1	100.0	98.5
덴마크	100.0	100.0	100.0
핀란드	94.3	97.0	95.6
프랑스	74.3	3.0	39.7
독일	100.0	100.0	100.0
그리스	97.1	100.0	98.5
헝가리	45.7	78.8	61.8
아이슬란드	97.1	100.0	98.5
아일랜드	0.0	3.0	1.5
이탈리아	2.9	3.0	2.9
일본	34.3	0.0	17.6
룩셈부르크	45.7	75.8	60.3
멕시코	0.0	0.0	0.0
네덜란드	45.7	3.0	25.0
뉴질랜드	80.0	0.0	41.2
노르웨이	42.9	78.8	60.3
폴란드	2.9	3.0	2.9
포르투갈	100.0	97.0	98.5
슬로바키아	97.1	97.0	97.1
스페인	94.3	3.0	50.0
스웨덴	100.0	100.0	100.0
스위스	45.7	0.0	23.5
터키	100.0	0.0	51.5
영국	34.3	6.1	20.6
미국	0.0	0.0	0.0

자료: OECD, OECD Health Data 2006, 2006.

第 3 節 OECD 醫藥品 統計 要求項目 및 算出基準

OECD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의약품 소비 및 판매통계를 작성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 醫藥品 消費

의약품소비 통계는 세계보건기구 협력 의약품 통계 방법론 센터에 의해 고안된 해부 치료적 화학물질 분류 체계(Anatomic Therapeutic Chemical Classification System, ATC)/일일 사용량 기준단위(DDD)를 따르고 있다.

해부 치료적 화학물질 분류 체계는 의약품을 신체의 어느 기관 체계에 그 물질이 기능하는가, 또는 (그리고) 치유적, 약리학적, 화학적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그룹으로 분류한다. ATC를 따라 약제를 분류하는 주요 원칙들은 세계보건기구 협력 의약품 통계 방법론 센터의 다음 출판물에서 찾아볼 수 있다.

- "ATC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DDD할당(Guidelines for ATC classification and DDD assignment)"
- "ATC 색인과 DDDs(ATC Index with DDDs)"

이들 출판물은 모든 할당된 ATC 코드와 DDD값을 수록하고 있다. 이 두 출판물은 매년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표의 ATC 코드는 2006년판 ATC 색인을 기초로 한 것으로, 가장 최근의 색인은 www.whocc.no/atcddd/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측량의 단위는 일일 사용량 기준단위(DDD)로, 약품이 성인에게 사용된 추정 평균 유지용량으로 정의된다.

의약품소비에서 요구하는 통계항목은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제산제, 위궤양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혈액 및 조혈기관, 심혈관계, 강심배당체, 항부정맥약, 혈압강하제, 이노제, 베타 차단제, 칼슘 차단제, 레닌 안지오텐신약물, 지질완화 약물,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성호르몬 및 생식계 변조제, 전신성 호르몬제, 전신성 항감염약(소독제), 전신성 항균물질, 근골격계, 항염제, 항류마티스약, 신경계 및 감각기, 진통제, 불안제거약, 최면제 및 진정제, 항우울제, 호흡기계, 기도폐색질환약 등 28개 항목이다.

〈表 3-4〉 OECD 醫藥品 消費分野統計 要求 項目

의약품 소비	Pharmaceutical consumption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성인 1000명당)	A-Alimentary tract and metabolism
제산제(성인 1000명당)	Antacids
위궤양 치료제(성인 1000명당)	Drugs for peptic ulcer & gastro-oesophageal reflux dis
당뇨병 치료제(성인 1000명당)	Drugs used in diabetes
혈액 및 조혈기관(성인 1000명당)	B-Blood and blood forming organs
심혈관계(성인 1000명당)	C-Cardiovascular system
강심배당체(성인 1000명당)	Cardiac glycosides
항부정맥약(성인 1000명당)	Antiarrhythmics, Class I and III
혈압강하제(성인 1000명당)	Antihypertensives
이뇨제(성인 1000명당)	Diuretics
베타 차단제(성인 1000명당)	Beta blocking agents
칼슘 차단제(성인 1000명당)	Calcium channel blockers
레닌 안지오텐신약물(성인 1000명당)	Agents acting on the Renin-Angiotensin system
지질완화 약물(성인 1000명당)	Lipid modifying agents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성인 1000명당)	G-Genito urinary system and sex hormones
성호르몬 및 생식계 변조제(성인 1000명당)	Sex hormones and modulators of the genital system
전신성 호르몬제(성인 1000명당)	H-Systemic hormonal preparations, ex. sex horm. & insul.
전신성 항감염약(소독제)(성인 1000명당)	J-Anti-infectives for systemic use
전신성 항균물질(성인 1000명당)	Antibacterials for systemic use
근골격계(성인 1000명당)	M-Musculo-skeletal system
항염제, 항류마티스약(성인 1000명당)	Anti-inflammatory & antirheumatic products non-steroids
신경계 및 감각기(성인 1000명당)	N-Nervous system
진통제(성인 1000명당)	Analgesics
불안제거약(성인 1000명당)	Anxiolytics
최면제 및 진정제(성인 1000명당)	Hypnotics and sedatives
항우울제(성인 1000명당)	Antidepressants
호흡기계(성인 1000명당)	R-Respiratory system
기도폐색질환약(성인 1000명당)	Drugs for obstructive airway diseases

2. 醫藥品 販賣

의약품판매도 분류기준은 세계보건기구 협력 의약품 통계 방법론 센터에 의해 고안된 해부 치료적 화학물질 분류 체계(Anatomic Therapeutic Chemical Classification System, ATC)를 따르고 있다.

의약품판매 통계는 최종 소비자에 의해 지불된 소매가격에 대한 통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총액과 선별된 ATC 그룹에 대한 통계를 요구하고 있다. 판매 통계 또한 표에 제시된 ATC 코드는 ATC 색인 2006년판에 기초하고 있다.

의약품판매에서 요구하는 통계항목은 총판매,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제산제, 위궤양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혈액 및 조혈기관, 심혈관계, 강심배당체, 항부정맥약, 혈압강하제, 이뇨제, 베타 차단제, 칼슘 차단제, 레닌 안지오텐신약물, 지질완화 약물,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성호르몬 및 생식계 변조제, 전신성 호르몬제, 전신성 항감염약(소독제), 전신성 항균물질, 근골격계, 항염제, 항류마티스약, 신경계 및 감각기, 진통제, 불안제거약, 최면제 및 진정제, 항우울제, 호흡기계, 기도폐색질환약, 기타 등 30개 항목이다.

〈表 3-5〉 OECD 醫藥品 販賣分野統計 要求項目

의약품 판매	Pharmaceutical sales
총판매(100만원)	Total pharmaceutical sales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100만원)	A-Alimentary tract and metabolism
제산제(100만원)	Antacids
위궤양 치료제(100만원)	Drugs for peptic ulcer & gastro-oesophageal reflux dis
당뇨병 치료제(100만원)	Drugs used in diabetes
혈액 및 조혈기관(100만원)	B-Blood and blood forming organs
심혈관계(100만원)	C-Cardiovascular system
강심배당체(100만원)	Cardiac glycosides
항부정맥약(100만원)	Antiarrhythmics, Class I and III
혈압강하제(100만원)	Antihypertensives
이뇨제(100만원)	Diuretics
베타 차단제(100만원)	Beta blocking agents

의약품 판매	Pharmaceutical sales
칼슘 차단제(100만원)	Calcium channel blockers
레닌 안지오텐신약물(100만원)	Agents acting on the Renin-Angiotensin system
지질완화 약물(100만원)	Lipid modifying agents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100만원)	G-Genito urinary system and sex hormones
성호르몬 및 생식계 변조제(100만원)	Sex hormones and modulators of the genital system
전신성 호르몬제(100만원)	H-Systemic hormonal preparations,ex. sex horm. & insul.
전신성 항감염약(100만원)	J-Anti-infectives for systemic use
전신성 항균물질(100만원)	Antibacterials for systemic use
근골격계(100만원)	M-Musculo-skeletal system
항염제, 항류마티스약(100만원)	Anti-inflammatory & antirheumatic products non-steroids
신경계(100만원)	N-Nervous system
진통제(100만원)	Analgesics
불안제거약(100만원)	Anxiolytics
최면제 및 진정제(100만원)	Hypnotics and sedatives
항우울제(100만원)	Antidepressants
호흡기계(100만원)	R-Respiratory system
기도폐색질환약(100만원)	Drugs for obstructive airway diseases
기타약품(100만원)	Products not elsewhere classified

第4章 醫藥品 統計 生産方案

第1節 醫藥品統計 生産 관련 資料의 檢討

1. 健康保險資料

신청 코드를 활용 건강보험적용일자, 급여구분, 상한가, 사용장려비, 투여경로, 품명, 규격, 단위, 제약회사명, 분류번호, 주성분코드, 약품동등구분, 저가약대체여부, 예외의약구분, 임의조제불가, 고시일자, 대응코드 등이 파악된다.

신청서에는 코드 1일 투여량, 총투여일수, 단가 등이 파악된다. 그러나 OECD에서 요구하는 소비량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각 코드별 용량의 입력작업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등재코드는 16,000가지 정도가 된다.

각 코드번호는 복지부의 약효분류코드가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ATC 코드와의 완전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분류작업이 요구된다. 그러나 건강보험에서 비처방약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다.

〈表 4-1〉 療養機關 自體調劑, 製劑藥 內譯 EDI 項目

구분	EDI 항목
일반사항	신청번호, 요양기관지정번호, 담당자성명, 총건수, 줄번호
약일반사항	조제/제제구분, 투여형태, 주요효능군, 코드, 명칭, 시도군구청장신 고증의 기재일, 청구가, 규격, 단위, 가격적용일
약제조사사항	사용약품코드구분, 코드, 품명, 규격, 단위, 구입기관, 구입일자, 단위당가격, 분량, 분량당단위, 분량당가격, 조제·제제약 용법 및 함량
기타	참조란, 인증결과

2. 製藥協會 入力形態 및 活用 可能性

제약협회에서는 매년 우리나라 제약회사의 생산실태를 파악하여 발표하고 있고,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공되어 연보발간 등에 활용되고 있다.

제약협회에서 수집하는 자료는 포장단위별, 용량, 금액으로 입력되고 있어 OECD에서 요구하는 총판매금액과 소비량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약협회에서 수집되고 입력되는 자료는 의약품 판매통계를 내기 위해 필요한 금액에 있어서는 공장도가로서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실제 판매가격과는 차이를 보이고 소비량도 OECD에서 요구하는 최종단계 즉, 약국이나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제공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많은 회원국에서 이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생산된 통계를 제공하고 있어 통계생산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집계를 위한 분류방식은 약효분류에 의하고 있어 OECD에서 요구하는 ATC(해부학적분류) 체계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통계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즉, 통계생산을 위하여는 현재의 효능별 분류체계를 ATC 체계로 분류하여 통계를 생산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효분류 통계를 활용하여 ATC 분류체계로 맞추기 위하여는 상호 중복되지 않는 독립적인 특성을 지녀야 하나 이와 같은 분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ATC 분류체계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제약협회에서 수집되는 제품의 종류는 약 15,000개 품목정도로 이들을 ATC 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OECD에서 요구하는 형태의 통계를 생산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2005년 의약품 등 생산실적표, 제약협회 참조

3. 其他資料

기타 의약품통계 생산을 위하여 활용을 고려할 수 있는 자료로는 민간조직에서 수집되는 자료가 있다. 이들 자료는 병원과 의원, 약국으로 구분하여 패널로 지정된 표본 기관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들이 수집하는 자료는 충분한 양의 표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第 2 節 既存의 藥效分類 活用 統計生産方案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품을 약효에 따라 번호를 분류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약효분류에 따른 체계를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에 활용할 수 있다면 통계생산이 보다 용이할 것이다. 그러나 OECD에서 요구하는 ATC 분류에 의한 통계요구 항목과 약효에 따른 분류체계 항목과의 연계는 용이하지 않다. 많은 부분에서 보다 중복되는 부문이 있어 상호 일치하는 연계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ATC분류와 약효분류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여 보았다.

〈表 4-2〉 ATC 分類코드와 藥效分類코드의 聯關性

ATC 分類코드	藥效分類코드
A	116, 117, 123, 124, 141, 219, 231, 232, 234, 235, 236, 237, 238, 239, 244, 245, 264, 311, 312, 313, 314, 315, 316, 321, 322, 326, 331, 332, 339, 391, 392, 395, 396, 399, 611, 615, 616, 618, 621, 721, 799
A02A	234, 239
A02B	232, 332
A10	396
B	114, 214, 217, 218, 219, 249, 313, 315, 321, 322, 323, 325, 329, 331, 332, 333, 339, 341, 349, 392, 399, 629, 634
C	123, 149,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2, 245, 256, 429
C01A	211
C01B	212
C02	214
C03	213, 214, 219
C07	212, 214, 219
C08	214, 217, 219
C09	214
C10A	218, 219
G	123, 124, 214, 246, 247, 249, 252, 255, 259, 265, 269, 398, 399
G03	246, 247, 249, 255, 269, 398, 399
H	114, 239, 241, 243, 245, 249, 252, 332
J	391, 395, 611, 612, 613, 614, 615, 616, 618, 619, 621, 622, 623, 629, 631, 633, 634, 641
J01	611, 612, 613, 614, 615, 618, 619, 621, 629, 641
M	114, 119, 122, 124, 231, 264, 392, 394, 395, 399, 439, 490, 632

ATC 분류코드	약효분류코드
M01A	114, 231, 399, 490
N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9, 121, 122, 123, 124, 132, 217, 219, 264, 393, 399, 629, 811, 821
N02	114, 811, 821
N05B	117
N05C	112
N06A	117, 119
R	112, 114, 121, 132, 141, 149, 211, 221, 222, 223, 229, 231, 245, 811
R03	149, 211, 222, 229, 245

〈表 4-3〉 藥效分類코드와 ATC 分類코드와의 聯關性

약효분류코드	ATC 분류코드
111	N01AB04, N01AB06, N01AB07, N01AB08, N01AF, N01AF03, N01AX03, N01AX07, N01AX10
112	N03AA02, N03CF01, N03CF02, N03CA01, N05CC01, N05CD01, N05CD03, N05CD04, N05CD05, N05CD08, N05CD09, R06AA09
113	N03AA03, N03AB02, N03AB52, N03AD01, N03AE01, N03AF01, N03AF02, N03AG01, N03AG14, N03AX09., N03AX11, N03AX12, N03AX14, N03AX15, N05AK01
114	B03BA03, H02AB02, M01AA, M01AB, M01AB02, M01AB05, M01AB08, M01AB09, M01AB11, M01AB14, M01AB16, M01AB15, M01AB55, M01AC, M01AC01, M01AC02, M01AC05, M01AC06, M01AE, M01AE01, M01AE02, M01AE03, M01AE04, M01AE09, M01AE11, M01AE12, M01AE13, M01AE14, M01AE16, M01AE51, M01AG01, M01AG02, M01AG03, M01AH01, M01AX, M01AX01, M01AX17, M01AX22, M09AX, M01CB03, M01CC02, N02AD01, N02AE01, N02AF01, N02AF02, N02AX02, N02AX52, N02BA01, N02BA06, N02BA10, N02BA11, N02BA16, N02BA71, N02BE01, N02BE05, N02CA01, N02CA02, N02CA52, N02CC01, N02CC02, N02CC03, R05
115	N06BA04, N06BA07
116	N07CA01, N07CA52, A04AD
117	A03CA02, N05AA01, N05AA02, N05AB03, N05AD06, N05AD01, N05AE02, N05AE04, N05AF03, N05AF04, N05AF05, N05AG02, N05AH02, N05AH03, N05AH04, N05AL05, N05AL, N05AL01, N05AN01, N05AX1, N05AX08, N05AX11, N05BA12, N05BA08, N05BA02, N05BA09, N05BA05, N05BA21, N05BA01, N05BA18, N05BA19, N05BA06, N05BA, N05BA04, N05BA14, N05BA23, N05BE01, N06AA09, N06AA17, N06AA04, N06AA16, N06AA02, N06AA10, N06AA23, N06AB04, N06AB10, N06AB03, N06AB08, N06AB05, N06AB06, N06AE, N06AG02, N06AX, N06AX03, N06AX17, N06AX11, N06AX14, N06AX05, N06AX16,

약효분류코드	ATC 분류코드
119	L03AX13, M03BX, N03AX16, N04AA04, N04BA02, N04BA03, N04BB01, N04BC02, N04BC04, N04BC05, N04BD01, N04BX02, N05AB06, N05AL03, N06AX, N06BA05, N06DA02, N06DA03, N06DA04, N06DX01, N06BX01, N06DX03, N06DX07, N06DX08, N07AX02, N07BB03, N07XX02
121	N01BA02, N01BA03, N01BB01, N01BB02, N01BB03, N01BB09, N01BB10, N01BB053, N01BB58, R02AD, R02AD02, S01HA04
122	M03AB01, M03AC01, M030AC02, M03AC03, M03AC04, M03AC09, M03BA03, M03BA52, M03BA53, M03BB03, M03BC01, M03BX, M03BX01, M03BX03, M03BX04, M03BX05, M03BX08, M03CA01, N04AA02
123	A03AB, A03AB02, A03AB06, C04AB02, G04BD04, N07AB02, N07AA01, N07AA02, N04AA01
124	A03AX08, A03BA01, A03AX11, A03BB05, A03AA07, A03CA, A03AA09, A03AX05, A03BB01, A12CC02, A03AB, A03AD01, A03AX, A03AX12, A03AC, A03AB17, A03AB19, A03BB, A03AC05, G04BD09, M03BX02, N04AC01
132	N07AX01, R01AA04, R01AA05, R01AA07, R01AC01, R01AC03, R01AD01, R01AD05, R01AD08, R01AD09, R01AD11, R01AX03, R01BA52, S02AA, S02AA15, S02CA03, S02CA05
141	A04AD, R06A, R06AE01, R06AE07, R06BA53, R06AB04, R06AA04, R06AA07, R06AX22, R06AX, R06AX26, R06AE09, R06AX13, R06AD07, R06AX25, R06AE05, R06AB05, R06AA07, R06AD02, R01BA52
149	C01CA24, D11AX02, R01AC01, R01AC02, R01DC01, R01DC03, R03BC01, R03DC, R03DC02, R06AX, R06AX19, R06AX24, R06AX26
211	C01AA05, C01AA08, C01CA, C01CA07, C01EB09, C01EX, R03DA01, R03DA05, R07AB

약효분류코드	ATC 분류코드
212	C01BA01, C01BA02, C01BB01, C01BB02, C01BC03, C01BC04, C01BD01, C01EB10, C07AA05, C07AA15, C07AB09, C07AG
213	C03AA03, C03BA04, C03BA08, C03BA10, C03BA11, C03CA, C03CA01, C03CA04, C03DA01, C03DB01, S01EC01
214	B01AC11, C02AC05, C02CA, C02CA01, C02CA04, C02DB02, C02DB04, C02DC01, C02DD01, C02LE01, C02KX01, C03BA, C03BX03, C03EA01, C04AB01, C04AX02, C07AB03, C07AB05, C07AB06, C07AB11, C07AG, C07AG01, C07AG02, C07BA05, C07BB02, C07BB04, C07BB07, C07CB03, C07FB02, C08CA, C08CA02, C08CA03, C08CA04, C08CA07, C08CA09, C08CA10, C08CA11, C08CA14, C09AA, C09AA01, C09AA02, C09AA03, C09AA04, C09AA05, C09AA06, C09AA07, C09AA08, C09AA09, C09AA12, C09AA13, C09AA14, C09AA16, C09B, C09BA01, C09BA02, C09BA03, C09BA05, C09BA13, C09BB05, C09BB10, C09CA01, C09CA02, C09CA03, C09CA04, C09CA06, C09CA07, C09CA08, C09CA19, C09DA01, C09DA02, C09DA04, C09DA06, C09DA07, C09DA08, G04CA03
215	C05B, C05CA03, C05CA53, C05CX
216	C01CA06
217	B01AC07, B01AC30, C01DA01, C01DA02, C01DA08, C01DA14, C01DX10, C01DX12, C01DX16, C01EB15, C04AC, C04AD04, C04AX20, C04AX21, C08CA06, C08CA08, C08CA12, C08CA13, C08CA15, C08DB, C08DB01, N07CA03
218	B01AB11, B01AC04, B01AX, C10AA01, C10AA03, C10AA04, C10AA05, C10AA07, C10AA08, C10AB02, C10AB04, C10AB05, C10AB08, C10AB09, C10AD02, C10AD06, C10AX, C10AX02, C10AX06, C10AX09, C10BA02

약효분류코드	ATC 분류코드
219	A161101, B01AC13, B02AB01, B01AE03, B01AD, B01AD04, B01AC06, B01AC, B01AC17, B01AC18, B01AD02, B01AD01, B01AB, B01AB11, B01AD11, C04AX, C04AX10, C04AX17, C04AX27, C04AX28, C01EA01, C01CA, C01CA04, C01CA17, C08CA, C08CA01, C08CA04, C08CA05, C10BX03, C01CE01, C01CE02, C07AB07, C07AB08, C10AC01, C04AE02, C04AE01, C04AE54, C05BX01, C05BB01, C03BA11, C01EB03, C04AF01, C10AA02, C05CX, C07AB02, C04AD03, C01EB, C07AA07, N06BX06, N06BX12, N06DX02, N07XX, V03A, V03AE, V03AE01, V03AE02, V03AE03, V04CJ02
221	R07AB01
222	C01CA02, R01BA02, R03AC02, R03AC03, R03AC12, R03AC13, R03AK04, R03AK06, R03AK07, R03BA02, R03BA05, R03BB01, R03BC01, R03BC03, R03CA02, R03CB03, R03CC, R03CC02, R03CC03, R03CC04, R03CC05, R03CC08, R03CC11, R03CC13, R03CK, R03DA01, R03DA02, R03DA04, R03DA05, R03DA06, R03DA08, R03DA11, R03DA53, R05, R05CA, R05CA03, R05CB, R05CB01, R05CB03, R05CB05, R05CB06, R05CB07, R05CB09, R05CB10, R05CB04, R05CB05, R05DA, R05DB13, R05DB15, R05DB21, R05DB24, R05DB27, R05FA, R06AX, R06AX17
223	R02AA05
229	R01BA02, R03BB04, R03CB53, R03CC12, R03DA09, R03DA51, R03DX, R05CA, R05CB, R05DX07, R07, R07AA, R07AB07
231	A01A, A01AB22, A01AC01, A01AC02, A01AD02, A01AD11, D08AC02, M01AX, R02AA05, R02AA09, R02AA15
232	A02BX, A02BX02, A02BX03, A02BX05, A02BX06, A02BX08, A02BX11, A02BX13, A03AB02, A02BA, A02BA01, A02BA02, A02BA03, A02BA04, A02BA06, A02BA07, A02BB01, A02BC01, A02BC02, A02BC03, A02BC04, A02BC05, A02X

약효분류코드	ATC 분류코드
234	A02AX, A02A, A02AA, A02AA02, A02AA04, A02AB, A02AB01, A02AB03, A02AC01, A02AD, A02AD01, A02AD03, A02AD04, A02AD05
235	A04AA, A04AA01, A04AA02, A04AA03, A04AA04, A04AD, A04AD12, A03FA01
236	A05A, A05AA01, A05AA02, A05AX
237	A07X, A07BC04, A07BC05, A07FA01, A07FA02, A07DA03, A07DA05, A09AA04
238	A06AB, A06AB02, A06AB08, A06AG04, A06AG10, A06AD12, A06AD15, A06AD17, A06AC01, A06AX02
239	A02AX, A03, A03A, A03AA04, A03AA05, A03AE02, A03AX, A03AX04, A03AX13, A03AX58, A03CA01, A03FA, A03FA01, A03FA03, A03FA04, A03FA06, A05AX, A06AC08, A07AX03, A07EA06, A07EC02, A07EC04, A07XA, A09AA, A11HA30, H01CB01
241	H01AC01, H01BA01, H01BA02, H01BA04
243	H03AA01, H03AA02, H03AA03, H03BB01, H03BB02, H05BA01, H03BA02, H03BA04, V04CJ01
244	A14AA05, A14AA08, A14AB01
245	A07EA06, C01CA03, C01CA24, D07AB19, D07AC15, H02AA02, H02AB01, H02AB02, H02AB04, H02AB06, H02AB08, H02AB09, H02AB13, H02BX, H02BX01, R03AA01, R03BA01
246	G03BA02, G03BA03, G03BB01
247	G02BA03, G03CA01, G03CA03, G03CA57, G03DA02, G03DA03, G03DA04, G03DB01, G03DB04, G03DB06, G03DC01, G03DC02, G03DC05, G03FA01, G03FA12, G03FA14, G03FB01, G03FB05, G03FB06, G03FB08, G03FB09, G03GA02, G03GB02, G03HB01, L02AA01

약효분류코드	ATC 분류코드
249	B03AX01, B03AX02, G02AD01, G02AD02, G02AD05, G03GA01, G03GA04, G03GA05, G03GA06, G03GA07, G03GB01, G03HA01, G03XA01, H01CA02, H01CB02, H01CB03, L02BB01, L03AX09
252	G02AB01, G02AD02, H01BB02
255	D01AC11, G01, G01AA10, G01AA51, G01AF02, G01AF05, G01AF07, G01AF17, G01AX11, G01AX12, G03CA04, G03CA09, G03CA53, G04CX01, G04CX02
256	C05AA08, C05AD07, C05CX
259	G01AX03, G01AX11, G02CA01, G02CX01, G04BD02, G04BD06, G04BD07, G04BX, G04BX06, G04CA01, G04CA02, G04CB01, G04CB02, G04CX
264	A01AD, D05AX, D07AA02, D07AB08, D07AB10, D07AX13, D07AC17, M02AA07, M02AA08, M02AA10, M02AA13, M02AA15, M02AA19, M02AA23, M02AX10, N01BX04, P03AX
265	D01AC, D01AC01, D01AC03, D01AC05, D01AC07, D01AC08, D01AC10, D01AC16, D01AC20, D01AE14, D01AE15, D01AE16, D01AE22, D01AE23, D05AE01, D05BA02, D08AX, D10AD01, G01AF, G01AF02, G01AX, P03AB02
269	D01AC, D02AE01, D03AX03, D03AX06, D04AX, D05AA, D05AD02, D05AX, D05AX02, D05AX03, D05AX04, D06AX04, D06AX09, D06BB, D06BB01, D06BB03, D06BX01, D06C, D07AA02, D07AA03, D07AB01, D07AB02, D07AB09, D07AC01, D07AC03, D07AC04, D07AC05, D07AC06, D07AC08, D07AC09, D07AC10, D07AC11, D07AC14, D07AC18, D07AC19, D07AD01, D07AD02, D07CC01, D07CC05, D11AC03, D11AX, D11AX14, D11AX15, G01AX03, G03CA07, G03CA57
311	A11CC03, A11CC04, A11CC04, A11CC06, A11CC07, D05BB02, D10BA01
312	A11DA, A11DA01

약효분류코드	ATC 분류코드
313	A11HA02, A11HA04, A11HA32, A03BA04, B03BA05, A03BB01
314	A11GA01, A11GB01
315	A11HA03, B02BA01
316	A11BA, A11EX, A11EA
321	A12AA, A12AA03, A12AA09, A12AX, B05XA07
322	A12CC, B03A, B03AA07, B03AB, B03AB01, B03AB04, B03AB07, B03AB08, B03AB09, B03AC, B03AC06, B03AD, S01XA
323	B05BA03, B05BB01, B05BC01, V06DC02
325	B05BA01, B05BA10, V03A, V06DB, V06DD, V06DX
326	A05BA, L03AX
329	B05BA02
331	A12BA01, B05AA, B05AA05, B05AA06, B05AA07, B05BB01, B05BB02, B05XA01, B05A05
332	A02BX13, B02, B02AA02, B02AA03, B02AB, B02BC01, B02BC06, B02BC07, B02BC30, B02BD08, B02BX02, B02BX03, H01BA02
333	B01AA03, B01AB01, B01AB04, B01AB05, B01AB06, B01AB07, B01AB12, B01AE02, B01AX05
339	A07CA, B01AC, B01AC05, B01AC10, B01AC19, B02BD02, B05AA07, B05BB01, B05BB02, B05XA06, B05XA30, L03AA02, L03AA09, L03AA10, L03AC02, V03AB14
341	B05D, B05Z
349	B05CB01, B05CX, B05CX10, B05D, B05XA16, S01KX

약효분류코드	ATC 분류코드
391	A05, A05AA02, A05BA, A05BA03, A05BA06, A16AX03, J05AF, J05AF05, J05AF08, J05AF10
392	A05B, B05XA02, M01CC01, V03A, V03AB, V03AB03, V03AB04, V03AB06, V03AB15, V03AB25, V03AB26, V03AB32, V03AC01, V03AF01, V03AF03
393	N07BB01
394	M04AA01, M04AC01
395	A16AB04, A16AB05, A16AX, J05AX02, M09AB, M09AB52, V03AF07
396	A10AB01, A10AB03, A10AB04, A10AB05, A10AB06, A10AC01, A10AC03, A10AD01, A10AD04, A10AE04, A10AE05, A10BA02, A10BB01, A10BB02, A10BB07, A10BB08, A10BB09, A10BB12, A10BD02, A10BD03, A10BD04, A10BF01, A10BF03, A10BG02, A10BG03, A10BX, A10BX02, A10BX03
398	G03X
399	A16AB02, A06AD11, A16AX, A16AX01, A16AX04, B02AB04,, B01AX, G02CB01, G02CB02, G02CB05, G03XXC01, H04AA01, M01AX21, M03CA01, M04AB03, M05BA01, M05BA02, M05BA03, M05BA04, M05BA06, M05BA07, M05BA08, M05BB, M05BB03, M05BC, M05BX, M05BX01, M09AX, M09AX01, NO4BC03, N06BX, N06BX03, V03AH01
429	C05, C05B, L01XX14, L01XX35, L03AX, L03AX03, V03AF02
439	L04AA11, L04AA12, L04AA17, M09AX, V03A
490	D03, D03AX, M01AX
611	A07AA09, D06AX01, J01CE01, J01CE08, J01CR01, J01FF02, J01FG02, J01AX01, J01AX02, J01XC01, S01AA17
612	J01CA08, J01CA11, J01DD03, J01DD14, J01DF, J01DF01, J01GB01, J01GB06, J01XB01

약효분류코드	ATC 분류코드
613	J01GA01, J01GB, J01GB04, J04AB, J04AB01, J04AB02, J04AB04, J04AM05, S01AA, S01AA22, S02AA
614	J01FA, J01FA01, J01FA02, J01FA03, J01FA06, J01FA07
615	A01AB23, J01AA02, J01AA06, J01AA07, J01AA08, J01AA20, J01BA01, J01FA01
616	A07AA02, D01BA01, J02AA01, P01CX01
618	A07AA11, J01BA02, J01CA, J01CA01, J01CA02, J01CA04, J01CA06, J01CA12, J01CA15, J01CF, J01CR02, J01CR03, J01CR04, J01CR05, J01D, J05AB01, J01DB01, J01DB03, J01DB04, J01DB05, J01DB06, J01DB07, J01DB08, J01DB09, J01DB11, J01DB12, J01DC, J01DC01, J01DC02, J02DC03, J02DC04, J01DC05, J01DC06, J01DC07, J01DC08, J01DC09, J01DC10, J01DC11, J01DD, J01DD01, J01DD02, J01DD04, J01DD05, J01DD07, J01DD08, J01DD09, J01DD10, J01DD11, J01DD12, J01DD13, J01DD15, J01DD16, J01DD62
619	D06AX12, J01, J01CR05, J01DD62, J01FA09, J01FA15, J01FF01, J01GB, J01GB08, J01RA04, J01XX04, J04AB30
621	A07EC01, D06BA01, J01EC02, J01ED05, J01EE01, J01EE02, J01EE04, J01EE06,
622	J04AA01, J04AC01, J04AC51, J04AD01, J04AK01, J04AK02
623	J04BA01, J04BA02
629	B05CA05, D01BA02, D06BB, D06BB06, J01MA, J01MA01, J01MA02, J01MA03, J01MA04, J01MA06, J01MA07, J01MA08, J01MA09, J01MA10, J01MA12, J01MA14, J01MA15, J01MA16, J01MB04, J02AC01, J02AC02, J02AC03, J02AX04, J05AB01, J05AB04, J05AB06, J05AB09, J05AB11, J05AB14, J05AE, J05AE01, J05AE02, J05AE03, J05AE04, J05AE06, J05AE08, J05AF01, J05AF02, J05AF03, J05AF04, J05AF05, J05AF06, J05AG01, J05AG03, J05AH01, J05AH02, J05AR01, J05AX05, J05AX07, J06BB16, L01BC05, N04BB01, S03AA

약효분류코드	ATC 분류코드
631	J07BG01
632	M03AX01
633	J06AA02, J06AA03
634	B01AB02, B02BD02, B02BD03, B02BD04, B02BD06, B02BB01, B05AA01, J06BA01, J06BA02, J06BB01, J06BB02, J06BB03, J06BB04, J06BB09
641	J01XD01, J01XD03, J02AB02, P01AB02, P01AB07, P01BA01, P01BA02, P01BA03, P01BB51, P01BC02, P01BD01, P01BD51
721	A03, A06AD, A06AD17, V08AA01, V08AA05, V08AB02, V08AB03, V08AB04, V08AB05, V08AB06, V08AB07, V08AB09, V08AB10, V08AB11, V08AD01, V08B, V08BA01, V08BA02, V08BA65, V08CA01, V08CA02, V08CA03, V08CA06, V08CA08, V08CA09, V08CB03
799	A07BA01, S01KX
811	N02A, N02AA01, N02AA03, N02AA05, N02AA08, N02AA59, R05DA04
821	N01AH01, N01AH02, N01AH03, N01AH06, N02AA, N02AA05, N02AB02, N02AB03

ATC 분류코드와 약효분류코드를 연계한 활용 가능성을 살펴 본 결과 적은 부분만이 상호 일치하였고, 대부분은 중복되고 있어 자료의 이용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기존의 약효분류에 의해 생산된 자료를 활용한 OECD 요구 의약품통계를 생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를 생산하는데 제약협회의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는 우선 ATC 분류체계에 따라 재분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활용 가능하다. 물론 제약협회의 자료를 직접 활용하는 것은 OECD에서 요구하는 형태의 자료는 아니지만 유산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활용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第3節 標本調査에 의한 統計 生産方案

1. 調査結果를 主資料로 活用한 醫藥品統計生産方案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 된다면 충분한 양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약국 및 의료기관 등을 조사하여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 즉, 다음과 같은 표본규모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된다면 조사에 의한 의약품 소비 및 판매 통계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가. 調査의 必要性

의약분업으로 의사는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국은 처방전에 의하여 환자에게 의약품을 판매 한다. 외래환자의 경우 대부분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므로 약국의 의약품 판매 정보로 의약품 소비 규모를 많은 부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입원환자와 응급환자는 의료기관에서도 직접 투약이 가능하여 약국의 정보만으로는 국가 전체의 의약품 소비 규모의 파악이 어렵다. 또한 약국에서의 의약품 구입은 의사 처방전 없이도 가능한 데 일반 의약품은 의사 처방전 없이도 일반인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200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는 전체 약국 이용의 19.8%로 추정된다(보건복지부, 2006). 의료보장 상태별로는 지역보험 가입자가 직장보험 가입자 보다

처방전 없는 의약품 구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4 참조).

〈表 4-4〉 醫療保障 狀態別 藥品購入 方法

의료보장상태	약품구입형태				전체
	처방 의약품	비처방 의약품	의약외품	기타	
지역보험	72.3	23.2	4.4	0.1	100.0
직장보험	78.0	18.0	3.8	0.1	100.0
의료급여/미가입	80.3	17.1	2.4	0.2	100.0
전체	75.0	19.8	5.1	0.1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2006.

의료기관의 처방전 발급은 전체 외래환자의 56.3%에 대하여 원외 처방전을 발급하고 의료기관 종류별로는 의원 외래환자의 73.8%, 종합병원 외래환자의 52.2%에 대하여 원외 처방전이 발급되어 의료기관 종류 간에 차이가 많다(보건복지부, 2006). 한편 원내 처방전은 종합병원 외래환자의 11.7%, 병원 외래환자의 9.6%에 대하여 원내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래환자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내 투약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원내 투약처방이 많은 기관이지만 국가 전체 의약품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표-4-5 참조).

의료기관에서 투약한 의약품과 약국의 의약품 판매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수집되고 있으나 국가 전체의 의약품 소비 정보가 되고 있지 못하다.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전액자비 형태로도 의약품의 투약 및 구입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005년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진료비를 지불한 퇴원환자는 71.2%로 추정되어 약 28.8%가 건강보험 이외의 방법으로 입원 진료비를 지불한다(표 4-6 참조).

의약품 소비 및 판매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의약품, 건강보험 이외의 방법으로 소비 또는 구입되는 의약품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 처방 의약품 소비, 건강보험으로 청구되지 않는 의약품이 누락 없이 조사될 때 국가 전체적인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량이 추정될 수 있다.

OECD는 회원국에 대하여 의약품 소비 28개 항목, 의약품 판매 30개 항목의 통계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각 항목은 ATC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의약품 소비 통계는 일일 사용량 기준단위(DDD)로 의약품 판매는 소매액 기준으로 통계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 분류 기준에 의한 의약품 통계와 의약품 정책에 기초 자료 생산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라의 의약품 소비 및 유통, 의료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의약품 소비 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表 4-5〉 醫療機關의 外來患者 投藥處方 方法

의료기관종류	투약처방 방법			전체
	원내처방	원외처방	처방안함	
종합병원	11.7	52.2	36.1	100.0
병원	9.6	55.2	35.2	100.0
치과병원	1.1	15.0	83.9	100.0
한방병원	27.9	15.0	70.8	100.0
의원	5.6	73.8	20.6	100.0
치과의원	1.1	14.5	84.4	100.0
한의원	23.8	1.2	74.9	100.0
보건의료원	12.3	62.2	25.4	100.0
보건소	13.6	55.1	31.4	100.0
보건지소	58.5	23.1	18.4	100.0
보건진료소	88.8	2.4	8.8	100.0
조산소	16.3	20.4	63.3	100.0
전체	9.4	56.3	34.3	100.0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환자조사』, 2006.

〈表 4-6〉 退院患者의 診療費 支拂方法

진료비지불	요양기관종류				전체
	종합병원	병원	의원	기타	
건강보험	80.0	63.2	60.9	65.0	71.2
의료급여	9.6	14.2	1.7	13.3	9.0
산재보험	1.3	2.1	0.1	0.7	1.6
자동차보험	5.0	15.0	0.2	17.8	14.4
전액자비 및 기타	4.1	5.6	1.6	3.2	3.9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환자조사』, 2006.

나. 調査의 目的

의약품 소비 및 판매 조사의 목적은 국민의 의약품 소비량을 추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여되는 의약품과 약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을 조사하고자 한다. 의약품 소비는 국민의료비 추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제약 산업의 발전과 투자에 중요한 기초 통계자료가 된다. 표준화된 국제 기준에 의한 의약품 소비 통계를 생산함으로써 국가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며 보건의료정책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의약품소비 조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약품의 효능별 소비량 및 판매 비용을 추정한다.

둘째, 국제적 분류 기준에 의한 의약품 통계를 생산한다.

셋째, 의약품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를 생산한다.

다. 調査方法

의약품 소비 조사방법으로 가구면접조사 방법과 약국을 포함한 의료기관 조사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가구면접조사는 실제 의약품의 복용 또는 투여에 근거한 통계를 생산할 수 있고 면담을 통하여 의약품 사용 행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약품명, 주요성분, 수량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을 통한 의약품 소비 조사는 제공 또는 판매되는 의약품이 모두 투약 되었다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하는 것으로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본 통계조사는 의약품 성분 분류별 통계생산을 주요 목표로 하므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표본조사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조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라. 調査規模

표본조사에서 표본의 크기는 관심 사상의 출현율, 허용오차, 신뢰수준 등을 기초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조사는 추정하는 관심 변수가 많고 다차원적 분석이 필요하여 단일 변량 중심의 표본수 결정 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조사 업무량과 조사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조사규모를 결정하는 요건이 된다. 조사 규모를 크게 하면 조사관리, 정확성 검토, 조사비용, 자료처리 양의 증가로 전반적으로 조사업무의 지연을 우려해야 한다.

조사규모 결정에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환자조사의 경험적 표본오차는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환자조사의 경우 모집단의 약 15%를 표본 추출할 때 경험적 상대 표본오차는 1% 이내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은 속성이 다르므로 추출률을 다르게 하여 표본을 추출하되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약 3% 인 1,500개 기관을 조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약국은 전체 약국의 약 5%인 1,000개 기관을 표본으로 한다. 모집단에 대한 사전적 정보와 특성을 파악하여 모집단을 적절하게 층화한다면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키지 않고도 효과적인 표본이 설계될 수 있을 것이다.

마. 調査對象 母集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을 하면 건강보험 환자 진료를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기관으로 신고를 한다. 이때 신고된 정보는 DB형태로 관리되며 폐업, 이전 등, 변화가 발생하면 관련 내용이 갱신 된다. 2005년 7월 현재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72,196개 기관으로 집계 된다. 종합병원(3차 의료기관 포함)이 290개 기관, 병원(치과, 한방제외) 1,043개 기관, 의원 24,942개 기관 등, 52,051개 의료기관이 등록되어 있고, 약국은 20,145개 기관이 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표4 참조). 요양기관 DB에 의하면 10명 이상 약사가 근무 하는 기관은 68기관으로 대부분 종합병원에 해당되며 병원의 경우 약사가 없는 기관이 26.7%를 차지하고 있어 종합병원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 이외의 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은 약사가 대부분 없는 기관이며 외래환자 중심으로 의료가 이루어진다. 건강보험 요양기관 중에

서 약국의 약사수 분포를 보면 전체 약국의 93.4%가 2명 이하의 약사가 근무하고, 5명 이상 약사가 있는 대형 약국은 약 1%(172개 기관)로 집계 된다. 또한 지역별 약국수 및 약사수는 분포는 <표 4-7> 과 같다.

의약품 소비 및 판매 조사에서 표본추출을 위한 모집단은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등재된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 모집단은 의료기관 조사에서는 치과 병의원과 한방병의원, 조산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으로 한정하고 약국조사는 요양기관으로 등록된 약국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을 추출한다.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에서도 의약품 소비가 발생하지만 치과 병의원의 의약품 소비는 많지 않고 의약품 사용의 대부분은 건강보험으로 청구된다고 볼 수 있다. 한방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한약제는 의약품의 성분별 분류가 불가능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 한다. 실제 조사에서는 조사 시점과 가장 근접한 시점의 요양기관 자료를 수집하고 이것을 표본설계 모집단으로 하는 표본 추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表 4-7> 健康保險 療養機關數 및 藥師數 分布

약사수	요양기관종류				약국	전체
	종합병원	병원	의원	기타		
0명	2(0.7)	279(26.7)	24,901(99.8)	25,650(99.5)	0	50,832(70.4)
1~2명	153(52.8)	753(72.2)	40(0.2)	110(0.4)	18,815(93.4)	19,871(27.5)
3~4명	32(11.0)	7(0.7)	1(0.0)	14(0.1)	1,158(5.7)	1,212(1.7)
5~9명	35(12.1)	3(0.3)	-	2(0.0)	167(0.8)	207(0.3)
10~19명	46(15.9)	1(0.1)	-	-	5(0.0)	52(0.1)
20~29명	15(5.2)	-	-	-	-	15(0.0)
30~39명	5(1.7)	-	-	-	-	5(0.0)
40명 이상	2(0.7)	-	-	-	-	2(0.0)
계	290(100.0)	1,043(100.0)	24,942(100.0)	25,776(100.0)	20,145(100.0)	72,196(100.0)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요양기관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5. 7.

〈表 4-8〉 地域別 藥局數 및 藥師數

지역	약국수	약사수
서울	5,294	7,241
부산	1,479	2,010
대구	944	1,319
인천	1,123	1,479
광주	618	878
대전	645	896
울산	350	488
경기	3,959	5,680
강원	596	769
충북	593	786
충남	743	973
전북	808	1,073
전남	759	970
경북	976	1,234
경남	1,038	1,344
제주	216	297
전체	20,145	27,437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요양기관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5. 7.

바. 母集團 層化

의료기관 조사와 약국조사의 표본 추출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모집단 층화의 필요성이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종합병원과 의원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약국의 규모 또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모집단 층화는 특성이 다른 조사단위로 이루어졌거나 본 조사에서 관심이 되는 의약품 소비 또는 판매에 차이가 많을 것으로 생각될 경우 조사의 효율과 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현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환자조사는 다양한 모집단 층화를 통하여 표본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모집단 층화는 의약품의 소비 및 판매 규모를 추론할 수 있는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기관이 보유한 의료자원과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수는 기관의 규모를 추론할 수 있는 좋은 변수이다. 효율적인 표본추출을 위하여 의료기관 조사의 경우 3차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보건기관 포함) 으로 층화하고, 약국은 약사 수에 따라

3개 층으로 모집단을 층화한 후 표본을 추출한다(표 4-9 참조).

〈表 4-9〉 醫療機關 및 藥局의 母集團 層化

의료기관 층화	약국 층화
1. 3차 의료기관	1. 약사수 2명 이하
2. 종합병원	2. 약사수 3-4명
3.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3. 약사수 5명 이상
4.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제외)	

사. 標本 機關 抽出

의약품의 소비 및 판매 조사의 표본 추출은 입원환자와 응급환자에 대하여 직접 투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기관 조사와, 의사 처방전에 근거하여 의약품의 조제 또는 처방전 없이 의약품 판매가 이루어지는 약국 조사로 나누어 각각 표본을 추출 한다.

1) 의료기관 표본추출

의료기관은 기관종류 병상 수, 의료인력 등에 의하여 환자수에 많은 차이가 있고 이것은 의료기관에서 소비되는 의약품의 양과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하여 종합병원, 병원, 의원, 그 외에 특별법으로 설치된 보건소, 보건지소와 같은 보건기관으로 분류된다. 의료기관조사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의료기관 종류별로 층화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특히 종합병원 중에서 3차 의료기관은 기관수는 적지만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환자의 비중이 매우 커서 입원환자의 많은 부분이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그만큼 약품의 소비가 많은 기관이다. 즉 기관수는 적으나 투약처방이 많이 이루어지는 3차 의료기관은 추출률을 1/4로 하여 표본오차를 줄이고, 종합병원과 병원 추출 확률은 각각 1/6, 1/8으로 하여 경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의원급 기관은 현실적으로 조사관리가 가능한 규모의 표본을 추출하며 의료기관 소재지를 분류변수로 하여 의하여 계통추출 한다. 그 결과 새로운 모집단을 활용한 표본수는 전체 의료기관의 약 3%인 1,500개 기관이 표본 추출 되도록 한다(표 4-01 참조).

〈表 4-10〉 醫療機關 調査 標本規模

기관종류	모집단	추출률	표본수
3차의료기관	43	1/4	10
종합병원	247	1/6	42
병원	1,043	1/8	131
의원급	28,345	1/24	1,181
기타 (치과 병의원, 한방병의원)	22,373	-	-
전체	52,051 ¹⁾	0.03	1,364

주 1): 2005년 7월 현재 의료기관수

2) 약국 표본추출

약국조사의 표본은 약국의 규모에 따라 층화 한 후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약국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약국 근무 약사수 정보를 활용하여 모집단을 층화한 후 표본 약국을 계통 추출한다. 전국의 약국을 3개의 층(① 약사수 2명 이하, ② 약사수 3-4명, ③ 약사수 5명 이상)으로 층화한 후 약사수가 2명 이하인 약국은 1/24로 표본추출하고, 약사수가 2-4명인 약국은 1/10, 약사수 5명 이상인 비교적 큰 약국(172개)은 1/5의 추출률을 적용한다. 지역별로 골고루 표본이 추출될 수 있도록 약국의 소재지를 사용하여 분류한 후 각 층의 추출확률로 계통추출 한다. 그 결과 새로운 모집단을 활용한 조사 시점의 표본수는 전체 약국의 약 5%에 해당하는 약 1,000개소의 약국이 표본으로 선정되도록 한다(표 4-11 참조).

〈表 4-11〉 藥局調査 標本規模

약국 약사수	모집단 약국수	추출률	표본 약국수
2명 이하	18,815	1/24	784
3-4명	1,158	1/10	116
5명 이상	172	1/5	35
전체	20,145 ¹⁾	0.05	935

주 1): 2005년 7월 현재 약국수

아. 推定方法

의약품 소비 및 판매 조사는 복합표본설계에 의한 조사로 어떤 특성에 대한 추정치는 표본가중, 무응답조정, 사후층화를 반영하여야 한다. 어떤 특성 Y 의 의약품의 총수 추정치는 층별 의약품 소비 및 판매를 먼저 추정한 다음, 이 층별 추정수를 더하여 전체 의약품량의 추정치를 산출한다.

1) 의약품 소비 및 판매 총수 추정

의약품 소비 및 판매 조사는 복합표본조사로 설계하였으므로 조사된 자료의 분석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총수 추정을 하여야 한다. 가중치는 표본설계 시에 적용한 추출확률, 무응답 보정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만약 가중치를 무시하고 분석을 하면 모수 추정에 심각한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추정량의 분산이 과소평가되어 어떠한 가설에 대한 판단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각 특성별 의약품의 소비 추정은 가중치를 이용한 통계치를 이용해야 한다.

의약품 소비 및 판매 조사에서 모집단의 특성치 추정에 사용하는 추정식 및 첨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h=1,2,\dots,L$: 층을 나타내는 첨자

$i=1,2,\dots,n_h$: h 층 내의 표본의료기관 또는 표본약국을 나타내는 첨자

$j=1,2,\dots,m_{hi}$: h 층의 i 번째 표본의료기관 또는 표본약국의 처방전을 나타내는 첨자

$k=1,\dots,K$: 의약품 종류를 나타내는 첨자

L : 층의 개수

n_h : h 층 내의 표본의료기관 또는 표본약국 개수

m_{hi} : h 층의 i 번째 표본의료기관 또는 표본약국 내의 처방전의 수

$$n = \sum_{h=1}^L \sum_{i=1}^{n_h} m_{hi} : \text{표본크기}$$

w_{hij} : h 층의 i 번째 표본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j 번째 처방전의 가중치

$y_{hij}^{(k)}$: h 층의 i 번째 표본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j 번째 처방전의 특정 의약품 양

f_h : 추출률

$I[hij \in K]$: h 층의 i 번째 표본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j 번째 처방전에 처방된 의약품이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여기서 K 는 ACT 분류에 의한 처방된 의약품 분류.

의약품 소비 및 판매 조사에서 전국 의료기관의 k 의약품소비 총계 (\widehat{Y}_{HopK})는 다음과 같다.

$$\widehat{Y}_{HopK}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I[hij \in K] \tag{1}$$

즉, $h(=1, \dots, L)$ 층에 속한 $i(=1, \dots, n_h)$ 번째 병원의 $j(=1, \dots, m_{hi})$ 번째 처방전에 기록된 의약품을 분류하여 해당 그룹에 속한 의약품들의 소비량을 추정하여 이들의 합 으로부터 총 병원에서 소비한 각 의약품 의 총소비량을 구하게 된다.

그리고 전국 의료기관의 의약품소비 총계의 분산추정량은 다음과 같다.

$$\widehat{Var}(\widehat{Y}_{HopK})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y_{hi.} - \bar{y}_{h..})^2 \tag{2}$$

여기서, $y_{hi.} = \sum_{j=1}^{m_{hi}} w_{hij} y_{hij}$, $\bar{y}_{h..} = \left(\sum_{i=1}^{n_h} y_{hi.} \right) / \sum_{i=1}^{n_h} \sum_{j=1}^{m_{hi}} w_{hi}$ 이다.

또한, 전국 의료기관의 의약품 소비 및 판매 총계의 상대표준오차는 다음의 식을 통해서 계산한다.

$$\widehat{CV}(\widehat{Y}_{HopK}) = \frac{\sqrt{\widehat{Var}(\widehat{Y}_{HopK})}}{\widehat{Y}_{HopK}} \times 100 \tag{3}$$

2) 두 조사의 합계 추정

의료기관 및 약국의 처방전을 조사하여 여기에 기재된 의약품 소비량이 총계를 추정하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약국 각각으로부터 구한 총계추정치의 가중합을 이용하여 전체 의약품 소비량을 추정할 수 있다. 즉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전에 있는 k 의약품의 총 소비량을 정하는 것이다.

$$\hat{Y}_{totK} = \hat{w}_{optK} \hat{Y}_{HopK} + (1 - \hat{w}_{optK}) \hat{Y}_{PhamK}$$

\hat{Y}_{PhamK} 은 \hat{Y}_{HopK} 와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text{여기서 } \hat{w}_{optK} = \frac{\widehat{COV}(\hat{Y}_{HopK}, \hat{Y}_{PhamK})}{\widehat{V}(\hat{Y})_{HopK} + \widehat{V}(\hat{Y})_{PhamK}} \text{ 이다.}$$

자. 調査項目

의약품 소비 및 판매 조사의 조사항목은 의료기관과 약국 현장에서 약품의 투여 또는 판매 관련자가 어려움 없이 기록 가능한 정보이어야 하며 수집되는 항목의 기준과 용어 또한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정의를 중심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목적하는 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생산 하고자하는 통계의 목적과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처방전,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서식 등을 참고하여 기본 조사 항목을 정의하면 <표 4-12>와 같다.

〈表 4-12〉 醫藥品 消費 및 販賣 調査 基本項目

조사항목	변수설명	세부 작성방법
1.요양기관번호	건강보험요양기관 번호	요양기관번호 8자리 기입
2.비용지불방법	약품 투여 또는 구입에 지불한 방법	<input type="checkbox"/> 건강보험,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 <input type="checkbox"/> 산재보험, <input type="checkbox"/> 자동차보험 <input type="checkbox"/> 자비, <input type="checkbox"/> 기타() ○ 해당 보험에 √ 한다 ○ 자비는 보험을 이용하지 않은 전액 개인 지불 경우이다. ○ 두 종류 이상을 사용한 경우는 중복 √ 한다.
3. 성	약품을 투여한 환자 또는 구입한 사람의 성	<input type="checkbox"/> 남자 <input type="checkbox"/> 여자 ○ 해당 번호에 √ 한다
4. 연령	약품을 투여한 환자 또는 구입한 사람의 연령	연령을 실수로 기입한다.
5. 약처방 방법	약의 조제 형태	<input type="checkbox"/> 제제약, <input type="checkbox"/> 조제약 ○ 해당 번호에 √ 한다
6. 투약 형태	약의 투약하는 형태	<input type="checkbox"/> 경구제, <input type="checkbox"/> 주사제, <input type="checkbox"/> 기타 ○ 해당 번호에 √ 한다
7. 의약품코드	건강보험청구코드	건강보험청구코드를 기입한다.
8. 의약품명칭	투약 또는 처방한 의약품 명칭	투약 또는 처방한 의약품의 약품명을 기입한다.
9. 의약품구분	정부가 고시한 의약품의 분류기준	<input type="checkbox"/> 전문의약품, <input type="checkbox"/> 일반의약품 ○ 해당 번호에 √ 한다
10. 주요효능군	의약품의 주요 효능분류	보건복지부 약효분류번호 3자리를 기입한다.
11. 단가	약품의 단가	약품의 단가를 기입한다.
12. 1회투여량	1회 투여량	1회 투여량을 기입한다.
13. 1일투여횟수	1일 투여 횟수	1일 투여 횟수를 기입한다.
14. 총투약일수	의약품의 총 투여 일 수	각 약품별 투여한 총 일수
15. 비용	단위 투여 약품별 비용	단위 투여한 약품의 비용
16. 총비용	처방한 전체 비용	처방전에 나타난 전체 비용 또는 의약품 구입에 지불한 금액
17. 본인부담액	전체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	전체 비용 중 본인이 지불한 비용으로 건강보험환자의 경우조합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차. 醫藥品 消費 및 販賣 資料 蒐集體系

1) 의약품 소비 및 판매 자료 수집체계

의료기관에서는 입원 및 응급실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 내 투약이 가능하며 또한 상병에 따라서는 외래환자의 경우에도 투약을 할 수 있다.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 투여는 병동에 따라 투여하는 약품의 종류 및 수량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표본의 설계를 할 수 없고 입원환자 전체에 대하여 2차적인 표본을 추출하는 것도 쉽지 않다. 건강보험 이외의 진료비 지불인 자동차 보험, 산재 보험, 자비 환자의 비중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 할 때 건강보험 이외의 환자에 대한 의약품소비를 신뢰성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많은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에 대한 자료수집기간을 다르게 하여 표본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전체에 대하여 14일 간의 조사를 수행한다. 외래환자의 경우는 특정한 2일을 택하여 내원하는 외래환자 전체에 대하여 투약 사항을 조사한다. 약국 조사는 특정 2일을 택하여 약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을 조사하도록 한다.

의료기관조사

- 입원환자 : 총 14일 간의 의약품 투여 자료 수집
- 외래환자 : 총 2일 간의 의약품 투여 자료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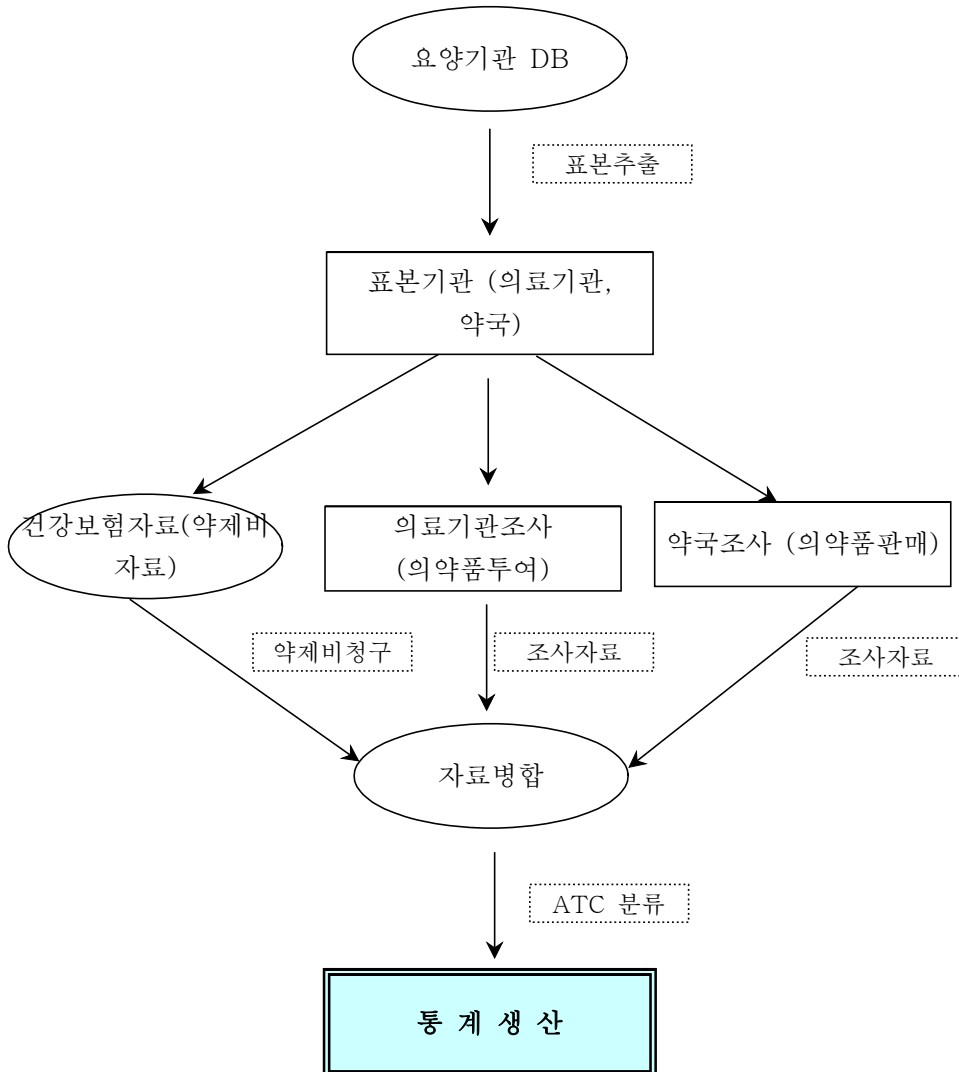
약국조사

- 총 2일 간의 의약품 판매 자료 수집

의약품 소비 및 판매 조사 자료 수집체계는 [그림 4-1] 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요양기관 DB에서 표본을 추출하고 추출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에 대하여 조사 자료를 수집 한다. 또한 표본으로 추출된 기관에 대하여 건강보험 약제비 청구 자료를 수집하여 이것을 조사 자료와 병합하여 국가 전체의 의약품 소비 및 판매량을 추정한다. 수집된

자료는 ATC 분류에 의하여 약효별 의약품 통계가 생산되도록 한다.

[그림 4-1] 醫藥品 消費 및 販賣 資料 蒐集體系



2) 해부치료적화학분류

해부치료적화학분류(ATC; 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lassification)는 유럽 국가들이 의약품의 성분 분류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ATC 체계와 DDD는 의약품소비 측정 을 위하여 WHO가 추천하는 방법이다. ATC 분류는 약을 화학적 약리적 치료적 특성에 의하여 신체 장기 및 기관에 작용하는 것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의약품을 5개의 수준(level)에 걸쳐서 분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당뇨 치료약의 ATC 분류 체계를 분해하면 <표 4-14>와 같이 설명된다.

- 제 1수준: 가장 넓은 수준에서 의약품을 해부학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14개 그룹으로 나누며 분류된 내용과 관련한 영문자 1개 Code를 사용한다(표 4-13 참조).

<表 4-13> ATC分類의 第1水準

Code	설 명
A	Alimentary tract & metabolism(영양기관 및 신진대사)
B	Blood & blood forming organs(혈액 및 조혈기관)
C	Cardiovascular system(심혈관계)
D	Dermatologicals(피부)
G	Genito urinary system & sex hormones(비뇨생식기와 성호르몬)
H	Systemic hormonal preparations(전신 호르몬제)
J	Antiinfectives for systemic use(전신 작용 항 감염제)
L	Antineoplastic & immunomodulating agents(항암 및 면역제)
M	Musculo-skeletal system(근골격계)
N	Nervous system(신경계)
P	Antiparasitic products(항 기생충제)
R	Respiratory system(호흡기계)
S	Sensory organs(감각기관)
V	Varios(기타)

- 제 2수준: 약제적 또는 치료적으로 분류한 보조그룹을 만든다.
- 제 3수준: 화학적 또는 치료적 또는 약제적으로 분류한 보조그룹을 만든다.
- 제 4수준: 화학적 또는 치료적 또는 약제적 보조그룹으로 이 수준에서 각각의 다른 의약품명이 정의 된다. 그러므로 각 단위 의약품명별 소비량은 4수준에서 누

적되어야 한다.

- 5수준: 화학적 실체에 대한 보조구룹

〈表 4-14〉 ATC分類에서 糖尿 藥의 分類 方法

A	Alimentary tract & metabolism(영양기관 및 신진대사) (제 1수준, 해부학적인 광역 구룹 분류)
A10	당뇨에 사용하는 의약품 (제 2수준, 치료적 보조분류)
A10B	경구 혈당 강하제 (제 3 수준, 약제적 보조분류)
A10BA	Biguanides(당뇨 치료 약품명) (제 4수준, 화학적 보조분류)
A10BA02	Metaformin (제 5수준, 화학물질의 실체)

자료: <http://www.umanitoba.ca/>.

2. 調査를 副資料로 活用한 統計生産方案

의약품통계 생산을 위한 충분한 양의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하기 위하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사에 충분한 예산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충분한 양의 표본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조사된 결과를 활용한 통계생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기준에 적합한 통계를 생산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충분양의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통계를 생산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행히도 우리는 의약품통계 생산과 관련된 자료를 기존의 체계에서 찾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 자료와 조사자료를 연계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앞에서 언급된 의약품통계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약협회의 자료와 건강보험자료가 있다. 따라서 이들 자료와 조사자료를 연계한 생산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방법은 충분한 양의 표본을 확보하여 조사하는 방법에 비하여 신뢰성 등이 떨어질 수 있으나 차선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OECD에도 제한점을 기술하면 활용할 수 있는 통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활용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第5章 結論 및 政策提言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 후 OECD에서 요구하는 각종 통계를 제공하여 왔다.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으로 OECD 요구 통계의 충족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는 단지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생산하고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는 각 분야에서 가장 필요하고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는 통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생산된 통계는 우리나라의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매우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OECD에서 요구하고 있는 통계 중 가장 부진한 분야는 의약품 관련 통계이다. 이 분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회원국 모두에서 가장 저조한 분야의 하나이다. 특히 이 분야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효분류에 따른 통계가 아니라 ATC(해부치료적화학분류; 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lassification) 분류에 의한 통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생산에 더 어려움이 있다. 이 방법은 주로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기존 약효분류체계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우리나라의 분류체계를 ATC 분류체계로 전환하여 각종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방법이나 이 분류체계에 의한 각종 자료의 정리 및 통계생산에는 상당한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의 각종 상황을 고려한 OECD에서 요구하는 의약품 통계생산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우선 최종 소비단계의 전단계인 판매의 최종단계에 있는 약국, 의료기관 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생산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신뢰수준을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표본을 추출하여 시도하게 되는데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국민의 의약품소비 행태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 통계를 생산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하지만 예산의 투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용이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표본을 적게하는 방법이나 차선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전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고 제약협회에서는 제약회사의 생산량을 파악하고 있어 이들 자료를 활용한 생산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제약협회자료는 공장도가라는 문제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전단계인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판매되는 자료라는 제한점이 있지만 다수국가에서 의약품통계생산에 활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의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해 볼 만하다.

제약협회의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는 우선 현재 약효별로 분류하고 있는 형태를 ATC 별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 약효별분류 결과를 ATC분류로 전환하여 사용하기 위하여는 상호 필요충분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나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있어 통계 생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 다른 하나의 자료는 건강보험자료이다. 이 자료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청구되는 자료로 통계생산을 위한 분석이 가능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방전에 의하지 않거나 전액자부담인 경우 그리고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있어 이들 부분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 표본조사를 통하여 평균소매가를 파악하고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처방전에 의한 판매량과 처방전이 없이 판매되는 양등을 파악하여 제약협회의 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접목하여 추정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충분한 양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가 필요한 통계를 생산하는 방법과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다면 제약협회자료, 건강보험자료 그리고 가능한 범주내에서 표본조사자료를 활용한 통계생산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보건복지부, □□의료보험자료를 이용한 통계지표 개발 방안 연구□□, 1999. 7
- _____, □□보건복지통계연보□□, 2005.
- _____,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 2002
- 송수은·남궁광현·이은영·김보영·조송자, “Erythropoietin 약물사용평가”,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ospital Pharmacists*, 15(2), 1998, pp.224~232.
- 식품의약품안전청, □□인천지역 약물 오 남용실태 및 의식조사□□, 2005
- 식품의약품안전청, □□약물감시체계의 중요성: 의약품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위한: 의약품의 안전성 모니터링□□, 2004
- 심릿다·윤혜영·오지영·강진숙·김옥녀, “Fentanyl Transdermal System의 약물 사용평가”,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ospital Pharmacists*, 14(1), 1997, pp.48~51.
- 심은희·김주희·유영인·공경희·윤덕심, “Ofloxacin에 대한 약물사용검토”,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ospital Pharmacists*, 13(1), 1996, pp.46~53.
- 윤창인, 「OECD 통계활동과 우리의 과제」, □□통계마당□□, 통계청, 1998. 2.
- 장영식·도세록·고경환,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2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 장영식·도세록·고경환·서진숙·서순원·부유경, 「보건통계 생산수준비교 및 대응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장영식·도세록·고경환·서순원, 「2004년 OECD 보건통계 생산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장영식·도세록·고경환, 「2005년도 OECD 보건통계 생산 및 신부전환자실태 조사」, 2005.
- 통계청, □□주요통계지표해설□□, 1998. 3.
- _____, □□OECD 제공통계 수록집(I), (II)□□, 2000. 12.

- _____, □□OECD통계 종합개발계획□□, 1998. 6.
- 최현숙·서은영·김향숙·손인자·최강원, “Vancomycin에 대한 약물사용 평가의 연구”,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ospital Pharmacists*, 11(3), 1994, pp.195~19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약품 사용평가(Ⅰ)□□, 1999. 1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용약품 사용실태 조사방안 연구□□, 200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약물경제성평가 워크숍: 이론과 실제□□, 2005
- Advance Data, "1997 Summary : National Hospital Discharge Survey", 1999.
- AIHW, "Australian Hospital Statistics 1997-98", 1999.
- DHHS, "Common Data Elements Implementation Guide Version 2.4", www.cdc.gov/data/index.htm
- _____, "National Hospital Discharge Survey, Annual Summary", 1997, 1999.
-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Programs and Activities", 1999, DHHS Publication No.(PHS) 99-1200.
- _____, "Health at a Glance", 2005.
- _____, "Historical Statistics 1960~1995", 1997.
- _____, "OECD HEALTH DATA 2006", 2006.
- R J Blendon, R Leitman, I. Morrison, K. Donelan, "Satisfaction with health systems in ten nations", *Health Affairs* 1990, summer, pp.185~192.
- ASHP reports, "ASHP Guidelines on The Pharmacist's Role in Drug-use Evaluation", *Am. J. Hosp. Pharm.*, 45, 1988, pp.385~386
- Bjornson D. C., Serradell J., Hartzema A.G., "Drug Utilization-Measurement, Classification, and Methods", Harzema A. G., Porta M., Tilson H. H., 3rd ed. *Pharmacoepidemiology-An Introducion*, Harvey Whitney Books Company, Cincinnati, 1998.
- Fish C. a, Kirking D. M, Martin J. B., "Information Systems for Evaluating the Quality of Prescribing", *The Annals of Pharmacotherapy*, 26, 1992, pp.392~398
- Jones J. K., "A View from The Drug Utilization Review

Management Organization Sector", Clin Pharmacol Ther, 50(5):1991, pp.620~625.

- Lee D., Bergman U., *"Studies of Drug Utilization"*, In Storm BL(ed): *Pharmacoepidemiology*, Churchill Livingstone, New York, 1989.
- Nadzam D. M., *"Development of Medication-use Indicators by The Joint Commissi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s"*, *Am J Hosp Pharm*, 48, 1991, pp.614~615.
- WHO, *Comparative Analysisi of National Drug Policies*, Action Programme on Essential Drugs, 1997.
- WHO, *Guidelines for ATC classification and DDD assignment*
- WHO, *ATC Index with DDDs*

附 錄

1. 약효분류코드
2. OECD 회원국의 의약품소비 및 판매통계

1. 약효분류코드

- 100 신경계감각기관용 의약품
 - 110 중추신경계용약
 - 111 전신마취제
 - 112 최면진정제
 - 113 항전간제
 - 114 해열·진통·소염제
 - 115 각성제, 흥분제
 - 116 진혼제
 - 117 정신신경용제
 -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 120 말초신경계용약
 - 121 국소마취제
 - 122 골격근이완제
 - 123 자율신경제
 - 124 진경제
 - 125 발한제, 지한제
 - 129 기타의 말초신경용약
 - 130 감각기관용약
 - 131 안과용제
 - 132 이비과용제
 - 139 기타의 감각기관용약
 - 140 알레르기용약
 - 141 항히스타민제
 - 142 자격요법제(비특이성면역원체제를 포함)
 - 149 기타의 신경계 및 감각기관용 의약품
 - 190 기타의 신경계 및 감각기관용 의약품
- 200 개개의 기관계용 의약품
 - 210 순환계용약
 - 211 강심제
 - 212 부정맥용제
 - 213 이뇨제
 - 214 혈압강하제
 - 215 혈관보강제
 - 216 혈관수축제
 - 217 혈관확장제
 - 218 동맥경화용제
 -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 220 호흡기관용약
 - 221 호흡촉진제

- 222 진해거담제
- 223 항소음입제
- 229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 230 소화기관용약
 - 231 치과구강용약
 - 232 소화성궤양용제
 - 233 건위소화제
 - 234 제산제
 - 235 최토제, 진토제
 - 236 이담제
 - 237 정장제
 - 238 하제, 완장제
 - 239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 240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 241 뇌하수체호르몬제
 - 242 수액선택호르몬제
 - 243 갑상선, 부갑상선호르몬제
 - 244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 245 부신허르몬제
 - 246 남성호르몬제
 - 247 난포호르몬 및 황체호르몬제
 - 248 혼합호르몬제
 -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 250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 251 요로소독제
 - 252 자궁수축제
 - 253 통경제
 - 254 피임제
 - 255 비뇨생식기관용제(성병예방제 포함)
 - 256 치질용제
 - 259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 260 외피용약
 - 261 외피용살균소독제
 - 262 창상보호제
 - 263 화농성질환용제
 - 264 진통·진양·수렴·소염제
 - 265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 266 피부연화제(부식제를 포함)
 - 267 모발용제
 - 268 욕제
 - 269 기타의 외피용약
- 290 기타의 개개의 기관용 의약품

- 300 대사성 의약품
- 310 비타민제
 - 311 비타민 A 및 D제
 - 312 비타민 B1제
 - 313 비타민 B제(비타민 B1을 제외)
 - 314 비타민 C 및 P제
 - 315 비타민 E 및 K제
 - 316 혼합비타민제(비타민 AD 혼합제제를 제외)
 - 319 기타의 비타민제
- 320 자양강장변질제
 - 321 칼슘제
 - 322 무기질제제
 - 323 당류제
 - 324 유기산제제
 - 325 단백아미노산제제
 - 326 장기제제
 - 327 유유아용제
 - 329 기타의 자양강장변질제
- 330 혈액 및 체액용약
 - 331 혈액대용제
 - 332 지혈제
 - 333 혈액응고저지제
 -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 340 인공관류용제
 - 341 인공신장관류용제
 - 349 기타의 인공관류용제
- 390 기타의 대사성 의약품
 - 391 간장질환용제
 - 392 해독제
 - 393 습관성중독용제
 - 394 통풍치료제
 - 395 효소제제
 - 396 당뇨병용제
 - 398 종합대사성제제
 -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 400 조직세포의 기능용 의약품
- 410 조직부활용약
 - 411 글로로필제제
 - 412 색소제제
 - 419 기타의 세포부활용약
- 420 증양용약
 - 421 항악성증양제

- 429 기타의 종양치료제
- 430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을 목적
 - 431 방사성 의약품
 - 439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 490 기타의 조직세포의 기관용 의약품
- 600 항병원생물성 의약품
- 610 항생물질제제
 - 611 주로 그람양성균에 작용하는 것
 - 612 주로 그람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 613 주로 항산성균에 작용하는 것
 - 614 주로 그람양성균, 리케치아, 비루스에 작용하는 것
 - 615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 리케치아, 비루스에 작용하는 것
 - 616 주로 곰팡이, 원충에 작용하는 것
 - 617 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
 - 618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 619 기타의 항생물질제제
- 620 화학요법제
 - 621 설파제
 - 622 항결핵제
 - 623 치나제
 - 624 구매제
 - 625 후란계 제제
 -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 630 생물학적 제제
 - 631 백신류
 - 632 독소 및 독소이드류
 - 633 항독소 및 랩토스피라혈청류
 - 634 혈액제제류
 - 635 생물학적 시험용제제류
 - 636 생물학적 제제
 -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 640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품
 - 641 항원충제
 - 642 구충제
- 690 기타의 병원생물에 대한 의약품
- 700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약품 관련제품
- 710 조제용약
 - 711 부형제
 - 712 연고기제
 - 713 용해제
 - 714 교미교취착색제

- 715 유효제
- 719 기타의 조제용약
- 720 진단용액
 - 721 X선 조영제
 - 722 일반검사용 시약
 - 723 혈액검사용 시약
 - 724 생화학적 검사용 시약
 - 725 면역혈청학적 검사용 시약
 - 726 세균학적 감사용제
 - 727 병리조직검사용 시약
 - 728 기능검사용 시약
 - 729 기타의 진단용약
- 730 공중위생용약
 - 731 방부제
 - 732 방역용 살균소독제
 - 733 방충제
 - 734 살충제
 - 739 기타의 공중위생용약
- 740 관련제품
 - 741 캡셀류
- 790 기타의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약품
 - 791 반창고
 - 799 따로 분류되지 않고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약품

- 800 마약
 - 810 알칼로이드 마약(천연)
 - 811 아편알칼로이드계 제제
 - 812 코카알칼로이드계 제제(천연마약)
 - 820 비알칼로이드계 마약
 - 821 합성마약
 - 829 기타의 비알칼로이드계 마약
- 890 기타의 마약

- 900 위생용품

- 1000 화장품

- 1100 의료용구

2. OECD 회원국의 의약품소비 및 판매통계

□ 의약품소비

〈附表 1〉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단위: DDD/1000 inhabitants/day)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80.8	102.3	107.8	114.9	117.7	125.1	126.4	
오스트리아								
벨기에		58.5	68.1	74.0	82.6	92.8	96.0	
캐나다								
체코	178.3	197.6	193.7	178.8	172.7	168.6	182.8	
덴마크	99.9	120.9	126.2	129.4	128.7	134.6	139.8	
핀란드		316.6	320.8	317.7	322.8	326.0	345.7	
프랑스								
독일	171.9	184.3	165.6	171.1	173.5	135.2	143.8	
그리스	124.9	175.9	179.6	197.9	219.7	236.4		
헝가리		240.6	238.3	242.4	256.3	261.1	257.7	
아이슬란드	108.7	106.4	101.9	104.9	106.3	109.9	111.9	113.2
아일랜드								
이탈리아			75.6	78.9	81.0	88.3	92.9	
일본								
룩셈부르크						190.2	206.5	
멕시코								
네덜란드			135.2	142.5	151.5	139.1	155.2	
뉴질랜드								
노르웨이		206.7	217.7	232.6	244.9	265.2	263.5	262.9
폴란드								
포르투갈		86.0	95.0	108.3	110.9	116.3	119.5	
슬로바키아	209.0	307.6	313.0	307.0	282.0	247.0	246.3	
스페인								
스웨덴	373.1	350.2	345.6	342.2	319.1	299.9	297.2	295.3
스위스								
터키								
영국							150.1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2007

〈附表 2〉 제산제

(단위: DDD/1000 inhabitants/day)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2.7	2.0	1.8	1.8	1.6	1.8	1.9	
덴마크	8.7	8.1	7.9	7.7	7.5	7.2	7.0	
핀란드	3.3	2.8	2.8	2.6	2.6	2.6	2.8	
프랑스								
독일	3.8	1.6	1.4	1.2	1.0	0.1	0.1	
그리스	6.8	5.3	5.2	4.8	4.8	4.6		
헝가리	2.3	1.6	1.5	1.5	1.4	1.3	1.3	
아이슬란드	2.9	2.6	2.5	2.5	2.5	2.5	2.4	3.0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1.1	1.2	1.2	0.0	0.0	
뉴질랜드								
노르웨이		3.3	3.0	2.7	2.5	2.3	2.1	2.0
폴란드								
포르투갈		0.0	0.0	0.0	0.0	0.0	0.0	
슬로바키아	3.2	2.1	2.0	1.9	1.6	1.4	1.0	
스페인								
스웨덴	4.9	3.3	3.1	2.9	2.8	2.7	2.6	2.5
스위스								
터키								
영국							0.9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2007

〈附表 3〉 위궤양 치료제

(단위: DDD/1000 inhabitants/day)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30.5	45.0	49.5	55.1	57.4	61.1	62.6	
오스트리아								
벨기에		17.8	24.9	29.2	37.0	45.0	47.5	
캐나다								
체코	7.8	16.8	19.2	21.6	24.1	28.4	34.3	
덴마크	12.1	20.6	22.9	25.0	26.6	28.6	31.4	
핀란드	9.6	17.0	20.9	24.4	28.3	27.3	29.9	
프랑스								
독일	10.7	18.3	22.0	24.5	28.2	30.1	35.5	
그리스	16.5	26.0	29.1	33.9	39.2	47.7		
헝가리	13.3	26.2	30.3	34.8	40.2	43.9	48.7	
아이슬란드	22.1	36.4	42.2	44.5	47.0	49.6	51.9	53.7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29.5	35.9	43.3	47.1	52.8	58.8	
멕시코								
네덜란드			40.9	43.9	47.6	50.1	53.2	
뉴질랜드								
노르웨이		21.2	23.1	25.2	26.5	28.2	30.4	33.2
폴란드								
포르투갈		25.0	28.0	31.6	37.5	43.4	48.2	
슬로바키아	3.8	10.2	24.9	20.1	16.0	15.2	17.5	
스페인								
스웨덴	20.7	34.4	35.6	36.8	35.7	37.5	40.5	43.2
스위스								
터키								
영국							46.9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2007

〈附表 4〉 당뇨병 치료제

(단위: DDD/1000 inhabitants/day)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22.3	34.3	36.9	38.8	39.7	42.7	43.4	
오스트리아								
벨기에		31.4	33.9	35.6	37.7	39.8	41.0	
캐나다								
체코	33.8	38.8	41.7	42.1	42.9	40.9	46.1	
덴마크	14.6	22.1	23.9	26.2	28.6	31.3	33.8	
핀란드	30.8	42.6	48.3	52.5	58.0	62.4	65.5	
프랑스								
독일	37.0	46.3	53.0	56.3	61.1	59.0	63.7	
그리스	23.2	39.7	47.0	51.9	58.3	67.7		
헝가리	31.3	42.7	45.6	49.1	52.3	54.8	54.6	
아이슬란드	9.9	15.3	17.6	19.7	21.1	22.2	24.0	25.8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31.0	33.6	36.3	38.1	38.2	50.0	
멕시코								
네덜란드			46.3	49.9	53.9	57.9	60.6	
뉴질랜드								
노르웨이		27.0	29.7	32.3	33.7	36.5	39.3	42.1
폴란드								
포르투갈		38.8	42.0	44.8	48.0	48.8	49.5	
슬로바키아		31.2	33.6	35.0	33.8	36.5		
스페인								
스웨덴	28.8	36.0	38.0	40.1	42.2	43.6	44.6	46.1
스위스								
터키								
영국	17.2	26.9	31.9	34.7	36.5	38.5	41.0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2007

〈附表 5〉 혈액 및 조혈기관

(단위: DDD/1000 inhabitants/day)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9.7	26.0	28.3	31.8	35.9	39.6	42.3	
오스트리아								
벨기에		13.4	14.6	13.7	16.1	18.1	19.6	
캐나다								
체코	155.7	179.6	182.9	192.0	201.1	201.8	218.9	
덴마크	43.4	64.8	65.4	71.1	76.5	82.5	87.0	
핀란드		109.2	118.8	120.5	126.5	134.2	144.8	
프랑스								
독일	28.9	48.6	63.7	67.4	74.4	42.6	47.0	
그리스	120.6	161.7	160.5	173.9	212.6	214.7		
헝가리		39.3	43.8	51.0	55.0	63.1	69.0	
아이슬란드	55.8	72.7	77.5	83.6	83.7	86.3	89.9	99.5
아일랜드								
이탈리아			51.7	57.1	61.6	67.8	72.3	
일본								
룩셈부르크						27.1	29.0	
멕시코								
네덜란드			68.0	70.7	74.6	72.7	75.2	
뉴질랜드								
노르웨이		87.1	93.8	99.8	103.3	108.4	111.7	113.4
폴란드								
포르투갈		73.0	64.0	59.1	52.1	54.7	56.0	
슬로바키아	66.0	89.5	96.0	103.9	101.0	98.0	115.5	
스페인								
스웨덴	76.7	231.0	253.3	265.1	277.7	290.5	296.3	309.7
스위스								
터키								
영국						135.2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2007

〈附表 6〉 심혈관계

(단위: DDD/1000 inhabitants/day)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436.2	368.8	374.2	386.6	402.4	436.3	456.0	
오스트리아								
벨기에		292.7	314.0	333.7	361.2	397.1	418.1	
캐나다								
체코	258.9	360.1	403.0	438.1	486.7	525.7	616.6	
덴마크	193.0	246.9	263.6	287.2	319.9	361.8	402.7	
핀란드		290.1	320.2	347.4	381.3	417.8	449.2	
프랑스								
독일	342.3	357.1	401.8	424.0	462.9	443.2	485.5	
그리스	191.2	302.9	348.4	396.2	418.8	455.5		
헝가리		390.8	410.2	446.9	477.8	518.9	555.8	
아이슬란드	169.9	235.1	259.6	277.6	307.9	326.8	348.4	366.8
아일랜드								
이탈리아			301.2	318.4	342.9	374.8	392.2	
일본								
룩셈부르크						297.5	313.3	
멕시코								
네덜란드			271.8	290.7	315.9	343.7	367.7	
뉴질랜드								
노르웨이		276.4	303.3	332.9	351.5	367.3	398.0	424.7
폴란드								
포르투갈		244.0	258.0	268.1	296.1	335.8	363.6	
슬로바키아	152.4	291.9	332.2	375.6	381.0	388.0	428.7	
스페인								
스웨덴	232.6	286.9	307.2	330.4	353.8	375.3	397.5	424.2
스위스								
터키								
영국						655.7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2007

〈附表 7〉 강심배당체

(단위: DDD/1000 inhabitants/day)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8.7	7.1	6.5	6.0	5.6	5.3	4.9	
오스트리아								
벨기에		7.5	6.9	6.2	5.5	5.0	4.4	
캐나다								
체코	19.2	12.1	11.0	9.7	8.5	7.1	6.6	
덴마크	9.0	7.9	7.3	6.9	6.6	6.3	6.0	
핀란드	15.7	9.7	8.8	7.9	7.2	6.6	6.0	
프랑스								
독일	23.8	14.8	14.6	13.2	12.2	10.1	9.4	
그리스	14.0	11.7	11.4	11.3	10.2	9.9		
헝가리	11.5	9.6	9.2	8.9	8.1	7.6	6.8	
아이슬란드	5.8	2.0	3.1	3.6	3.4	3.2	3.0	2.8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6.5	6.0	5.6	4.5	4.6	4.1	
멕시코								
네덜란드			5.1	4.7	4.4	4.2	3.9	
뉴질랜드								
노르웨이		5.8	5.4	5.1	4.6	4.4	4.1	3.9
폴란드								
포르투갈		9.0	8.0	7.4	6.9	6.8	6.3	
슬로바키아	10.5	8.6	8.3	8.0	7.2	6.6	6.0	
스페인								
스웨덴	13.0	9.2	8.5	7.8	7.2	6.5	5.9	5.3
스위스								
터키								
영국						77.2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2007

〈附表 8〉 항부정맥약

(단위: DDD/1000 inhabitants/day)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1.4	2.0	2.2	2.3	2.2	2.2	2.1	
오스트리아								
벨기에		7.5	7.9	7.9	8.0	8.0	7.8	
캐나다								
체코	3.2	5.0	5.2	5.6	6.0	5.6	6.4	
덴마크	1.1	1.5	1.6	1.7	1.6	1.6	1.6	
핀란드	1.8	1.7	1.8	1.8	1.8	1.8	1.7	
프랑스								
독일	2.7	2.1	2.2	2.3	2.4	2.3	2.4	
그리스	3.4	4.2	4.5	4.9	5.3	5.5		
헝가리	3.6	5.4	5.5	5.9	6.2	6.2	6.1	
아이슬란드	1.8	2.5	2.8	3.0	3.2	3.3	3.4	3.4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8.5	8.4	8.6	8.5	8.1	7.9	
멕시코								
네덜란드			2.7	2.7	2.6	2.6	2.5	
뉴질랜드								
노르웨이		1.1	1.1	1.2	1.2	1.3	1.4	1.5
폴란드								
포르투갈		7.0	7.0	7.0	7.1	7.3	7.2	
슬로바키아	1.4	5.4	5.8	6.0	5.8	4.3	4.6	
스페인								
스웨덴	0.8	1.0	1.0	1.1	1.1	1.1	1.1	1.1
스위스								
터키								
영국						2.1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2007

〈附表 9〉 혈압강하제

(단위: DDD/1000 inhabitants/day)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8.0	6.0	5.6	5.3	5.2	5.2	5.1	
오스트리아								
벨기에		4.0	4.4	4.8	5.0	5.4	5.9	
캐나다								
체코	4.9	5.5	7.8	9.2	11.6	12.2	15.6	
덴마크	1.1	1.8	2.0	2.2	2.5	2.7	2.9	
핀란드	2.2	1.1	1.2	1.3	1.5	1.7	1.9	
프랑스								
독일	16.3	13.1	13.2	13.1	13.2	11.7	12.3	
그리스	5.0	6.5	6.8	7.2	6.8	6.7		
헝가리		13.8	14.8	15.6	15.5	17.2	17.7	
아이슬란드	0.6	1.4	1.3	1.2	1.2	1.4	1.4	1.4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1.8	1.7	2.7	3.4	3.7	4.1	
멕시코								
네덜란드			2.7	2.8	2.9	3.0	3.1	
뉴질랜드								
노르웨이		9.3	9.0	9.1	9.0	5.6	4.9	4.6
폴란드								
포르투갈			0.3	0.2	0.2	0.3	0.5	
슬로바키아	6.1	3.8	6.4	8.9	10.0	10.7	12.8	
스페인								
스웨덴	0.9	1.1	1.3	1.6	1.8	1.9	2.1	2.2
스위스								
터키								
영국						14.5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2007

〈附表 10〉 이노제

(단위: DDD/1000 inhabitants/day)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42.7	42.9	40.5	37.8	35.0	32.6	30.9	
오스트리아								
벨기에		39.7	41.7	41.8	42.5	43.7	44.0	
캐나다								
체코	36.3	54.9	58.9	63.7	76.8	90.7	100.6	
덴마크	102.0	104.3	105.7	106.6	108.3	111.5	112.4	
핀란드	62.6	60.5	61.9	61.5	61.6	61.9	62.5	
프랑스								
독일	56.2	56.2	63.3	65.9	71.1	66.1	69.2	
그리스	31.5	32.8	34.0	34.9	35.7	35.7		
헝가리	32.1	35.7	37.3	40.4	40.9	42.8	42.8	
아이슬란드	56.8	58.9	61.3	60.5	65.0	67.3	64.5	70.0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20.4	22.6	23.3	22.4	23.5	24.7	
멕시코								
네덜란드			51.9	51.7	52.8	54.3	55.3	
뉴질랜드								
노르웨이		41.2	41.7	42.6	42.4	45.4	47.4	50.3
폴란드								
포르투갈		41.0	43.0	40.7	40.4	42.4	43.0	
슬로바키아	19.4	31.2	34.0	36.5	33.0	31.7	32.6	
스페인								
스웨덴	84.2	81.5	82.0	82.8	84.6	87.3	89.4	90.4
스위스								
터키								
영국						74.8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2007

〈附表 11〉 베타 차단제

(단위: DDD/1000 inhabitants/day)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21.6	22.4	22.7	23.5	24.1	25.7	26.2	
오스트리아								
벨기에		58.6	61.3	62.4	64.1	66.6	67.6	
캐나다								
체코	48.3	56.3	63.2	66.7	71.1	71.3	78.2	
덴마크	14.3	20.5	22.5	24.7	27.2	29.9	31.9	
핀란드	42.8	57.2	61.4	63.7	65.8	68.1	68.9	
프랑스								
독일	36.2	49.5	56.4	61.3	69.4	67.8	73.3	
그리스	16.1	21.4	24.0	26.8	28.6	30.7		
헝가리	34.2	41.4	43.6	48.6	50.5	52.2	53.7	
아이슬란드	34.3	40.2	42.8	42.9	45.1	46.4	47.8	47.2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33.4	34.3	35.9	33.5	35.7	37.1	
멕시코								
네덜란드			39.6	41.3	43.6	46.4	47.9	
뉴질랜드								
노르웨이		33.2	35.7	38.1	38.1	39.4	40.4	40.7
폴란드								
포르투갈		12.0	13.0	14.4	16.4	18.3	19.3	
슬로바키아	19.3	29.9	35.0	38.9	42.0	42.8	46.7	
스페인								
스웨덴	36.0	44.1	46.8	49.5	52.5	54.7	55.1	55.4
스위스								
터키								
영국						36.5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2007

〈附表 12〉 칼슘 차단제

(단위: DDD/1000 inhabitants/day)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268.8	106.0	93.5	85.0	79.3	77.6	74.3	
오스트리아								
벨기에		32.1	33.1	34.9	37.1	40.4	41.6	
캐나다								
체코	33.0	37.3	41.4	48.4	56.4	69.9	78.4	
덴마크		37.3	39.1	41.1	42.9	46.2	50.4	
핀란드	31.0	36.7	39.4	41.8	44.9	48.3	52.2	
프랑스								
독일	51.9	45.5	48.2	47.8	51.2	49.0	54.8	
그리스	31.0	52.4	59.9	70.3	66.4	68.6		
헝가리	47.9	57.5	61.6	69.7	73.3	75.1	79.1	
아이슬란드	21.3	26.7	28.4	28.4	30.7	31.5	33.6	33.7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31.2	31.9	33.1	
멕시코								
네덜란드			30.1	31.6	33.4	35.5	36.7	
뉴질랜드								
노르웨이		41.5	43.7	45.7	45.3	46.6	48.9	50.3
폴란드								
포르투갈		32.0	33.0	33.1	34.2	37.0	39.1	
슬로바키아		46.0	55.0	58.0	63.3	68.2		
스페인								
스웨덴		33.9	35.3	37.2	38.9	40.7	44.0	47.7
스위스								
터키								
영국						57.7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2007

〈附表 13〉 레닌 안지오텐신약물

(단위: DDD/1000 inhabitants/day)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52.1	82.8	86.0	93.3	99.1	108.5	114.9	
오스트리아								
벨기에		51.8	58.6	69.5	82.4	91.3	97.8	
캐나다								
체코	15.5	60.2	76.3	86.8	98.8	104.9	135.4	
덴마크		45.6	52.5	62.9	74.1	85.1	96.3	
핀란드	40.6	65.7	76.5	90.7	107.8	125.3	137.9	
프랑스								
독일	39.7	84.4	105.8	122.8	143.2	144.2	168.2	
그리스	39.1	92.5	112.1	130.2	137.0	149.4		
헝가리	48.3	110.2	119.8	133.7	140.4	150.0	160.4	
아이슬란드	27.8	51.4	60.4	67.7	76.4	80.9	89.2	95.2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84.3	88.3	
멕시코								
네덜란드			63.6	70.3	79.0	88.0	95.6	
뉴질랜드								
노르웨이		65.1	76.0	87.5	96.0	99.1	106.2	112.3
폴란드								
포르투갈		74.0	83.0	86.3	97.0	109.7	117.4	
슬로바키아		70.9	81.9	84.9	88.8	105.2		
스페인								
스웨덴		54.9	62.4	71.5	79.2	85.6	94.7	106.6
스위스								
터키								
영국						121.1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2007

〈附表 14〉 Lipid modifying agents

(단위: DDD/1000 inhabitants/day)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16.4	81.3	99.2	116.1	135.2	162.9	182.4	
오스트리아								
벨기에							117.4	
캐나다								
체코	4.9	27.0	35.5	44.4	53.1	65.0	90.4	
덴마크			21.1	29.4	45.4	67.2	90.2	
핀란드			43.3	54.0	67.0	81.7	96.7	
프랑스								
독일	14.3	31.6	39.2	43.9	51.8	57.9	64.5	
그리스								
헝가리					31.3	52.6	70.8	
아이슬란드	6.2	34.2	44.5	52.6	64.9	75.2	88.2	97.0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57.2	67.0	78.7	92.2	105.6	
뉴질랜드								
노르웨이		59.6	71.7	85.5	98.2	110.0	130.3	147.7
폴란드								
포르투갈		25.7	30.0	39.0	53.1	71.1	86.1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65.4	75.2	83.9	95.2
스위스								
터키								
영국						129.0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2007

〈附表 15〉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단위: DDD/1000 inhabitants/day)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33.7	50.7	56.6	56.6	42.2	38.6	38.5	
오스트리아								
벨기에		102.0	102.9	97.4	92.2	93.4	54.9	
캐나다								
체코	53.6	82.9	89.9	95.9	98.7	94.4	101.7	
덴마크		107.3	110.7	113.1	110.0	103.1	102.7	
핀란드		130.2	135.3	135.5	128.8	125.3	126.1	
프랑스								
독일	90.8	92.0	90.2	88.5	83.9	61.0	60.4	
그리스		41.8	46.8	52.1	55.3	59.1		
헝가리					53.3	49.9	45.1	
아이슬란드	119.4	155.8	162.5	155.5	143.0	144.0	141.3	139.7
아일랜드								
이탈리아			41.9	40.8	41.6	40.9	40.2	
일본								
룩셈부르크							36.3	
멕시코								
네덜란드			136.3	134.1	134.9	46.6	47.7	
뉴질랜드								
노르웨이		104.9	107.7	106.5	99.3	97.7	94.4	97.2
폴란드								
포르투갈			24.3	25.8	29.3	32.6	35.0	
슬로바키아		64.4	66.7	62.4	61.9	62.4		
스페인								
스웨덴		129.7	124.6	123.0	116.8	109.4	103.5	101.9
스위스								
터키								
영국						29.8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2007

〈附表 16〉 성호르몬 및 생식계 변조제

(단위: DDD/1000 inhabitants/day)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32.0	49.2	54.8	54.6	40.1	36.0	35.8	
오스트리아								
벨기에		96.4	97.2	91.8	86.5	87.4		
캐나다								
체코	49.8	77.2	82.9	87.7	89.4	83.9	88.4	
덴마크		101.1	103.7	105.0	100.7	92.5	90.7	
핀란드		114.6	117.6	115.9	107.2	102.3	97.7	
프랑스								
독일	68.2	71.5	68.2	65.6	59.6	48.1	46.3	
그리스	20.1	23.5	26.7	29.6	30.2	31.2		
헝가리		54.8	51.6	49.3	44.6	40.5	34.9	
아이슬란드	105.6	130.6	135.7	127.5	107.4	102.3	96.0	92.1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28.3	24.9	23.9	
멕시코								
네덜란드			126.6	123.0	121.7	35.9	35.5	
뉴질랜드								
노르웨이		98.5	100.6	98.3	88.8	85.9	81.4	82.4
폴란드								
포르투갈		4.0	9.0	10.0	12.2	12.8	12.7	
슬로바키아	28.0	68.0	64.0	67.0	62.0	61.0	50.1	
스페인								
스웨덴		119.1	113.5	110.9	103.7	95.2	87.6	84.0
스위스								
터키								
영국						19.0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2007

〈附表 17〉 전신성 호르몬제

(단위: DDD/1000 inhabitants/day)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20.8	26.3	27.2	27.9	28.4	30.3	30.7	
오스트리아								
벨기에		27.2	28.6	29.5	30.9	31.7	32.3	
캐나다								
체코	16.4	23.9	26.9	28.2	30.6	31.3	35.3	
덴마크		23.9	25.0	26.2	26.6	27.2	27.7	
핀란드		30.9	33.4	34.6	36.1	37.4	38.6	
프랑스								
독일	60.6	66.5	67.0	68.8	72.9	61.5	64.3	
그리스		42.6	45.8	52.1	50.2	55.3		
헝가리					16.5	17.4	18.0	
아이슬란드	20.1	25.6	26.3	20.2	29.2	29.8	30.3	31.9
아일랜드								
이탈리아			21.7	22.9	23.6	25.7	27.7	
일본								
룩셈부르크							43.8	
멕시코								
네덜란드			18.4	19.3	20.3	21.0	21.8	
뉴질랜드								
노르웨이		32.6	34.5	36.4	36.1	37.3	38.4	39.6
폴란드								
포르투갈			17.5	17.3	17.1	18.2	18.6	
슬로바키아		14.6	16.0	18.5	19.2	20.0	20.3	
스페인								
스웨덴		35.2	36.4	37.7	38.0	38.7	39.5	40.3
스위스								
터키								
영국							31.2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2007

〈附表 18〉 전신성 항감염약

(단위: DDD/1000 inhabitants/day)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25.8	22.8	22.6	21.1	20.5	22.2	22.6	
오스트리아								
벨기에		27.7	26.3	26.4	26.9	25.7	27.4	
캐나다								
체코	22.7	20.7	21.8	28.2	21.3	17.5	21.8	
덴마크	13.1	15.1	15.8	16.3	16.8	17.6	18.4	
핀란드		24.0	24.9	23.0	23.5	21.8	22.9	
프랑스								
독일	16.2	15.1	14.1	14.1	14.3	13.6	15.1	
그리스	27.1	33.5	34.0	35.0	36.9	38.7		
헝가리		24.2	24.0	22.6	23.8	22.5	24.1	
아이슬란드	22.5	21.4	20.6	21.1	21.0	22.9	24.4	25.2
아일랜드								
이탈리아			23.2	22.9	23.4	23.1	24.2	
일본								
룩셈부르크						27.2	28.0	
멕시코								
네덜란드			10.9	10.8	10.9	10.9	11.6	
뉴질랜드								
노르웨이		16.9	17.4	17.9	17.9	18.1	19.3	20.1
폴란드								
포르투갈		18.0	18.0	26.6	26.6	23.9	25.5	
슬로바키아	22.5	27.0	31.0	28.0	29.4	26.8	29.5	
스페인								
스웨덴	19.6	18.0	18.1	17.8	17.7	17.7	18.3	18.8
스위스								
터키								
영국							17.0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2007

〈附表 19〉 전신성 항균물질

(단위: DDD/1000 inhabitants/day)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25.4	22.0	21.9	20.4	19.8	21.5	21.8	
오스트리아		12.3	11.9	11.8	12.5	12.5	14.5	
벨기에		25.3	23.7	23.8	24.2	22.7	24.3	
캐나다								
체코	21.7	18.6	18.5	17.1	16.7	15.9	17.3	
덴마크	12.8	12.2	12.8	13.3	13.6	14.1	14.6	
핀란드	21.3	19.0	19.7	17.8	18.7	17.2	18.1	
프랑스		33.2	32.7	32.1	29.0	27.0	28.9	
독일	15.5	14.9	13.8	13.8	13.9	11.1	14.6	
그리스	25.9	29.1	29.4	30.5	31.4	33.0	34.7	
헝가리	21.6	18.9	19.1	17.1	19.6	18.2	19.5	
아이슬란드	21.9	20.5	20.3	21.0	20.4	18.8	23.3	23.4
아일랜드		18.5	19.9	19.8	20.5	20.2	20.5	
이탈리아		24.0	25.2	24.4	25.6			
일본								
룩셈부르크		25.7	26.1	26.4	27.3	24.2	25.2	
멕시코								
네덜란드		9.9	9.9	9.8	9.8	8.9	10.5	
뉴질랜드								
노르웨이			15.7	14.8	15.7	15.7	16.8	
폴란드		22.6	24.8	21.1		19.1	19.6	
포르투갈		24.9	24.3	26.1	27.1	23.8	28.0	
슬로바키아	20.3	25.6	28.0	25.6	26.6	22.4	25.0	
스페인		19.4	18.7	19.4	20.6	18.5	19.3	
스웨덴	18.8	15.5	15.8	15.4	14.9	14.5	14.9	17.1
스위스						9.0		
터키								
영국	17.9	14.3	14.9	14.9	15.2	15.1	15.5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2007

〈附表 20〉 근골격계

(단위: DDD/1000 inhabitants/day)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42.3	53.3	61.4	60.9	63.1	63.6	54.2	
오스트리아								
벨기에		47.7	46.5	51.4	55.4	58.0	55.5	
캐나다								
체코	41.8	64.0	68.7	71.7	75.9	73.9	80.7	
덴마크	34.0	37.0	40.7	45.1	49.3	65.6	64.2	
핀란드		73.7	78.7	80.0	86.4	93.3	96.2	
프랑스								
독일	71.7	54.7	60.4	62.4	65.7	59.2	60.2	
그리스	46.2	55.6	56.1	60.0	65.5	73.8		
헝가리		54.0	55.9	60.8	65.2	70.2	72.9	
아이슬란드	41.1	56.9	61.0	68.2	78.2	85.1	79.3	79.7
아일랜드								
이탈리아			37.6	37.4	37.4	41.1	37.9	
일본								
룩셈부르크						74.6	78.2	
멕시코								
네덜란드			40.2	41.0	43.3	42.0	40.0	
뉴질랜드								
노르웨이		42.7	50.0	57.0	60.7	65.3	58.8	60.5
폴란드								
포르투갈		69.0	76.0	78.9	80.0	88.6	88.8	
슬로바키아		123.2	134.0	147.0	138.0	123.0	143.5	
스페인								
스웨덴	40.6	47.9	50.7	54.7	61.2	64.2	63.7	64.1
스위스								
터키								
영국							54.8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2007

〈附表 21〉 항염제, 항류마티스약

(단위: DDD/1000 inhabitants/day)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32.7	41.0	47.8	44.5	44.5	42.7	31.7	
오스트리아								
벨기에		35.9	33.5	38.3	39.3	39.9	36.6	
캐나다								
체코	34.8	55.4	59.3	61.2	64.5	62.2	66.2	
덴마크	29.7	31.1	34.5	38.1	41.3	56.3	53.2	
핀란드		61.3	65.4	65.3	70.0	75.4	76.7	
프랑스								
독일	26.9	26.8	30.5	32.2	34.8	34.1	33.3	
그리스	29.8	48.0	46.8	49.5	52.1	57.5		
헝가리	27.6	34.6	34.3	39.0	41.6	43.9	44.9	
아이슬란드	36.7	51.4	55.0	61.2	69.6	74.9	68.0	69.0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52.4	56.6	59.2	63.8	59.4	51.4	
멕시코								
네덜란드			30.0	30.3	31.7	31.2	27.7	
뉴질랜드								
노르웨이		34.0	40.7	46.0	48.4	51.7	44.0	45.2
폴란드								
포르투갈		58.0	65.0	66.1	63.2	67.3	65.5	
슬로바키아	20.5	41.1	48.2	54.1	49.0	50.0	64.1	
스페인								
스웨덴	33.7	39.9	42.4	45.6	51.1	53.1	51.4	51.7
스위스								
터키								
영국							33.5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2007

〈附表 22〉 신경계 및 감각기

(단위: DDD/1000 inhabitants/day)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89.0	117.3	126.3	129.5	134.2	143.0	147.0	
오스트리아								
벨기에		69.6	74.3	79.7	85.4	91.9	94.4	
캐나다								
체코	93.6	109.9	114.0	114.6	118.4	120.2	137.0	
덴마크	186.3	212.6	221.0	227.8	236.1	241.7	247.4	
핀란드		176.2	188.3	199.0	210.2	216.6	226.9	
프랑스								
독일	102.8	92.7	96.0	97.2	98.2	84.8	92.0	
그리스	103.0	144.3	154.3	156.1	165.1	174.1		
헝가리		170.0	176.4	183.5	186.2	185.8	187.6	
아이슬란드	163.8	238.4	249.2	263.0	272.7	284.3	298.0	298.1
아일랜드								
이탈리아			31.7	36.2	39.1	43.3	46.3	
일본								
룩셈부르크						188.3	191.5	
멕시코								
네덜란드			109.6	113.7	118.0	115.1	116.1	
뉴질랜드								
노르웨이		161.7	170.2	180.8	189.6	194.9	201.7	208.6
폴란드								
포르투갈		160.0	167.0	169.7	169.9	181.6	187.3	
슬로바키아	83.7	105.1	112.2	122.8	123.8	146.0	148.4	
스페인								
스웨덴	185.2	212.9	222.1	228.1	234.1	238.8	242.9	250.0
스위스								
터키								
영국							212.2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2007

〈附表 23〉 진통제

(단위: DDD/1000 inhabitants/day)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21.2	22.5	23.2	24.6	25.0	26.5	27.7	
오스트리아								
벨기에		7.6	8.2	8.9	9.5	10.1	10.5	
캐나다								
체코	27.5	21.2	21.4	20.7	22.2	20.3	23.2	
덴마크	74.8	87.5	87.8	88.4	89.6	90.7	92.6	
핀란드	24.6	24.4	27.1	28.9	31.2	32.1	37.2	
프랑스								
독일	18.2	17.8	17.7	18.9	19.2	16.1	18.1	
그리스	22.5	31.7	30.0	29.9	29.5	29.5		
헝가리	26.2	25.6	24.8	24.9	26.1	23.5	22.6	
아이슬란드	37.9	45.9	46.4	46.2	45.7	46.2	49.8	49.0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9.0	9.7	11.9	13.8	15.9	17.7	
멕시코								
네덜란드			12.9	14.0	15.4	9.3	9.8	
뉴질랜드								
노르웨이		45.5	46.5	48.4	49.7	50.0	52.3	53.9
폴란드								
포르투갈		8.0	8.0	7.7	7.5	8.3	9.7	
슬로바키아	25.4	24.2	24.7	24.8	27.4	30.8	40.1	
스페인								
스웨덴	73.6	73.6	73.3	72.9	73.3	72.9	73.5	74.6
스위스								
터키								
영국							59.6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2007

〈附表 24〉 불안제거약

(단위: DDD/1000 inhabitants/day)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13.3	14.0	13.9	13.6	13.7	14.3	14.5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14.8	20.2	19.8	19.9	19.8	18.9	19.7	
덴마크		22.8	22.58	22.1	21.5	20.8	19.7	
핀란드		30.1	31.0	31.5	32.0	31.9	31.2	
프랑스								
독일	9.7	8.0	8.2	7.1	6.5	6.0	6.0	
그리스	25.1	27.8	28.6	29.3	30.4	31.6		
헝가리	38.7	41.4	43.2	46.2	46.5	48.4	49.4	
아이슬란드	23.0	24.6	24.8	27.7	24.9	26.1	25.8	25.0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48.3	47.5	47.2	
멕시코								
네덜란드			19.3	19.0	19.0	18.8	18.1	
뉴질랜드								
노르웨이		19.0	19.3	19.9	20.4	21.0	21.4	21.0
폴란드								
포르투갈		70.0	71.0	67.8	68.4	72.8	73.1	
슬로바키아		19.2	19.6	20.4	18.1	18.2	19.4	
스페인								
스웨덴		16.5	16.6	16.3	16.3	16.4	16.4	16.4
스위스								
터키								
영국							28.0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2007

〈附表 25〉 최면제 및 진정제

(단위: DDD/1000 inhabitants/day)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13.3	11.0	10.7	10.4	10.1	10.1	9.9	
오스트리아								
벨기에		0.1	0.1	0.1	0.1	0.1	0.1	
캐나다								
체코	20.4	17.0	15.9	15.8	14.8	14.2	15.0	
덴마크		32.6	32.5	32.5	32.7	32.2	31.2	
핀란드	39.5	49.0	51.6	53.4	55.9	55.0	54.4	
프랑스								
독일	17.0	10.1	10.1	9.5	9.0	6.8	6.9	
그리스	9.3	17.9	18.2	16.1	14.9	15.7		
헝가리	40.0	25.2	24.8	24.9	23.6	23.3	22.0	
아이슬란드	41.2	55.4	55.4	58.1	61.8	64.9	66.7	68.3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50.6	51.9	52.2	
멕시코								
네덜란드			22.9	22.8	22.9	22.9	22.1	
뉴질랜드								
노르웨이		31.8	34.0	35.8	36.9	39.1	41.4	42.6
폴란드								
포르투갈		18.0	18.2	15.5	13.1	13.7	13.5	
슬로바키아		15.4	15.5	15.8	14.2	13.4	10.7	
스페인								
스웨덴		46.2	47.7	47.9	49.0	50.4	51.6	52.1
스위스								
터키								
영국							12.6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2007

〈附表 26〉 항우울제

(단위: DDD/1000 inhabitants/day)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21.4	46.3	51.2	55.1	59.6	65.1	67.2	
오스트리아								
벨기에		38.7	41.9	45.5	48.5	52.3	53.3	
캐나다								
체코	5.4	9.8	12.0	14.0	16.8	20.1	26.9	
덴마크		34.8	41.5	46.5	52.3	54.9	59.5	
핀란드	20.3	35.5	39.4	43.1	45.9	49.1	52.1	
프랑스								
독일	15.1	20.6	22.6	24.3	26.4	25.6	28.5	
그리스		18.9	23.1	27.6	33.1	35.8		
헝가리	6.3	13.5	15.6	17.5	20.2	19.9	22.5	
아이슬란드	33.0	70.5	78.3	84.8	90.5	91.9	94.8	92.6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36.2	41.6	42.7	
멕시코								
네덜란드			31.4	33.8	35.5	38.5	39.0	
뉴질랜드								
노르웨이		41.0	44.2	47.6	51.7	52.2	51.6	52.5
폴란드								
포르투갈		26.0	31.0	36.4	38.9	44.6	47.1	
슬로바키아		8.6	10.9	13.6	13.9	14.9	18.1	
스페인								
스웨덴		47.7	54.6	59.5	62.4	64.3	65.7	69.3
스위스								
터키								
영국	19.6	37.6	42.7	46.7	48.8	50.8	47.3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2007

〈附表 27〉 호흡기계

(단위: DDD/1000 inhabitants/day)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97.1	98.1	82.9	76.0	67.0	62.0	56.4	
오스트리아								
벨기에		84.9	81.2	82.8	83.2	83.1	85.3	
캐나다								
체코	68.6	100.0	111.8	112.7	119.1	129.7	151.5	
덴마크	97.4	112.8	115.4	116.9	115.8	116.3	115.7	
핀란드		111.5	113.2	117.0	119.2	116.2	120.5	
프랑스								
독일	124.3	95.4	91.4	90.8	87.2	67.1	70.3	
그리스	74.9	123.5	135.9	138.9	144.1	155.4		
헝가리		74.1	74.1	74.5	79.0	78.8	82.0	
아이슬란드	84.7	101.9	101.4	101.9	104.0	105.7	108.6	107.5
아일랜드								
이탈리아			57.9	52.8	38.3	45.6	48.0	
일본								
룩셈부르크						67.5	70.1	
멕시코								
네덜란드			100.2	100.6	98.3	94.9	95.5	
뉴질랜드								
노르웨이		147.7	151.9	161.9	160.8	163.0	169.0	173.6
폴란드								
포르투갈		51.0	50.0	45.8	45.0	47.3	51.3	
슬로바키아	69.5	96.4	99.0	102.4	111.0	133.0	155.3	
스페인								
스웨덴	142.4	136.7	135.6	139.6	136.1	139.6	142.9	146.9
스위스								
터키								
영국							61.3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2007

〈附表 28〉 기도폐색질 환약

(단위: DDD/1000 inhabitants/day)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79.0	86.1	77.3	68.7	59.9	55.1	49.9	
오스트리아								
벨기에		58.3	56.9	52.7	48.3	46.0	46.6	
캐나다								
체코	18.5	31.9	34.4	33.6	33.2	34.5	38.7	
덴마크		64.1	64.1	63.2	62.0	62.1	60.5	
핀란드		49.9	49.9	49.8	51.0	50.9	51.8	
프랑스								
독일	52.9	48.7	45.8	46.2	45.7	42.8	45.1	
그리스		56.5	65.6	67.4	67.4	73.0		
헝가리	25.4	22.6	25.0	26.0	26.8	28.3	32.0	
아이슬란드	43.8	48.2	46.0	46.1	44.9	44.1	45.0	43.5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20.4	24.2	24.3	
멕시코								
네덜란드			68.5	66.3	63.2	61.1	60.5	
뉴질랜드								
노르웨이		62.1	62.7	63.0	61.0	60.2	61.0	61.4
폴란드								
포르투갈		26.0	23.0	24.5	22.2	22.7	21.9	
슬로바키아		21.5	22.3	23.5	24.6	25.1	27.5	
스페인								
스웨덴		55.5	54.1	53.5	51.7	51.0	50.4	50.2
스위스								
터키								
영국							51.6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2007

□ 의약품판매

〈附表 29〉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단위: 1인당, US\$ PPP)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29	25	26	27	28	29	34	
호주	20	27	27	31	34	36	37	
오스트리아								
벨기에				37				
캐나다								
체코	30	33	36	39	42	43	48	
덴마크		28	30	31	31	33	35	
핀란드	19	28	30	33	34	38	40	
프랑스	33	43	46	49	49			
독일	30	34	39	42	48	41	45	
그리스	32	38	43	53	63	75		
헝가리		30	35	38	40	40	47	
아이슬란드	38	51	58	57	59	58	54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25	27	29	30	32	33	36	
룩셈부르크	35	40	43	48	54	59	62	
멕시코								
네덜란드	26	38	41		44	39	43	
뉴질랜드	13	16	18	18	20	21	22	
노르웨이		34	36	38	38	42	45	
폴란드								
포르투갈		30	32	33	32	34	36	
슬로바키아	15	24	35	28	28	23	25	
스페인						38	40	
스웨덴	26	46	44	46	44	44	44	
스위스	44	56	59	56	59	59	61	
터키		10	10	11	13	14	19	
영국	22	29	31	34	36	38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附表 30〉 제산제

(단위: 1인당, US\$ PPP)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0	0	0	0	0	0	0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1	1	1	1	1	1	1	
덴마크		1	1	1	1	1	1	
핀란드		0	0	0	0	0	0	
프랑스								
독일	2	1	1	1	1	0	0	
그리스		1	1	1	1	1		
헝가리					0	0	0	
아이슬랜드	1	1	1	1	1	1	1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1	
멕시코								
네덜란드						18	19	
뉴질랜드	0	0	0	0	0	0		
노르웨이				1	1	1	1	
폰란드								
포르투갈			1	1	0	0	0	
슬로바키아	0	0	0	0	0	0		
스페인						1	1	
스웨덴		1	1	1	1	1	1	
스위스								
터키		3	3	4	4	5	7	
영국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附表 31〉 위궤양 치료제

(단위: 1인당, US\$ PPP)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12	16	16	20	22	24	24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2	3	3	4	5	6	7	
덴마크		11	12	12	12	12	12	
핀란드		9	10	11	11	12	11	
프랑스	7	13	15	17	18			
독일	7	9	11	12	15	15	16	
그리스		17	19	24	28	34		
헝가리					11	11	14	
아이슬랜드	20	30	35	35	36	34	32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31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15	13	14	14	
폴란드								
포르투갈			18	19	18	20	22	
슬로바키아		2	2	2	3	2	2	
스페인						18	18	
스웨덴		18	18	18	15	13	13	
스위스								
터키		2	2	3	4	5	6	
영국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附表 32〉 당뇨병 치료제

(단위: 1인당, US\$ PPP)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3	6	6	7	7	8	8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7	9	11	12	13	13	15	
덴마크		6	6	7	7	8	9	
핀란드		7	8	9	9	11	12	
프랑스	3	6	7	7	8			
독일	8	13	15	17	20	18	20	
그리스		6	7	10	13	18		
헝가리					10	10	12	
아이슬랜드	5	5	7	8	8	8	8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14	
멕시코								
네덜란드						13	15	
뉴질랜드		3	3	3	3	3	3	
노르웨이				8	8	9	11	
폴란드								
포르투갈			7	8	8	8	9	
슬로바키아		7	7	8	8	8	9	
스페인						12	13	
스웨덴		8	9	10	11	12	12	
스위스								
터키		2	2	2	3	3	4	
영국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附表 33〉 혈액 및 조혈기관

(단위: 1인당, US\$ PPP)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2	4	4	5	5	5	6	
호주	1	3	5	6	8	9	10	
오스트리아								
벨기에				32				
캐나다								
체코	19	19	22	24	27	31	34	
덴마크		15	18	19	21	24	25	
핀란드	5	11	13	14	15	17	19	
프랑스	13	17	21	25	29			
독일	4	10	13	15	19	18	19	
그리스	15	22	34	46	53	62		
헝가리		10	15	20	23	24	30	
아이슬랜드	13	23	28	27	29	28	25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20	17	16	16	18	19	20	
룩셈부르크	12	10	12	13	17	19	21	
멕시코								
네덜란드	7	6	7					
뉴질랜드	3	8	10	9	10	12	13	
노르웨이				15	18	20	24	
폴란드								
포르투갈		8	8	8	7	9	11	
슬로바키아	6	9	12	15	16	15	17	
스페인						14	14	
스웨덴	13	24	26	28	30	31	32	
스위스	7	13	15	8	10	12	13	
터키		2	3	3	4	4	5	
영국	2	3	4	4	4	5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附表 34〉 심혈관계

(단위: 1인당, US\$ PPP)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19	23	26	31	34	43	50	
호주	33	58	63	68	73	79	79	
오스트리아								
벨기에				57				
캐나다								
체코	41	52	58	65	73	78	82	
덴마크		36	39	45	46	41	40	
핀란드	23	40	46	52	51	53	52	
프랑스	54	66	71	72	73			
독일	59	63	71	74	80	67	69	
그리스	50	70	84	103	113	128		
헝가리		45	54	64	70	74	86	
아이슬랜드	39	55	66	67	76	69	66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51	57	65	67	74	76	80	
룩셈부르크	50	59	62	67	73	77	79	
멕시코								
네덜란드	21	45	50			57	60	
뉴질랜드	21	13	12	10	10	12	12	
노르웨이		58	62	68	67	64	59	
폴란드								
포르투갈		61	67	72	73	82	89	
슬로바키아	12	37	47	59	63	48	50	
스페인						78	79	
스웨덴	21	43	46	50	47	42	41	
스위스	45	64	71	66	75	79	77	
터키		9	11	13	15	15	21	
영국	22	42	48	57	63	68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附表 35〉 강심배당체

(단위: 1인당, US\$ PPP)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0	0	0	0	0	0	0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0	0	0	0	0	0	0	
덴마크		1	1	1	1	1	1	
핀란드		0	0	0	0	0	0	
프랑스								
독일	1	1	1	1	1	1	1	
그리스		0	0	0	0	0		
헝가리					0	0	0	
아이슬랜드	0	0	0	0	0	0	0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0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0	0	0	0	
폴란드								
포르투갈			0	0	0	0	0	
슬로바키아		0	0	0	0	0	0	
스페인								
스웨덴		0	0	0	0	0	0	
스위스								
터키		0	0	0	0	0	0	
영국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附表 36〉 항부정맥약

(단위: 1인당, US\$ PPP)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0	1	1	1	1	1	1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2	1	1	1	1	1	1	
덴마크		0	0	0	0	0	0	
핀란드		1	1	1	1	1	1	
프랑스								
독일	1	1	1	1	1	1	1	
그리스		1	1	1	1	1		
헝가리					1	1	1	
아이슬랜드	1	1	1	1	2	1	1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1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1	1	1	1	1	1	
노르웨이				1	1	0	0	
폴란드								
포르투갈			1	1	1	1	1	
슬로바키아		1	1	1	1	1	1	
스페인						1	1	
스웨덴		0	0	0	0	0	0	
스위스								
터키		0	0	0	0	0	0	
영국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附表 37〉 혈압강하제

(단위: 1인당, US\$ PPP)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1	1	1	1	1	1	1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1	2	2	3	3	3	4	
덴마크		1	1	1	1	1	1	
핀란드		0	0	0	0	0	0	
프랑스	2	3	3	3	4			
독일	3	3	3	3	3	3	3	
그리스		1	2	2	2	2		
헝가리					4	4	5	
아이슬랜드	0	1	1	0	1	1	1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1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2	2	2	2	
폴란드								
포르투갈			0	0	0	0	0	
슬로바키아		1	2	3	3	2	3	
스페인						2	2	
스웨덴		0	0	1	1	1	1	
스위스								
터키		0	0	0	0	0	0	
영국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附表 38〉 이노제

(단위: 1인당, US\$ PPP)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1	1	1	1	1	1	1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2	2	2	2	3	3	3	
덴마크		4	4	4	4	5	5	
핀란드		2	2	2	2	2	2	
프랑스	3	3	3	3	3			
독일	4	4	5	5	6	6	6	
그리스		2	2	2	2	2		
헝가리					2	3	3	
아이슬랜드	3	3	3	3	3	2	2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4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0	0	0	0	0	0	
노르웨이				2	2	2	2	
폴란드								
포르투갈			4	4	4	4	4	
슬로바키아		1	1	1	1	1	1	
스페인						4	4	
스웨덴		3	3	3	3	3	3	
스위스								
터키		0	0	0	0	0	1	
영국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附表 39〉 베타 차단제

(단위: 1인당, US\$ PPP)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2	2	3	3	3	4	4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5	6	7	7	8	8	8	
덴마크		3	4	4	5	5	5	
핀란드		8	9	9	9	8	7	
프랑스	4	5	5	5	5			
독일	7	9	10	11	12	11	12	
그리스		3	3	4	5	6		
헝가리					6	7	8	
아이슬랜드	5	6	6	6	6	7	7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7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2	1	1	2	2	3	
노르웨이				6	6	7	7	
폰란드								
포르투갈			2	3	3	3	3	
슬로바키아		3	4	5	6	4	5	
스페인						3	3	
스웨덴		7	7	7	7	8	7	
스위스								
터키		0	1	1	1	1	1	
영국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附表 40〉 칼슘 차단제

(단위: 1인당, US\$ PPP)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7	8	8	8	8	8	8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5	7	7	8	9	11	10	
덴마크		8	9	9	9	6	4	
핀란드		6	7	7	7	8	8	
프랑스	6	6	6	7	6			
독일	10	8	8	7	8	7	7	
그리스		14	16	19	18	18		
헝가리					12	11	12	
아이슬랜드	9	8	9	8	9	8	8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7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3	3	2	2	3	2	
노르웨이				9	8	7	5	
폰란드								
포르투갈			9	9	8	8	8	
슬로바키아		8	10	13	13	8	7	
스페인						10	10	
스웨덴		7	7	7	7	6	6	
스위스								
터키		2	2	2	2	2	2	
영국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附表 41〉 레닌 안지오텐신약물

(단위: 1인당, US\$ PPP)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11	16	18	20	21	23	21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5	10	12	14	16	16	19	
덴마크		10	11	13	14	14	16	
핀란드		9	11	13	13	14	15	
프랑스	8	14	16	17	19			
독일	11	17	20	23	26	22	25	
그리스		26	31	38	42	47		
헝가리					20	22	26	
아이슬랜드	8	15	19	20	23	21	21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28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5	5	4	4	5	5	
노르웨이				18	18	19	20	
폴란드								
포르투갈			21	23	29	32	35	
슬로바키아		8	11	14	16	14	16	
스페인						27	28	
스웨덴		10	11	11	12	12	11	
스위스								
터키		3	4	5	6	6	9	
영국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附表 42〉 지질완화 약물

(단위: 1인당, US\$ PPP)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7	25	29	32	36	40	41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6	11	13	14	17	21	21	
덴마크			8	11	10	7	6	
핀란드			13	16	15	16	16	
프랑스								
독일	5	12	14	16	16	12	11	
그리스								
헝가리					9	12	16	
아이슬랜드	5	16	22	22	27	23	22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20	21	
뉴질랜드								
노르웨이				27	26	24	20	
폴란드								
포르투갈		10	12	15	17	21	25	
슬로바키아								
스페인						22	24	
스웨덴		12	14	17	14	10	9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附表 43〉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단위: 1인당, US\$ PPP)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2	2	2	3	4	3	4	
호주	5	5	6	6	5	5	5	
오스트리아								
벨기에				14				
캐나다								
체코	12	16	18	21	23	24	26	
덴마크		15	16	18	18	19	20	
핀란드	8	15	17	19	19	21	22	
프랑스	10	15	17	18	18			
독일	10	13	14	14	16	11	12	
그리스	7	12	15	20	22	25		
헝가리		9	10	12	14	14	15	
아이슬랜드	24	32	37	33	33	32	29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4	6	6	7	7	7	9	
룩셈부르크	8	14	14	15	17	17	18	
멕시코								
네덜란드	7	13	13					
뉴질랜드	3	2	2	2	2	2	2	
노르웨이		14	16	16	17	19	20	
폴란드								
포르투갈		10	11	11	12	13	14	
슬로바키아	3	9	11	12	12	11	12	
스페인						14	13	
스웨덴	9	18	18	18	19	19	19	
스위스	14	19	20	21	24	25	25	
터키		3	4	4	4	5	7	
영국	4	5	5	5	5	4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附表 44〉 성호르몬 및 생식계 변조제

(단위: 1인당, US\$ PPP)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4	5	5	6	5	4	4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8	11	13	14	15	15	16	
덴마크		11	11	12	12	11	12	
핀란드		3	10	11	10	11	10	
프랑스	7	10	11	11	11			
독일	6	8	8	8	8	6	6	
그리스		6	8	9	10	10		
헝가리					9	8	9	
아이슬랜드	20	24	26	22	20	18	16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8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9	9	9	10	
폴란드								
포르투갈			5	5	5	5	5	
슬로바키아		5	7	8	8	7	7	
스페인						6	6	
스웨덴		11	11	11	11	11	10	
스위스								
터키		2	2	2	2	2	2	
영국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附表 45〉 전신성 호르몬제

(단위: 1인당, US\$ PPP)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2	3	3	4	3	4	4	
호주	1	1	1	1	1	2	2	
오스트리아								
벨기에				8				
캐나다								
체코	5	6	6	6	6	8	9	
덴마크		5	5	5	6	6	7	
핀란드	3	5	5	6	6	6	7	
프랑스	3	5	5	5	5			
독일	4	6	6	7	8	9	10	
그리스	6	11	13	16	17	17		
헝가리		5	5	5	6	5	6	
아이슬랜드	7	9	10	9	9	9	9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5	7	7	8	7	6	8	
룩셈부르크	5	7	7	7	7	8	9	
멕시코								
네덜란드	2	5	5					
뉴질랜드	4	5	5	5	5	5	5	
노르웨이		7	7	7	8	8	9	
폴란드								
포르투갈		5	5	5	3	3	3	
슬로바키아	2	3	4	5	5	4	4	
스페인						7	8	
스웨덴	6	8	9	9	9	10	10	
스위스	4	5	6	4	4	5	5	
터키		1	2	2	2	2	2	
영국	3	5	5	6	6	8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附表 46〉 전신성 항감염약

(단위: 1인당, US\$ PPP)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27	26	28	29	29	30	34	
호주	11	11	11	11	11	11	11	
오스트리아								
벨기에				38				
캐나다								
체코	28	22	26	28	30	29	34	
덴마크		22	24	26	26	28	30	
핀란드	9	20	22	22	23	22	25	
프랑스	33	39	41	42	41			
독일	13	17	17	17	18	19	22	
그리스	44	50	55	60	66	70		
헝가리		23	23	24	24	26	27	
아이슬랜드	27	38	37	48	41	42	42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21	19	22	20	22	21	21	
룩셈부르크	21	26	29	27	29	28	27	
멕시코								
네덜란드	10	12	13					
뉴질랜드	9	7	6	6	6	6	6	
노르웨이					22	23	25	
폴란드								
포르투갈		27	28	29	27	25	25	
슬로바키아	17	22	24	25	25	21	22	
스페인						14	14	
스웨덴	14	18	19	20	21	21	23	
스위스	27	39	39	24	26	26	31	
터키		21	20	20	19	21	28	
영국	8	8	8	9	9	9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附表 47〉 전신성 향균물질

(단위: 1인당, US\$ PPP)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8	7	7	7	7	7	7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23	15	16	17	18	17	19	
덴마크		9	10	11	11	12	13	
핀란드		15	16	16	16	15	16	
프랑스	23	22	23	22	20			
독일	10	10	10	9	10	11	13	
그리스		35	36	40	44	45		
헝가리					18	17	20	
아이슬랜드	21	22	23	22	22	22	22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20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4	3	3	3	2	2	
노르웨이				11	11	11	12	
폰란드								
포르투갈			22	23	20	18	19	
슬로바키아		17	19	19	19	15	15	
스페인						12	12	
스웨덴		11	11	11	11	11	11	
스위스								
터키		18	17	18	17	19	24	
영국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附表 48〉 근골격계

(단위: 1인당, US\$ PPP)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2	2	2	2	2	2	
호주	3	9	14	15	17	17	13	
오스트리아								
벨기에				16				
캐나다								
체코	13	17	19	22	25	25	28	
덴마크		9	11	12	13	16	15	
핀란드	10	15	16	17	18	21	21	
프랑스	10	13	16	17	17			
독일	11	10	12	13	15	17	17	
그리스	13	16	19	24	28	32		
헝가리		13	15	18	19	20	23	
아이슬랜드	13	23	28	29	33	35	27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14	21	23	25	28	32	26	
멕시코								
네덜란드	5	9	10					
뉴질랜드	4	2	1	1	1	2	2	
노르웨이		13	17	20	21	23	19	
폴란드								
포르투갈		22	27	27	28	31	28	
슬로바키아	6	12	13	15	15	14	16	
스페인						21	21	
스웨덴	6	12	13	14	16	17	16	
스위스	15	23	26	25	28	30	29	
터키		9	9	9	10	11	14	
영국	7	8	8	9	10	11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附表 49〉 항염제, 항류마티스약

(단위: 1인당, US\$ PPP)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3	7	11	11	11	10	5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9	9	10	11	13	12	13	
덴마크		6	8	8	9	11	8	
핀란드		9	10	11	11	12	11	
프랑스								
독일	5	5	6	6	7	9	8	
그리스		10	11	14	15	18		
헝가리					7	8	9	
아이슬랜드	10	17	21	21	24	25	18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14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1	1	1	1	1	1	
노르웨이				14	15	16	10	
폴란드								
포르투갈			20	20	19	20	17	
슬로바키아		6	7	8	7	6	7	
스페인						12	12	
스웨덴		7	8	6	7	7	9	
스위스								
터키		6	7	6	7	7	9	
영국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附表 50〉 신경계

(단위: 1인당, US\$ PPP)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19	22	24	25	25	27	31	
호주	16	30	38	39	41	44	44	
오스트리아								
벨기에				59				
캐나다								
체코	25	31	34	39	44	47	55	
덴마크		67	73	76	78	83	86	
핀란드	17	38	44	50	53	60	66	
프랑스	30	46	51	54	55			
독일	27	35	40	44	51	49	57	
그리스	21	44	52	65	79	91		
헝가리		34	40	45	48	44	51	
아이슬랜드	72	125	141	142	151	153	152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27	29	31	35	36	39	37	
룩셈부르크	28	43	47	53	60	65	63	
멕시코								
네덜란드	16	30	34					
뉴질랜드	11	18	19	21	22	22	22	
노르웨이		56	61	67	72	78	82	
폴란드								
포르투갈		34	40	45	45	50	54	
슬로바키아	10	22	28	36	38	31	35	
스페인						63	67	
스웨덴	27	56	62	66	69	71	73	
스위스	37	58	64	58	64	69	73	
터키		7	9	10	11	11	15	
영국	15	31	35	41	43	47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附表 51〉 진통제

(단위: 1인당, US\$ PPP)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4	5	6	6	7	7	7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9	8	8	9	10	10	12	
덴마크		22	23	24	24	25	26	
핀란드		7	8	9	10	11	12	
프랑스	9	16	17	18	17			
독일	5	9	10	12	14	15	17	
그리스		7	6	7	7	8		
헝가리					10	10	11	
아이슬랜드	34	26	25	24	24	24	25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13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2	3	3	3	3	2	
노르웨이				19	20	22	24	
폰란드								
포르투갈			3	3	3	3	4	
슬로바키아		5	6	7	7	6	7	
스페인						10	11	
스웨덴		16	17	18	19	20	20	
스위스								
터키		2	2	2	3	3	3	
영국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附表 52〉 불안제거약

(단위: 1인당, US\$ PPP)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1	1	1	1	1	1	1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1	2	2	2	2	2	2	
덴마크		3	3	3	3	2	2	
핀란드		2	2	2	2	2	2	
프랑스								
독일	1	1	1	1	1	1	1	
그리스		2	2	3	3	3		
헝가리					4	4	4	
아이슬랜드	4	4	5	5	4	4	4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6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0	0	0	0	0	0	
노르웨이				3	3	3	3	
핀란드								
포르투갈			7	7	6	6	6	
슬로바키아		1	2	2	1	1	1	
스페인						4	3	
스웨덴		2	2	2	2	2	2	
스위스								
터키		0	0	0	0	0	0	
영국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附表 53〉 최면제 및 진정제

(단위: 1인당, US\$ PPP)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1	1	1	1	1	1	1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1	2	2	2	2	2	3	
덴마크		3	3	2	2	2	2	
핀란드		2	2	3	2	2	2	
프랑스								
독일	2	2	2	2	1	2	2	
그리스		1	1	1	1	1		
헝가리					3	2	3	
아이슬랜드	4	6	7	7	7	6	5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6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0	0	0	0	0	0	
노르웨이				3	3	3	3	
폰란드								
포르투갈			2	2	1	1	1	
슬로바키아		1	1	1	1	1	1	
스페인						1	1	
스웨덴		3	3	3	3	4	4	
스위스								
터키		0	0	0	0	0	0	
영국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附表 54〉 항우울제

(단위: 1인당, US\$ PPP)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6	12	14	15	16	17	16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3	4	5	6	7	8	9	
덴마크		15	17	17	15	16	13	
핀란드		9	11	12	11	11	10	
프랑스								
독일	4	6	7	8	9	8	9	
그리스		9	12	15	18	20		
헝가리					9	8		
아이슬랜드	21	43	47	46	48	43	41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18	
멕시코								
네덜란드						11	11	
뉴질랜드		5	4	5	6	5	5	
노르웨이				17	17	17	14	
폴란드								
포르투갈			11	13	13	15	15	
슬로바키아		4	6	8	8	5	5	
스페인						19	19	
스웨덴		16	18	19	17	16	14	
스위스								
터키		3	3	4	4	4	5	
영국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附表 55〉 호흡기계

(단위: 1인당, US\$ PPP)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6	6	7	6	6	6	7	
호주	11	15	15	16	17	17	17	
오스트리아								
벨기에				27				
캐나다								
체코	21	23	27	29	32	36	43	
덴마크		29	29	31	32	33	35	
핀란드	13	20	22	23	23	24	26	
프랑스	28	26	27	28	29			
독일	22	21	21	22	23	20	23	
그리스	17	27	33	40	45	51		
헝가리		12	13	15	15	15	20	
아이슬랜드	30	41	43	44	45	44	42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7	8	8	9	9	9	9	
룩셈부르크	17	24	25	27	30	31	34	
멕시코								
네덜란드	16	22	24			29	31	
뉴질랜드	18	12	11	11	10	10	10	
노르웨이		34	36	40	39	41	44	
폴란드								
포르투갈		12	13	13	13	14	15	
슬로바키아		16	20	22	23	19	21	
스페인						30	32	
스웨덴	17	24	24	26	28	29	30	
스위스	28	33	34	33	36	36	37	
터키		6	7	8	9	9	13	
영국	15	21	23	24	25	27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附表 56〉 기도폐쇄질환약

(단위: 1인당, US\$ PPP)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10	13	15	16	16	17	17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5	8	9	11	13	16	19	
덴마크		19	19	21	22	22	24	
핀란드		12	13	14	14	16	17	
프랑스								
독일	11	13	13	15	16	15	17	
그리스		15	20	26	29	36		
헝가리					5	6	9	
아이슬랜드	18	25	27	27	28	27	25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22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23	22	24	26	
폴란드								
포르투갈			6	8	8	10	10	
슬로바키아		5	7	9	10	9	10	
스페인						22	25	
스웨덴		14	14	15	17	17	18	
스위스								
터키		2	2	3	4	4	5	
영국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

〈附表 57〉 기타약품

(단위: 1인당, US\$ PPP)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호주	11	21	23	26	28	32	35	
오스트리아								
벨기에				7				
캐나다								
체코	32	42	51	58	66	78	90	
덴마크			56	64	70	80	90	
핀란드								
프랑스	3	4	4	4	5			
독일	20	31	34	39	45	42	49	
그리스								
헝가리		0	0	0				
아이슬랜드	44	43	69	60	70	78	66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122	143	157	162	165	173	172	
룩셈부르크	2	3	3	5	4	5	6	
멕시코								
네덜란드	4	9	10					
뉴질랜드	1	1	1	1	2	2	2	
노르웨이								
폰란드								
포르투갈		13	4	2	0	0	0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7							
스위스	12	1	2	3	2	2	2	
터키		1	1	1	1	1	1	
영국								
미국								

자료: 2007 OECD HEALTH DATA